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0000-002530-0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2008



 농림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0000-002530-0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2008. 1.

연구책임자 : 김 이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정 해 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영 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농 립 부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3
1) 농업, 농촌의 변화와 결혼이민자가족의 증가	3
2)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분포	8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1) 농업·농촌의 미래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의의	12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방향	14
3. 연구내용 및 방법	16
1) 연구내용	16
2) 연구방법	18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2
1) 기대효과	22
2) 활용방안	22
II.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23
1. 일반적 현황	25
2. 가족구성 및 자녀양육	28
3. 한국생활 적응 정도	31
4. 농촌지역주민, 농업종사자로서의 역량	35
5. 사회적 관계	39
6. 서비스 수혜 및 요구	42
III. 20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점검	47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개요	49
1) 목적과 주요 내용	49
2) 추진체계	50

2. 시·군 담당자 조사 결과	54
1) 사업여건	55
2) 서비스 투입단계	58
3) 서비스 집행단계	61
4) 서비스 성과 및 발전방안	66
3. 서비스 제공자(교육도우미) 조사 결과	70
1) 교육도우미의 자격	71
2) 교육활동의 전개	74
3) 교육자원의 동원	78
4) 교육활동 소감	81
4. 서비스 이용자(여성결혼이민자) 조사 결과	8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82
2) 농업 및 농외취업 현황	91
3) 농업·농촌에 대한 전망	105
4)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서비스 요구 ...	117
IV.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국내의 사례	135
1. 국내 사례	137
1)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	137
2) 농업종사 현황	138
3) 시사점	142
2. 해외 사례: 일본 야마가타현	143
1) 야마가타현의 국제결혼	143
2) 도자와무라(戸沢村)의 고려관과 도자와류 김치	146
3) 쓰루오카시(鶴岡市) 우메짱 김치회사	153
4)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위한 시사점	157
V.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163
1. 20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165
1) 서비스대상자의 모집 및 선정	166

2) 교육·활동의 적절성	168
3) 관리체계의 효과성	170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의 과제	171
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종합지원 방안	176
1) 단기적 방안	176
2) 중·장기적 방안	183
부 록	191
부록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시·군 담당자 조사표	193
부록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도우미 조사표	202
부록 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참여자 조사표 (여성결혼이민자용)	208

표 목 차

<표 I-1-1> 국제결혼 추이: 1990-2006	4
<표 I-1-2> 농촌인구 추이	5
<표 I-1-3> 농가인구 추이	5
<표 I-1-4> 20-30대 농가인구 추이	6
<표 I-1-5> 남성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 추이	8
<표 I-1-6> 지역별 결혼이민자 가족 현황: 2007	9
<표 I-1-7> 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	10
<표 I-2-1> 성별 농업주종사 비율 추이	12
<표 I-3-1> 조사대상지역	19
<표 I-3-2> 서비스 이용자(여성결혼이민자) 설문조사 내용	20
<표 I-3-3> 서비스 제공자(방문교육 도우미) 설문조사 내용	20
<표 I-3-4> 시·군 담당자 설문조사 내용	21
<표 II-1-1>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분포	25
<표 II-1-2>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분포	26
<표 II-1-3> 지역별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의 평균 연령	27
<표 II-1-4> 지역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교육수준	28
<표 II-1-5> 지역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교육수준 차이	28
<표 II-2-1> 여성결혼이민자의 동거가족	29
<표 II-2-2>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산 자녀 수	29
<표 II-2-3>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취학 현황	30
<표 II-2-4> 미취학자녀의 주 양육자기관	31
<표 II-2-5> 지역별 월평균 보육비	31
<표 II-3-1>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체류기간	32
<표 II-3-2> 한국 도착 전 한국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33
<표 II-3-3> 한국어 습득 방법	33
<표 II-3-4> 한국어 사용 불편정도	34
<표 II-3-5>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35
<표 II-3-6> 자녀 양육 지원 요구	35

<표 II-4-1>	본국에서의 거주지역	36
<표 II-4-2>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취업 현황	36
<표 II-4-3>	본국에서의 직업	37
<표 II-4-4>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재 직업	38
<표 II-4-5>	배우자의 현재 직업	38
<표 II-4-6>	장래 희망 직업	38
<표 II-4-7>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재 직업과 장래 희망 직업	39
<표 II-4-8>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과거/현재/장래희망 직업	39
<표 II-5-1>	가깝게 지내는 주위인물	40
<표 II-5-2>	출신국가별 친구관계	41
<표 II-5-3>	본국인 모임 참여 정도	41
<표 II-6-1>	정책·서비스 인지도	42
<표 II-6-2>	서비스 참여율	43
<표 II-6-3>	도움된 서비스(1순위+2순위)	44
<표 II-6-4>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주요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	44
<표 II-6-5>	서비스 참여를 위한 지원 요구	45
<표 III-1-1>	사업 추진 기관	53
<표 III-2-1>	시·군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56
<표 III-2-2>	자체예산액	57
<표 III-2-3>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사업 수행 기관	57
<표 III-2-4>	교육생 모집방법	59
<표 III-2-5>	교육생 모집의 어려움	60
<표 III-2-6>	도우미 선정의 어려움	61
<표 III-2-7>	한국어 교육 이외의 교육 및 활동	62
<표 III-2-8>	한국어 교육 이외의 교육활동 시 시·군 지원	62
<표 III-2-9>	도우미활동 중도 포기 이유	64
<표 III-2-10>	도우미활동 평가방법	65
<표 III-2-11>	사업추진상의 어려움	66
<표 III-2-12>	교육 참가 및 수료인원	66
<표 III-2-13>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68
<표 III-2-14>	사업내용의 적절성	68
<표 III-2-15>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69

<표 III-2-16> 향후 강화되어야 할 교육이나 활동방향(1순위)	70
<표 III-2-17> 향후 강화되어야 할 교육이나 활동방향(종합점수)	70
<표 III-3-1> 교육도우미의 일반적 특성	71
<표 III-3-2> 농업경력년수	72
<표 III-3-3> 교육경력년수	73
<표 III-3-4> 자원봉사경력년수	74
<표 III-3-5> 도우미 당 교육생수	75
<표 III-3-6> 교육형태	75
<표 III-3-7> 한국어 교육이 외의 교육 및 활동	76
<표 III-3-8>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교육	77
<표 III-3-9> 원활히 추진되지 않은 이유	77
<표 III-3-10> 여성결혼이민자가 교육을 중도에 포기한 이유	78
<표 III-3-11> 시·군 지원 정도	80
<표 III-3-12> 도우미간 정보 교환의 도움 정도	80
<표 III-3-13> 도우미간 정보교환 희망 내용	81
<표 III-3-14> 도우미 활동 시 어려웠던 점	82
<표 III-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83
<표 III-4-2> 출신국가별 연령층, 교육수준, 거주기간	85
<표 III-4-3> 본인과 남편의 연령층	87
<표 III-4-4> 본인과 남편의 교육수준	88
<표 III-4-5> 가족유형	89
<표 III-4-6> 동거자녀수	90
<표 III-4-7> 가구 농업경영 여부	91
<표 III-4-8> 농업구성	92
<표 III-4-9> 주 수입 농업분야	93
<표 III-4-10> 경지(논, 밭, 과수원) 소유규모	93
<표 III-4-11> 농업(경지) 경영규모	94
<표 III-4-12> 농산물 판매액	94
<표 III-4-13> 농업참여 여부	95
<표 III-4-14> 월평균 농업수입	97
<표 III-4-15> 가구 농업 참여 정도	98
<표 III-4-16> 농업의 어려움	99

<표 III-4-17> 본국에서의 취업 여부	100
<표 III-4-18> 본국에서의 취업 분야	101
<표 III-4-19> 농외취업 현황	102
<표 III-4-20> 농외취업 분야	104
<표 III-4-21> 농촌 거주 의사	107
<표 III-4-22> 이농희망 이유	108
<표 III-4-23> 부녀회 참여 여부	109
<표 III-4-24> 향후 농업 계획	111
<표 III-4-25> 희망 농업 분야	112
<표 III-4-26> 희망 농업 분야의 구성	113
<표 III-4-27>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관심	114
<표 III-4-28> 관심분야별 지원요구	116
<표 III-4-29> 농업·농촌관련 교육 요구	116
<표 III-4-30> 주요 정보 전달 통로	117
<표 III-4-31> 교육 참가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	118
<표 III-4-3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참여 분야	120
<표 III-4-3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중 주요 관심 서비스	121
<표 III-4-34>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122
<표 III-4-35> 방문교육의 어려움	125
<표 III-4-36> 비방문교육·활동 참여 장애요인	126
<표 III-4-37> 교육참여 이전 한국어 수준	127
<표 III-4-38> 교육참여 이후 한국어 수준	128
<표 III-4-39> 일반적 교육참여 경험	129
<표 III-4-40> 교육 일반에 대한 불만사항	131
<표 III-4-41> 교육 요구	132
<표 III-4-42> 교육 참여를 위한 지원 요구	133
<표 IV-1-1> 인터뷰 대상자	137
<표 IV-2-1> 야마가타현의 거주 외국인 현황	145
<표 IV-2-2> 농산어촌 여성 챌린지 지원 사업	160

그림 목 차

〈그림 I-1-1〉 국제결혼 추이: 1990-2006	4
〈그림 I-1-2〉 20-30대 성별 농가인구 추이	7
〈그림 I-1-3〉 취학 국제결혼 자녀 추이: 2005-2007	11
〈그림 II-1-1〉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분포	26
〈그림 II-1-2〉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분포	27
〈그림 II-3-1〉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기간 분포	32
〈그림 II-6-1〉 서비스요구도(5점 척도 평균점수)	44
〈그림 III-1-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지역 단위 추진체계	52
〈그림 III-1-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54
〈그림 III-2-1〉 시범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수	55
〈그림 III-2-2〉 자체예산 확보 여부	57
〈그림 III-2-3〉 사업홍보방법	58
〈그림 III-2-4〉 도움 필요한 여성이 교육생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	60
〈그림 III-2-5〉 도우미의 교육활동과정에서의 어려움 파악 방법	63
〈그림 III-2-6〉 도우미활동 중도 포기자 유무	64
〈그림 III-2-7〉 도우미활동 평가 여부	65
〈그림 III-2-8〉 교육수료율	67
〈그림 III-3-1〉 농업경력	72
〈그림 III-3-2〉 교육경력	73
〈그림 III-3-3〉 자원봉사경력	74
〈그림 III-3-4〉 교육활동 원할 추진 여부	76
〈그림 III-3-5〉 시·군으로부터 필요했던 지원내용	79
〈그림 III-4-1〉 가족유형	88
〈그림 III-4-2〉 자녀연령대	91
〈그림 III-4-3〉 농업참여 범위	96
〈그림 III-4-4〉 농업의 어려움	99
〈그림 III-4-5〉 농외취업 소득	105
〈그림 III-4-6〉 향후 농업 계획	110

<그림 III-4-7>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관심	113
<그림 III-4-8> 농업관련산업 지원 요구	115
<그림 III-4-9> 교육에 대한 사전 인식도	119
<그림 III-4-10>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122
<그림 III-4-11> 방문교육시간의 편리성	123
<그림 III-4-12> 방문교육의 장점	123
<그림 III-4-13> 방문교육의 어려움 여부	124
<그림 III-4-14> 그 밖의 참여 교육	130
<그림 III-4-15> 교육 요구	131
<그림 V-2-1> 여성결혼이민자의 기존 참여 교육과 07년 사업	174
<그림 V-2-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의 과제	175

사 진 목 차

<사진 IV-2-1> 야마가타현 지도	144
<사진 IV-2-2> 고려관의 전경과 내부	148
<사진 IV-2-3> 고려관의 식품매장	148
<사진 IV-2-4> 도자와류 김치와 냉면	149
<사진 IV-2-5> 도자와류 김치와 냉면의 인터넷 홍보	151
<사진 IV-2-6> 쓰루오카시 물산관 김치코너와 우메짱 김치	154
<사진 IV-2-7> 우메짱 김치회사와 한국식당 ‘친구’	155
<사진 IV-2-8> 우메짱 김치회사 공장 내부	156

I

서론

1. 연구 배경	3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3. 연구내용 및 방법	16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2

1.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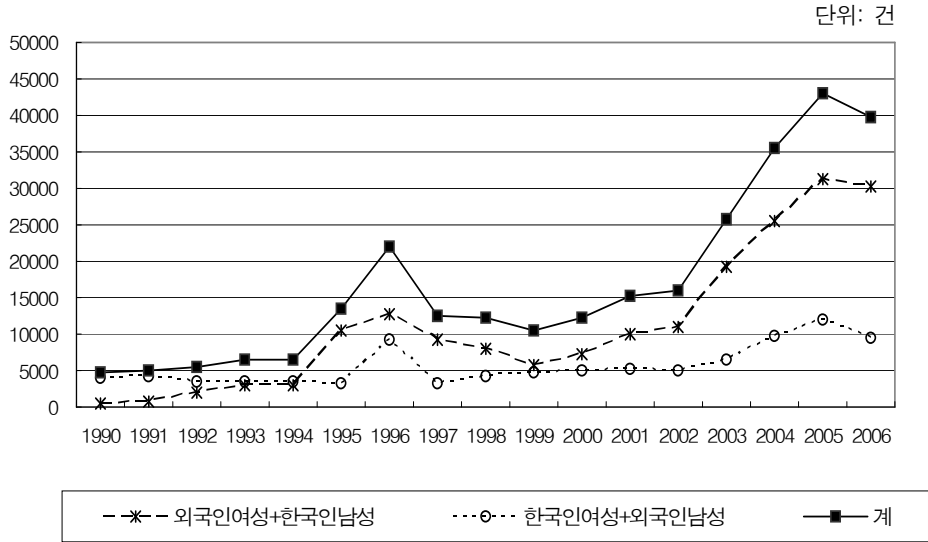
1) 농업, 농촌의 변화와 결혼이민자가족의 증가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이동이 상시적,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 체류자가 전체 인구의 1.93%를 차지할 정도로¹⁾ 한국사회의 인구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의 증가추세는 특히 두드러진다.

2006년 외국인과 한국인의 결혼은 총 39,690건으로 전체 결혼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간 결혼은 총 30,208건으로 국제결혼 중 76.1%, 전체 결혼 대비 9.9%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예측되지 못했던 바이다. 당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1%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그 경우에도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이 주종을 이루었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현저히 증가하여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 결혼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한층 가파르게 진행되어 일반적인 결혼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1) 장기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합한 95만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 단기체류자까지 합하면 100만 254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법무부 2007).

4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자료: 통계청(<http://www.kosis.kr>)

<그림 I-1-1> 국제결혼 추이: 1990-2006

<표 I-1-1> 국제결혼 추이: 1990-2006

단위: 건, %

연도	전체결혼	국제결혼		외국인여성+한국인남성		외국인남성+한국인여성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72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375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자료: 통계청(<http://www.kosis.kr>)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국제결혼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농업, 농촌 부문에서 결혼이민자의 급증세는 특히 두드러지는데, 그 주된 요인으로는 농업, 농촌의 경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촉발된 농촌, 농가인구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 전체 인구의 58.85% 수준에 이르던 농촌인구는 2005년 현재 18.5%로 감소했으며 1975년 1324만명 이상에 달하던 농가인구는 2004년 341만명으로 1975년 대비 25% 수준으로 감소했다.

<표 I-1-2> 농촌인구 추이

단위: 명(%)

연도	총인구	농촌인구		농촌여성인구		농촌남성인구	
1970	30,882,386	18,172,873	(58.85%)	9,213,939	(50.70%)	8,958,934	(49.30%)
1980	37,436,315	16,002,199	(42.75%)	7,948,023	(49.67%)	8,054,176	(50.33%)
1990	43,410,899	11,101,929	(25.57%)	5,519,268	(49.71%)	5,582,661	(50.29%)
2000	46,136,101	9,380,957	(20.33%)	3,741,038	(39.88%)	4,674,443	(49.83%)
2005	47,278,951	8,764,198	(18.54%)	4,399,084	(50.19%)	4,365,114	(49.8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표 I-1-3> 농가인구 추이

단위: 천명(%)

연도	농가인구	농가여성인구		농가남성인구	
1975	13,244	6,590	(49.8%)	6,653	(50.2%)
1980	10,826	5,411	(50.0%)	5,414	(50.0%)
1985	8,521	4,274	(50.2%)	4,246	(49.8%)
1990	6,661	3,382	(50.8%)	3,278	(49.2%)
1995	4,851	2,478	(51.1%)	2,372	(48.9%)
2000	4,031	2,060	(51.1%)	1,970	(48.9%)
2005	3,433	1,676	(48.8%)	1,757	(51.2%)

자료: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 각년도

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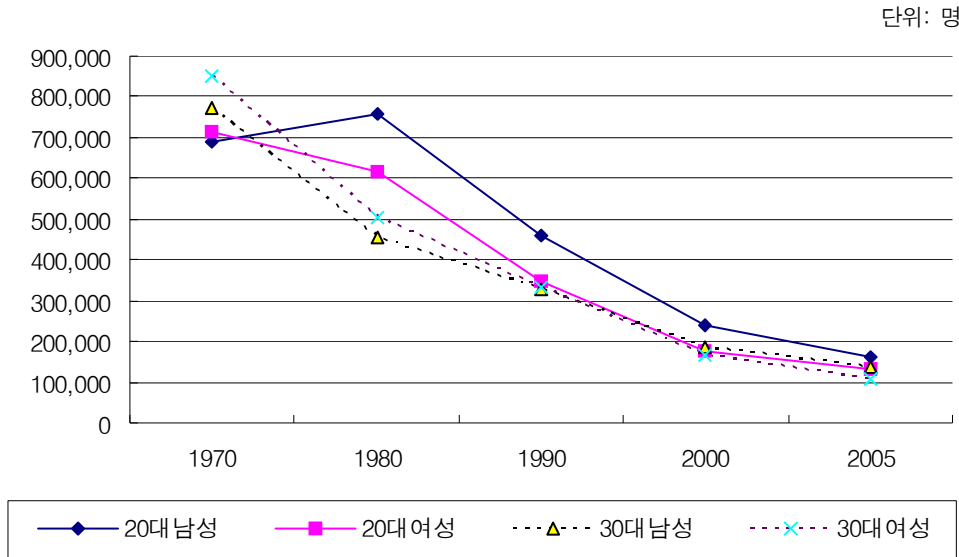
특히, 농가인구의 감소세 속에서도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연령층의 이농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세는 두드러졌다. 1970년도에는 전체 농가인구의 21.5%를 20-30대 층이 차지하던 것이 2005년에는 전체 농가인구의 15.7%로 그 비중이 떨어졌다는 점은 농촌사회에서 젊은 연령층의 감소와 그에 따른 전반적 고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젊은 연령층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성별로 감소세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농가 인구 추이의 또 하나의 현저한 특징이다. 1970년만 해도 20대 남성농가인구는 690,914명, 20대 여성은 712,341명으로 여성 100명당 남성 97명으로 여성인구의 수가 많았다. 또한 30대의 경우에는 남성 773,429명, 여성 852,698명으로 여성 100명당 남성 91명으로 여성인구 초과 현상이 더욱 컸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2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여성 농가인구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남성인구가 같은 연령대 여성인구를 초월하는 성비 역전 내지 남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0년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 123명이었으며 1990년에는 133명, 2000년에는 135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더욱 가중되었다. 또한 2000년대부터는 30대 연령층에서도 남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표 I-1-4> 20-30대 농가인구 추이

단위: 명, %

연도	농가인구	20-30대 농가인구	농가인구 중 20-30대 비율
1970	14,421,730	3,029,382	21.0
1980	10,826,748	2,329,072	21.5
1990	6,661,322	1,471,626	22.1
2000	4,031,065	769,305	19.1
2005	3,433,573	540,185	15.7



<그림 I-1-2> 20-30대 성별 농가인구 추이

농촌,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 성비 불균형의 심화 현상은 농촌사회와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생활 공간으로서 농촌사회와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은 재생산의 위기라고 할 만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젊은 연령층의 남초 현상으로 이미 1980년대부터 농촌총각 결혼문제를 위시한 농촌지역의 재생산 위기가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전개되어온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그 요인이 있다. 1990년대 전체 결혼의 1.2%에 불과하던 국제결혼이 2006년에는 전체 결혼의 11.9%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결혼 유형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경우에는 전체 결혼의 41.0%가 국제결혼일 정도로 지배적인 결혼유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1-1-5> 남성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 추이

구분	2004	2005	2006
전체결혼	310,944건	316,375건	332,752건
남성농림어업종사자 결혼	6,629건	8,027건	8,596건
남성농림어업종사자 국제결혼(남성농림어업종사자 결혼대비 국제결혼 비율)	1,814건(27.4%)	2,885건(35.9%)	3,525(41.0%)
전년대비증가율	-	59.0%↑	22.2%↑

자료: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각년도

2)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분포

2007년 4월 현재 한국사회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²⁾는 87,994명이며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는 38,991명(전체 인구의0.08%)에 이르러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치면 전체 인구의 0.26%에 달하는 126,985명이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지역에서 전체 인구 중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비중이 비교적 높아 수도권 지역에서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와 함께 국제결혼가족 자녀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0.35%에 달하는 171,21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경우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국제결혼가족 자녀가 전체 인구의 0.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이 충남, 충북, 전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전체 인구 수준에 비해 국제결혼가족 자녀가 비교적 많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계는 국민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F2 비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와 주민등록상의 통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F2비자에 기초한 통계는 상당수의 단기체류자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결혼이민자 가운데 F2비자 이외의 비자를 지니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으며 혼인귀화자에 대한 통계도 산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 통계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실질적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빠져 있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주민등록을 기초로 행정자치부가 생산한 통계를 기초로 결혼이민자 현황을 파악하였다.

<표 I-1-6> 지역별 결혼이민자 가족 현황: 2007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 인구(A)	결혼이민자 (B)			혼인귀화자 (C)			국제결혼가족자녀 (D)			(B+C)/ A	(B+C+ D)/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49,092,419	87,964	12,497	75,467	38,991	2,624	36,367	44,258	22,442	21,816	0.26	0.35
서울	10,200,096	23,413	5,141	18,272	12,484	1,322	11,162	5,305	2,695	2,610	0.35	0.40
부산	3,604,967	4,416	535	3,881	1,926	67	1,859	2,269	1,156	1,113	0.18	0.24
대구	2,496,550	2,756	260	2,496	1,053	31	1,022	2,019	997	1,022	0.15	0.23
인천	2,638,422	4,927	939	3,988	2,562	239	2,323	2,313	1,187	1,126	0.28	0.37
광주	1,410,660	1,823	162	1,661	674	19	655	1,231	523	708	0.18	0.26
대전	1,471,901	1,909	296	1,613	633	15	618	824	422	402	0.17	0.23
울산	1,093,722	1,477	97	1,380	576	6	570	884	432	452	0.19	0.27
경기	10,978,390	22,340	3,639	8,701	9,647	723	8,924	6,617	3,395	3,222	0.29	0.35
강원	1,503,471	2,257	134	2,123	993	24	969	2,366	1,229	1,137	0.22	0.37
충북	1,498,213	2,640	382	2,258	1,147	47	1,100	2,288	1,086	1,202	0.25	0.41
충남	1,979,411	3,817	196	3,621	1,504	37	1,467	3,432	1,758	1,674	0.27	0.44
전북	1,862,913	3,122	171	2,951	1,268	18	1,250	3,275	1,662	1,613	0.24	0.41
전남	1,936,494	3,817	88	3,729	1,263	17	1,246	4,153	2,130	2,023	0.26	0.48
경북	2,683,021	3,973	138	3,835	1,443	31	1,412	3,289	1,675	1,614	0.20	0.32
경남	3,175,677	4,511	240	4,271	1,636	23	1,613	3,599	1,892	1,707	0.19	0.31
제주	558,511	766	79	687	182	5	177	394	203	191	0.17	0.24
도시	43,755,260	76,505	12,181	64,324	34,603	2,559	32,044	31,619	15,995	15,624	0.25	0.33
농촌	5,337,159	11,459	316	11,143	4,388	65	4,323	12,639	6,447	6,192	0.3	0.53

자료: 행정자치부 (2007)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거주 지역을 보면, 전체 126,955명 중 111,108명 (87.5)가 도시지역(시, 구 단위)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지역(군단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는 15,847명(12.5%)에 이르고 있다. 각 지역별로 전체 거주인구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 지역의 경우 0.25%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0.3%로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전체 인구 중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국제결혼가족 자녀까지 포함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0.33%에 해당되는 이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국제결혼가족 자녀가 전체 인구의 0.53%를 차지하여 도시지역에서 보다 전체 인구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과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각국과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 분포는 결혼이민자 성별에 따라 서로 비교된다. 여성결혼이민자나 여성혼인귀화자의 경우는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비-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필리핀 등 출신자 순으로 중국과 동남아 출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베트남 출신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동남아 출신자의 비중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남성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는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 대만의 순으로 동북아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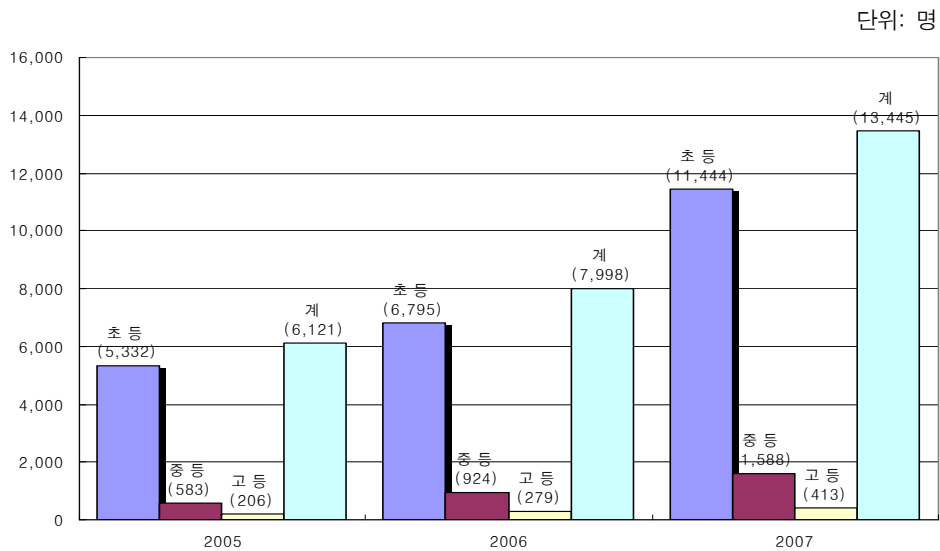
<표 I-1-7> 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

단위: 명

구 분 국 적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총계	87,964	75,467	12,497	38,991	36,367	2,624
동북아	소계	59,756	50,635	9,121	33,395	2,166
	중국	17,933	15,844	2,089	11,694	773
	중국(조선족)	29,739	25,565	4,174	20,326	1,160
	대만	4,651	2,343	2,308	618	472
	일본	5,998	5,493	505	608	529
	몽골	1,435	1,390	45	149	141
동남아	소계	21,627	21,094	533	4,778	139
	베트남	14,856	14,714	142	1,361	41
	필리핀	4,077	3,913	164	2,967	52
	태국	1,353	1,287	66	193	4
	인도네시아	393	336	57	100	8
	기타	948	844	104	157	34
남아시아 (네팔 등)	1,064	197	867	226	42	184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등)	1,320	1,232	88	216	177	39
미국	1,211	559	652	70	38	32
러시아	870	833	37	79	74	5
기타	2,116	917	1,199	227	168	59

자료: 행정자치부 (2007)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 가족의 증가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그 자녀 역시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 이미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현재 국제결혼 자녀는 총 44,258명이며 (행정자치부 2007) 이 가운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12,639명으로 전체 국제결혼 자녀의 28.5%에 해당되는 이들이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는 13,445명,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11,444명, 중등학교 1,588명, 고등학교 413명으로 이는 2006년에 비해 68.1%나 증가한 것이다. 최근의 국제결혼 급증세를 고려할 때 국제결혼가족 자녀와 이들의 취학은 앞으로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된다.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림 I-1-3> 취학 국제결혼 자녀 추이: 2005-2007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농업·농촌의 미래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의의

국제결혼의 일반화에 따라 농촌사회와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농업, 농촌의 재생산 위기가 다소나마 극복되어갈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감소 일로에 있던 남성 농림어업종사자의 결혼이 증가세로 돌아섬으로써 농촌지역사회와 산업 전망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농업·농촌종합대책」 등의 추진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활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고 농업 및 농업관련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촌지역의 인적 자원 확충을 위한 시도를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여성인적자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성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수, 원예, 축산, 친환경 농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가공, 유통, 농촌 관광 등의 농업관련산업이 전략 분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2-1> 성별 농업주종사 비율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1970		1980		1990		1995		2004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5세이상 농가인구	4,218	3,932	3,835	3,762	2,711	2,580	2,150	2,021	1,595	1,467
농업주종사 비율	27.7%	75.1%	32.7%	65.7%	54.7%	61.6%	61.8%	59.9%	66.9%	64.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의욕적인 여성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0년 여성농림업취업자 취업자는 총 622,868명으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 연령층은 2.2%인 13,686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농림부, 2006. 제2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이와 비교해 보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30대

이하의 여성결혼이민자는 2006년 현재 총 48,628명으로 양적인 면에서 2010년 예상되는 젊은 층 여성농림업취업자를 크게 압도하고 있어 농촌사회와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인력으로서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연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집단은 이미 초-고연령화된 농촌사회구조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만큼,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기초로 농촌, 농업의 새로운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요 장애요인들이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우선 농촌지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이 기초적 생활적응단계에 있는 만큼 이들의 생활 적응을 지원할 프로그램이 갖추어져야 한다.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교육 등 기초적 생활적응을 위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여성은 서비스 종류별로 7-30% 내외로 제한된 수준이다. 따라서 생활적응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서비스 추진체계가 필요한데 기관, 단체를 통한 서비스 추진과 함께 고객 지향적 서비스 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07년부터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인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적응 및 정착의 핵심주체이자 문화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의 소지가 있는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이해와 통합을 위한 가족통합교육이나 활동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지역사회 여성결혼이민자들 혹은 그 배우자나 가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경험한 어려움과 장애, 욕구, 그리고 삶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형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체성 수립에 기여한다는 취지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면대면의 방문교육 서비스의 경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혹은 가족이 경험한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애로점과 욕구, 삶의 경험 및 지역사회 환경에 기반한 극복

방안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가사와 육아문제, 농사일, 이동의 문제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 농촌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대한 적응을 돕고, 나아가 가정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방문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과 인력 등 상당한 정책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초기 단계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도에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농업 인적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방향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적응 지원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능력을 바탕으로 농업, 농촌의 미래를 열어갈 인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갖추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젊은 연령층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농업 취업률이 낮고 농업에 대한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은 지원정책에서 선결되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현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중 30.7%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취업이 극히 제한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농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05년 6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이 결정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들 중 본국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우는 7.2%에 불과하며 현재 농(어)어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7.1% 수준일 정도로 농업취업경험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설동훈

회 2006)은 지원정책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더욱이,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중 장래 희망 직업으로 농업을 고려하고 있는 여성은 3.3%에 불과하고 현재 농업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도 대부분 전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업에 대한 비전이 확고하지 못한 상태이다. 심지어 부부 중심의 농업생산구조,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추세 속에서 남편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여성은 종사하지 않는 모순되는 경향까지 나타날 정도이다(농촌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농어업 취업률 7.1%; 배우자의 농어업 취업률 24.6%)(설동훈 외 2006).

이처럼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농업에 대한 비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취업기회, 특히 농산물 가공, 유통, 농촌관광 등을 포괄한 농업 관련 산업에서의 취업기회가 제한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서비스가 개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내 갈등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변화하는 농업, 농촌 환경에 대한 비전을 형성할 기회가 제한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농촌의 활로 모색에 있어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기대되는 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적응과 생활 정착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농촌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요 서비스 가운데 한국어, 한국요리와 함께 취업교육훈련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제한되어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기본적인 생활능력을 토대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총체적으로 제공되는 농촌형 여성 결혼이민자 종합서비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이 고객 지향적 서비스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농업과 농산물 가공, 유통, 농촌관광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분야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종합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농업·농촌의 변화와 결혼이민자 가족의 증가 추이 분석

(2)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과 서비스 요구 분석

① 사회·경제학적 특성

-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특성: 가족구조, 한국생활 경험, 학력, 한국어 수준 등
- 취업 현황 및 희망
- 농촌지역주민, 농림업종사자로서의 역량 및 미래비전

②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요구와 수혜 현황

-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
- 정책 및 서비스 수혜 현황
- 정책 및 서비스 요구도

(3)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점검

- 2007년 실시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방법, 그리고 파급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점검
- 상반기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 연계체계(시·군 담당자) 등 서비스 관련 집단별로 사업 추진과정과 그에 따른 효과, 애로 사항 등 점검

①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 여성결혼이민자

- 상반기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가구 현황과 농업경영현황, 취업 경력 등 파악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 경로, 만족/불만족도와 그 내용, 주요 서비스의 효과 평가, 서비스 요구 점검
- 농촌지역,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 인적자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점검

② 서비스 제공자: 방문교육 도우미

- 교육에 대한 인식 경로, 교육내용 및 과정에 대한 만족/불만족,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도우미 활동 내용, 활동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지역사회 지원체계와의 연계성, 애로사항, 기타 의견 파악

③ 서비스연계체계: 시·군 담당자

- 농촌여성결혼이민자와 방문교육서비스 제공자를 매개하고 서비스 활동을 지원, 관리하는 기관 담당자 대상
-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업 홍보(방법, 횟수), 모집 및 선정과정(기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과정 중 사례관리 시스템 여부, 서비스에 대한 지원 여부, 기타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 및 정착을 위한 기관의 지원 방안 등 점검

(4)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벤치마킹 사례연구

① 국내 사례

-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사례연구
- 이주 전-후의 활동 과정, 활동 현황 분석
-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 분석

② 해외 정책 및 서비스 벤치마킹 사례 발굴

- 벤치마킹 사례: 일본 야마가타현
- 서비스 분야: 결혼이민자 대상 생활적응 지원프로그램, 복지서비스, 농업 관련산업 경영 지원서비스, 취업 관련 서비스 등

(5)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방안 도출

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개선방안

- 주요 교육·활동 분야별 개선방안
- 추진과정 상의 개선방안

②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을 위한 서비스 방안

- 단기적 지원 방안
- 중·장기적 지원 방안

2) 연구방법

(1) 원자료 재분석

국제결혼 추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일반적 현황 파악, 도시와 농촌지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주로 사용된 원자료는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2006)³⁾, 행정자치부 [지자체별 외국인 추진현황](2007), 통계청 [인구총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혼인이혼통계] (각년도) 등으로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해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가족 현황, 복지실태, 정책 및 서비스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2)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관련자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전국의 30개 지역에서 추진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시·군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조사지역: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추진된 전국의 30개 지역

3) 설동훈 외(2006).

<표 I-3-1> 조사대상지역

경기	이천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	단양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당진군
경북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봉화군
경남	산청군,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
전북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완주군
전남	광명시, 장흥군, 고흥군, 함평군
계	30개 지역

② 조사기간

- 서비스 이용자 조사: 2007. 11. 1 - 12. 7
- 시·군담당자 및 서비스 제공자 조사: 2007. 10. 24 - 12. 7

③ 조사대상자

- 상반기 서비스 이용자(여성결혼이민자): 577명
 - 전국 30개 지역에서 상반기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이용한 여성결혼이민자 중 베트남어, 따갈로그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등 총 6개 언어로 된 조사표를 직접 읽고 답할 수 있는 여성이 대상이 되었다.
- 서비스 제공자(방문교육 도우미): 277명
- 시·군 담당자: 30명

④ 조사내용

- 상반기 서비스 이용자(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조사는 베트남어, 따갈로그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등 총 6개 국어로 된 조사표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3-2> 서비스 이용자(여성결혼이민자) 설문조사 내용

분야	세부내용
인구·사회학적 배경 가족관계	출신국가, 연령, 학력, 한국생활기간 남편의 연령, 학력 자녀수, 연령 가족구조, 결혼기간
농업경영현황	농업경영여부, 경영분야, 연간농산물판매액, 농지 및 시설 소유·경영규모
취업경력(농업, 농외취업)	농업경력, 농업소득, 농업기여도, 애로사항 농외취업, 농외소득 본국에서의 취업경력, 한국에서의 취업경력 취업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 남편 직업
농촌거주 및 농업 참여 희망, 지원 요구	농촌거주의사, 이농희망이유 부녀회 참여 여부 향후 농업계획, 희망 농업 분야 희망 농업관련산업, 지원 요구 교육 요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참여 경험	교육·활동 내용 정보 접근 경로, 사전 정보 인식도 주요 관심 내용 만족도, 교육효과(한국어능력 향상 정도) 애로사항 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
그 외 교육 참여 경험	그 외 교육참여 여부, 교육 내용 불만족사항 교육에 대한 요구 교육참여를 위한 지원 요구

- 서비스 제공자(방문교육 도우미)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I-3-3> 서비스 제공자(방문교육 도우미) 설문조사 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교육의 내용과 방법 - 교육·활동 계획 - 교육·활동 추진과정 - 교육대상자 관련 - 시·군 지원에 대한 요구, 요구 충족도 - 도우미 간 네트워킹 활동, 유용성, 요구 - 활동의 애로사항 - 향후 활동 의사 |
|---|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시·군 담당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문하였다.

<표 I-3-4> 시·군 담당자 설문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사업 홍보 방법-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모집 및 선정과정(기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사업대상자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 여부-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활동 성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 사업 추진의 어려움-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

(3) 심층인터뷰 및 FGI

본 연구에서는 연구 초기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있는 30개 시·군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표를 개발하였다. 이외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의 실제 추진과정과 세부 활동·업무 내용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시·군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자와의 인터뷰도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 참여 경험,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4) 해외사례 연구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는 세계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한국사회와 유사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급증한 경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야마가타현의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인터뷰하여 이들이 일본 농촌 사회에 정착하고 농업관련산업에 참여해온 과정, 이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 등을 파악하여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벤치마킹 사례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5) 전문가 워크숍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 과정별로 여성농업인 및 여성 결혼이민자 정책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알맞은 농촌형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 개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초기 단계에 있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이를 토대로 종합 지원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지역,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인적자원으로서 중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본격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농촌사회와 농업 및 관련산업의 새로운 인적자원 풀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활용방안

본 연구 결과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서비스를 개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종합지원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는데에도 활용될 것이다.

II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1. 일반적 현황	25
2. 가족구성 및 자녀양육	28
3. 한국생활 적응 정도	31
4. 농촌지역주민, 농업종사자로서의 역량	35
5. 사회적 관계	39
6. 서비스 수혜 및 요구	42

본 장에서는 농촌과 도시를 포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을 파악한 기존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와 농촌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가족관계 및 자녀양육, 한국생활 적응 정도, 사회관계 상의 특징과 서비스 요구, 농촌지역주민, 농림업 종사자로서의 역량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 일반적 현황

2007년 4월 현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는 총 126,955명으로 이 가운데 12.5%인 15,847명이 농촌지역(군단위)에 거주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가 11,143명이고 혼인귀화자는 4,323명 등 총 15,531명으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98.0%가 여성결혼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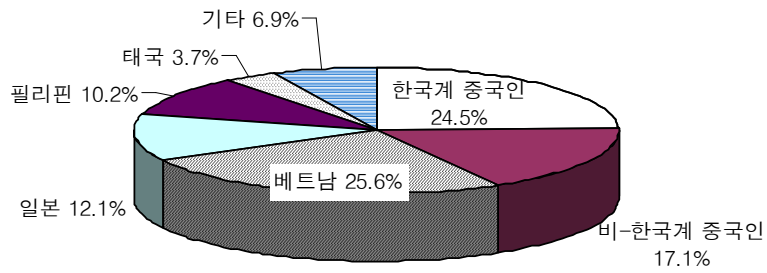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한국계 중국인이 각각 49.8%, 39.4%이고 중국 한족이 21.0%, 25.5%인데 비해,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에는 한국계 중국인이 24.5%, 중국 한족이 17.1%로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서는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 한족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에는 베트남 출신이 25.6%, 일본 출신이 12.1%, 필리핀 출신이 10.2%, 태국 출신이 3.7%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동남아 국가와 일본 출신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II-1-1>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분포

단위: %

구분	한국계 중국인	중국 한족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기타	계
농촌	24.5	17.1	25.6	12.1	10.2	3.7	6.9	100.0
중소도시	39.4	25.5	11.4	9.1	4.3	1.8	8.5	100.0
대도시	49.8	21.0	8.8	7.0	3.3	1.2	8.8	100.0

자료: 법무부(2006) 국내결혼이민자 현황 데이터 베이스 원자료, 설동훈 외(2006)



자료: 설동훈 외(2006)

<그림 II-1-1>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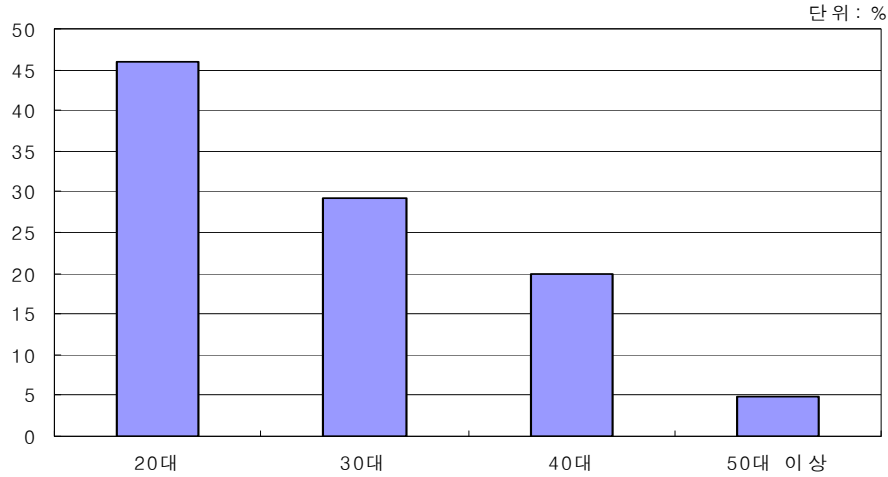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농촌지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에는 20대 연령층이 45.9%이며 30대가 29.3%로 75.2%가 20-30대 연령층에 해당된다. 이밖에 40대 연령층은 20.0%, 50대 이상층은 4.9%이다. 이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20대가 각각 28.0%, 33.2%, 30대가 32.8%, 33.0%로 20-30대 연령층이 대도시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60.8%, 중소도시거주자의 경우에는 66.2%로 도시 거주자에 비해 농촌지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에 20-30대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분포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농촌	45.9	29.3	20.0	4.9	100.0
중소도시	33.2	33.0	26.3	7.5	100.0
대도시	28.0	32.8	29.7	9.5	100.0

자료: 법무부(2006) 국내결혼이민자 현황 데이터 베이스 원자료, 설동훈 외(2006)



자료: 설동훈 외(2006)

<그림 II-1-2>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분포

여성결혼이민자 평균연령과 배우자의 평균연령을 비교해보면, 농촌지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은 31.1세인데 비해, 이들의 배우자의 평균연령은 40.7세로 배우자의 연령이 이민자에 비해 평균 9.8세 높다. 도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평균연령이 33.7세이고 배우자의 평균연령은 42.4세, 이들 간의 연령차이는 8.7세로 나타나 도시 지역과 비교해 농촌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평균연령이 낮고 연령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지역별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의 평균 연령

단위: 세, 명, %

구분	이민자 연령	배우자 연령	이민자 연령 - 배우자 연령	계
농촌	31.1	40.7	-9.8	234(100.0)
도시	33.7	42.4	-8.7	804(100.0)
전체	33.1	42.0	-8.9	1,038(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중졸 이하는 29.0%, 고졸은 42.7%, 전문대졸 이상은 26.6%인데 비해, 도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는

중졸 이하 36.1%, 고졸 37.8%, 전문대졸 이상이 24.0%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도시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교육수준과 비교해보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본인의 학력이 배우자 보다 낮은 경우가 22.3%이고 교육수준이 같거나 본인의 교육 수준이 배우자 보다 높은 경우가 각각 43.7%, 34.1%로 여성결혼이민자 중 77.8%가 배우자와 교육수준이 같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지역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교육수준 단위: %, 명

구분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무응답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무응답	
농촌	29.0	42.7	26.6	1.7	29.9	53.1	12.9	4.1	241(100.0)
도시	36.1	37.8	24.0	2.1	26.4	51.9	19.2	2.4	822(100.0)
전체	34.5	38.9	24.6	2.0	27.2	52.2	17.8	2.8	1,063(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표 II-1-5> 지역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교육수준 차이 단위: %, 명

구분	이민자 학력이 한국인 배우자보다 낮음	이민자 학력과 한국인 배우자 학력이 같음	이민자 학력이 한국인 배우자보다 높음	계
농촌	22.3	43.7	34.1	229(100.0)
도시	25.3	53.1	21.5	789(100.0)
전체	24.7	51.0	24.4	1,018(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2. 가족구성 및 자녀양육

여성결혼이민자가 우선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보면 자녀와 거주하는 비율이 농촌 지역 거주자 가운데에는 65.7%, 도시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54.8%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자녀와 거주하는 비율이 높

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37.3%, 도시 지역 거주자 중에는 20.0%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 여성결혼이민자의 동거가족

단위: %, 명

구분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국에서 온 가족	1인 거주	기타	계
농촌	89.7	65.7	37.3	5.2	1.3	0.9	1.3	233(100.0)
도시	87.0	54.8	20.0	4.1	3.6	0.6	1.1	801(100.0)
전체	87.6	57.3	23.9	4.4	3.1	0.7	1.2	1,034(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자녀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40.2%이며 자녀가 1명인 여성결혼이민자는 33.6%, 2명인 경우는 18.3%, 3명 이상인 경우는 7.9%로 나타났으며 평균 자녀수는 1.0명이다. 이에 비해,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55.0%, 1명인 경우는 25.3%, 2명인 경우는 15.3%, 3명 이상인 경우는 4.0%로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많고 자녀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산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자녀수					평균 자녀수	계
	0명	1명	2명	3명	4명		
농촌	40.2	33.6	18.3	5.8	2.1	1.0	241(100.0)
도시	55.0	25.3	15.7	3.4	0.6	0.7	822(100.0)
전체	51.6	27.2	16.3	4.0	0.9	0.8	1,063(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출산자녀의 취학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미취학 자녀가 44.7%이며 취학 자녀는 55.3%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는 31.6%, 초등학교 취학 자녀는 20.9%로 취학 자녀 대부분이 초등학교 입학 전이거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혼이 2000년대 이후에 급증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 대부분이 아직 취학 전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상황이다. 이에 비해 중학교 재학 자녀는 1.3%, 고등학교 재학 자녀는 0.9% 수준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자녀 취학 현황을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미취학 자녀의 경우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자녀 중 50.2%, 도시지역 자녀 중 42.5%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자녀중 아직 취학하지 않은 자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는 농촌지역 자녀의 경우 30.1%, 도시 지역 자녀 중에는 32.2%이며, 초등학교 재학생은 농촌지역 자녀 중에는 19.2%, 도시지역 자녀 중에는 21.6%로 도시지역 자녀가 농촌지역 자녀에 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연령층이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소수에 불과한 가운데에서도 주로 도시 지역 자녀들이었으므로 나타났다.

<표 II-2-3>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취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미취학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농촌	50.2	30.1	19.2	0.5	-	-	219(100.0)
도시	42.5	32.2	21.6	1.6	1.2	0.9	569(100.0)
전체	44.7	31.6	20.9	1.3	0.9	0.6	788(100.0)

* 출산자녀 기준

자료: 설동훈 외(2006)

아직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자녀를 주로 어디에서 양육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사설학원, 한글교실 등 기관에서 주로 양육하는 경우가 전체의 17.9%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13.4%인데 비해, 도시 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19.8%가 시설에서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의 보육 관련 시설 이용율이 낮은 가운데에서도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시설 이용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취학 자

녀를 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56.7%가 자신이나 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이 집에서 돌보고 있으며 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38.9%로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가 미취학 자녀를 집에서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4> 미취학자녀의 주 양육자기관

단위: %, 명

구분	나.배우자 .기타가족	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사설학원	한글교실	이민자의 친구	아이 혼자 지냄	계
농촌	56.7	10.4	2.4	0.6	0.0	0.0	29.9	164(100.0)
도시	38.9	9.9	9.2	0.5	0.2	0.2	41.1	404(100.0)
전체	44.0	10.0	7.2	0.5	0.2	0.2	37.9	568(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한 달 평균 자녀보육에 드는 비용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238,403원인데 비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평균 287,785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보육비용이 도시 지역 여성보다 평균 49,382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5> 지역별 월평균 보육비

구분	월평균 보육비	사례수
농촌	238,403원	144명
도시	287,785원	316명
전체	272,326원	460명

자료: 설동훈 외(2006)

3. 한국생활 적응 정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체류기간을 보면, 한국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30.6%이며 2년 미만인 경우가 23.7%로 54.3%가 한국생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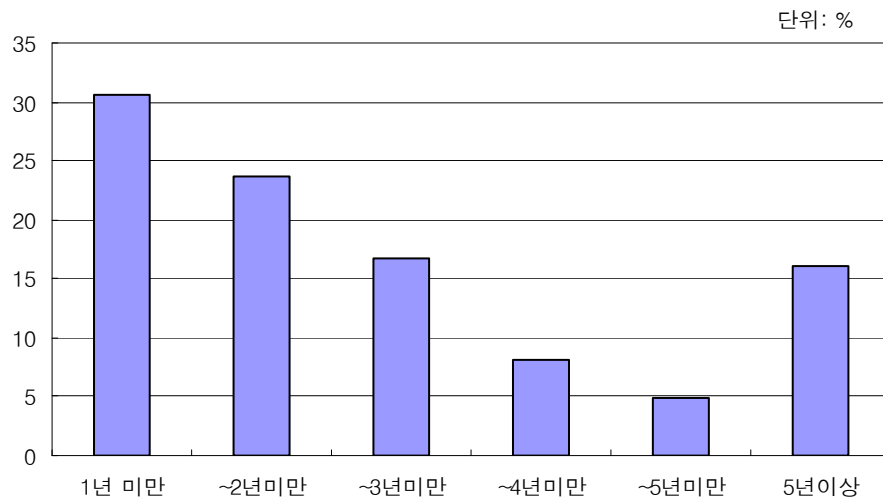
2년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3년 미만인 경우는 16.8%, 3년-4년 미만은 8.1%, 4년-5년 미만은 4.9%, 5년 이상은 16.0%이다.

<표 II-3-1>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체류기간

단위: %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계
농촌	30.6	23.7	16.8	8.1	4.9	16.0	100.0
중소도시	27.9	27.1	18.7	9.2	5.2	11.9	100.0
대도시	27.9	27.9	19.2	9.0	5.3	10.7	100.0

자료: 법무부(2006) 국내결혼이민자 현황 데이터 베이스 원자료, 설동훈 외(2006)



자료: 설동훈 외(2006)

<그림 II-3-1>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기간 분포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경로를 보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25.8%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준 이가 아무도 없어 도시 여성결혼이민자(19.6%)에 비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가 없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중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던 경우는 19.1%였으며 친척을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된 이는 11.1%, 알고 지내던 본국인이 한국에

대해 주로 알려준 경우는 16.9%였다. 이외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중 8.4%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제공받았으며 영화나 대중매체를 통해 주로 정보를 얻은 이들도 7.1%에 달했다.

<표 II-3-2> 한국 도착 전 한국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단위: %, 명

구분	아무도 없음	친구 선후배	친척	알고 지냈던 본국인	나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언론매체, 영화	결혼 중개업체	나의 부모	계
농촌	25.8	19.1	11.1	16.9	4.9	7.1	8.4	3.6	225(100.0)
도시	19.6	20.5	15.7	13.1	9.0	7.4	4.5	3.8	757(100.0)
전체	21.0	20.2	14.7	14.0	8.0	7.3	5.4	3.8	982(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언어 문제로 이들이 주로 한국어를 습득한 방법을 보면,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는 47.1%가 본국에서부터 배웠으며 26.4%의 여성이 한국에서 배우자나 가족에게서 배운 것으로, 15.8%는 혼자서 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로 한글 교실 등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한 여성결혼이민자는 9.3%에 불과했다. 거주지역 별로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에는 본국에서 배운 여성이 29.4%로 도시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본국에서 배운 여성이 적는데 비해, 집에서 가족에게 배우는 경우와 혼자서 독학으로 배우는 경우는 도시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된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3-3> 한국어 습득 방법

단위: %, 명

구분	본국에서 배움	한국에서 배우자 또는 가족	독학 (혼자서)	한국의 한글교실, 학교, 학원	기타	계
농촌	29.4	36.0	20.2	13.6	0.9	228(100.0)
도시	52.2	23.7	14.6	8.1	1.5	790(100.0)
전체	47.1	26.4	15.8	9.3	1.4	1,018(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한국어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중 19.3%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도시 지역 거주자에 비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현저히 많았다.

<표 II-3-4> 한국어 사용 불편정도

단위: %, 명

구분	불편함	보통	불편하지 않음	계
농촌	19.3	16.2	64.5	228(100.0)
도시	12.7	21.4	65.8	770(100.0)
전체	14.2	20.2	65.5	998(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한국 거주기간이 비교적 짧은 여성들이 많고 출신국가도 조선족의 비율은 적고 동남아 출신자들은 많아 기본적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집에서 가족들이나 본인이 독학으로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구사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결혼이민자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해 직면하는 어려움과도 관련이 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보면 본인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경우가 35.8%로 도시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자신의 한국어 능력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지적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방안에 있어서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50.9%가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학습 지도 등에 있어 도움이 되는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여 도시 지역 거주자에 비해 많은 이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표 II-3-5>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어려움 없음	한국어 소통능력 미흡	빈곤하여 양육비 교육비 지출 힘들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	아이 돌봐줄 사람과 보육시설이 없음	기타	계
농촌	42.8	35.8	17.6	9.1	3.2	12.3	187(100.0)
도시	37.4	29.4	23.8	12.1	11.3	9.4	513(100.0)
전체	38.9	31.1	22.1	11.3	9.1	10.1	700(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표 II-3-6> 자녀 양육 지원 요구

단위: %, 명

구분	자녀와 의사소통·학습 지도 도움 되는 언어교육	자녀양육정보 교환 또래 아이부모모임	나를 이해하도록 배우자 대상교육	내 나라 말로 된 보육 관련 자료	기타	계
농촌	50.9	23.3	10.1	11.3	4.4	159(100.0)
도시	45.7	35.3	7.5	5.5	6.0	416(100.0)
전체	47.1	32.0	8.2	7.1	5.6	575(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4. 농촌지역주민, 농업종사자로서의 역량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20-30대의 저연령층이 대부분이며 교육수준도 비교적 높은 이들이 많다는 점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초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은 농촌사회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의 실현 가능성은 농촌지역과 농업에 대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평가, 앞으로의 전망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우선 이들이 농촌 지역에 어느 정도로 익숙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본국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62.4%가 본국에서도 농촌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상당수는 농촌 환경에 익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국에서 도시 지역에 거주했

던 이들도 37.6%나 되어 이들의 경우에는 한국사회로의 이주에 따른 문화적 충격과 적응의 어려움 이외에 거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4-1> 본국에서의 거주지역

단위: %, 명

구분	본국 거주지역		계
	농촌	도시	
현재 거주지역	농촌	37.6	234(100.0)
	도시	47.6	799(100.0)
	전체	50.9	1,033(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 정도와 활동 역량을 판단하는데 있어 경제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현황을 보면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31.1%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비해 도시 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35.2%가 취업을 하고 있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농촌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중에는 95.8%, 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중에는 91.3%가 취업을 하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와는 달리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도시 지역 거주자에 비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취업 현황

단위: %, 명

구분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농촌	241(31.1)	236(95.8)
도시	819(35.2)	806(91.3)
전체	1,060(34.2)	1,042(92.3)

자료: 설동훈 외(2006)

이처럼 현재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률이 낮은 것과 비교하면 한국으로 오기 전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에는 75.8%, 도시 지역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에는 75.2%로 본국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한국사회로 이주해오면서 절반 이상이 직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3> 본국에서의 직업

단위: %, 명

구분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	공장· 육체노동	사무직	전문· 준전문직	무직· 기타	계
농촌	7.2	4.3	17.9	16.4	24.2	5.8	24.2	207(100.0)
도시	6.5	6.7	21.0	13.8	17.3	9.9	24.7	704(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본국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보면 사무직과 서비스직, 공장노동 등에 종사했던 여성이 많았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에도 본국에서 사무직에 종사했던 여성이 24.2%, 서비스직에 종사했던 여성이 17.9%, 공장·육체노동에 종사했던 여성이 16.4%인데 비해, 농어업에 종사했던 경우는 7.2%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본국에서 농촌에 거주한 경험이 있어 농촌의 거주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낯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비해, 농업종사경험이 있는 이들이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농업 자체에 익숙한 경우는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을 보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7.1%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이들의 배우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24.6%로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농업구조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은 매우 특수한 현상으로 국제결혼 가족의 농업 구조, 가족 구조 등과 더불어 농업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4-4>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재 직업

단위: %, 명

구분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	공장· 육체노동	사무직	전문· 준전문직	무직· 기타	계
농촌	7.1	3.7	5.0	9.1	2.9	2.9	69.3	241(100.0)
도시	0.7	3.6	15.5	8.0	2.3	2.9	66.3	815(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표 II-4-5> 배우자의 현재 직업

단위: %, 명

구분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	공장· 육체노동	사무직	전문· 준전문직	무직· 기타	계
농촌	24.6	15.0	3.3	44.6	7.1	1.3	4.2	240(100.0)
도시	3.4	23.1	5.7	42.9	11.7	3.1	10.1	813(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그리고 농업, 농촌의 미래와 관련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향후 희망하는 직업에 있어서 농업을 선호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향후 농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3.3%에 불과하며 대부분 사무직이나 전문·준전문직, 자영업, 서비스업 등 농업 이외의 직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6> 장래 희망 직업

단위: %, 명

구분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	공장· 육체노동	사무직	전문· 준전문직	무직· 기타	계
농촌	3.3	13.1	12.6	10.4	14.2	13.1	33.3	183(100.0)
도시	0.7	19.2	14.6	10.5	13.1	22.4	19.7	590(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현재의 직업과 장래 희망 직업을 비교해보면,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앞으로도 농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17.6%에 불과해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소수만이 농업에 종사하는 현실에서 이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농업을 그만두기를 원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과 농업 종사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농업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4-7>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재 직업과 장래 희망 직업

단위: %, 명

구분	장래 희망 직업							계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	공장· 육체노동	사무직	전문· 준전문직	무직· 기타		
현재 직업	농어업	17.6	11.8	5.9	23.5	5.9	17.6	17.6	17(100.0)
	자영업	0.0	75.8	0.0	0.0	0.0	21.2	3.0	33(100.0)
	서비스직	0.0	32.0	32.0	8.0	8.0	12.0	8.0	100(100.0)
	공장·육체노동	0.0	23.8	6.7	37.1	12.4	6.7	13.3	105(100.0)
	사무직	0.0	16.0	0.0	0.0	52.0	20.0	12.0	25(100.0)
	전문·준전문직	0.0	6.5	0.0	2.2	2.2	89.1	0.0	46(100.0)
	무직·기타	1.3	13.5	13.5	8.9	14.4	19.2	29.1	526(100.0)
	전체	1.2	19.0	13.0	11.6	13.1	20.7	21.4	852(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표 II-4-8>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과거/현재/장래희망 직업

단위: %

구분	본국에서의직업	현재직업	장래희망직업
농어업	7.2	7.1	3.3
자영업	4.3	3.7	13.1
서비스	17.9	5.0	12.6
공장·육체노동	16.4	9.1	10.4
사무직	24.2	2.9	14.2
전문·준전문직	5.8	2.9	13.1
무직·기타	24.2	69.3	33.3

자료: 설동훈 외(2006)

5. 사회적 관계

경제활동과 더불어 사회성원들과의 관계 역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 통합 정도와 농촌 정착 의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파악

하기 위해 주위에 가깝게 지내는 인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직장이나 일터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18.7%에 불과해 도시 지역 여성에 비해 직장이나 일터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웃이나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시 거주자 가운데에는 46.8%만이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에는 62.2%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해 지역사회성원들과의 관계는 비교적 돈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모임이나 교회 등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중 44.0%가 있다고 응답해 33.6%만이 있다고 응답한 도시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모임이나 교회 등에서도 가깝게 지내는 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농촌사회의 특수성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도 주로 지역사회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5-1> 가깝게 지내는 주위인물

단위: %, 명

구분	직장·일터		이웃·동네		모임·교회 등		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농촌	18.7	81.3	62.2	37.8	44.0	56.0	241(100.0)
도시	24.2	75.8	46.8	53.2	33.6	66.4	822(100.0)
전체	23.0	77.0	50.3	49.7	35.9	64.1	1,063(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는 과연 어떠한 이들인지 살펴보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75.1%가 자신과 같은 국가 출신자 가운데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해 같은 국가 출신자들과 친밀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인 친구에 대해서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46.1%만이 있다고 한데 비해, 53.9%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국인 친구는 없다고 응답해 한국인과 친구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82.0%가 같은 국가 출신을 가장 가까운 상대로 선택한 데 비해, 한국인을 선

택한 이들은 16.4%에 불과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친구관계에 있어 같은 국가 출신자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비해, 한국인 친구관계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5-2> 출신국가별 친구관계

단위: %, 명

구분	본국인 친구		한국인 친구		제3국인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			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본국인	한국인	제3국인	
농촌	75.1	24.9	46.1	53.9	19.5	80.5	82.0	16.4	1.6	241(100.0)
도시	70.6	29.4	47.1	52.9	12.3	87.7	76.5	22.4	1.2	822(100.0)
전체	71.6	28.4	46.8	53.2	13.9	86.1	77.7	21.1	1.3	1,063(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이러한 점은 같은 국가 출신자들과의 모임 참여율에 있어서도 확인되는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40.2%가 참여한 적 없다고 한데 비해 도시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에는 52.8%가 모임에 참석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같은 국가 출신자들과의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년에 1-2번 참여하는 여성은 16.2%, 1년에 3-4번 참석하는 여성은 6.6%, 2달에 한번 참석하는 경우는 5.4%였으며, 매달 참석하거나 매주 또는 그 이상으로 자주 만나는 이들도 각각 15.4%, 16.2%에 달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같은 국가 출신자들과의 만남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3> 본국인 모임 참여 정도

단위: %, 명

구분	참석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2달에 1번	매달	매주 또는 그 이상	계
농촌	40.2	16.2	6.6	5.4	15.4	16.2	241(100.0)
도시	52.8	14.4	7.7	9.4	8.0	7.8	822(100.0)
전체	50.0	14.8	7.4	8.5	9.7	9.7	1,063(100.0)

자료: 설동훈 외(2006)

6. 서비스 수혜 및 요구

2006년 이후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 제도와 서비스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한 제도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빈곤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빈곤층 생계·의료비 지원 등 빈곤층 결혼이민자를 위한 복지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도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보다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건소를 통한 임·출산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생활 정보 제공 등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통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농촌거주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족폭력, 여성폭력과 관련된 지원체계나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 등에 있어서는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지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1> 정책·서비스 인지도

단위: %

구분	빈곤층영유아 보육료지원	빈곤층생계· 의료비지원	가정폭력피 해자보호	여성긴급 전화	보건소의 임·출산지원	노동부고용지 원센터,지자체 의일자리알선	지자체의생 활정보제공
농촌(133)	56.4	51.1	40.6	30.1	39.8	25.6	22.6
도시(468)	51.5	47.0	41.5	38.0	32.7	29.7	18.6
전체(601)	52.6	47.9	41.3	36.3	34.3	28.8	19.565

자료: 설동훈 외(2006)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각 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주요서비스에 대한 참가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참가해본 여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문화교육, 한국요리강습, 정보화 교육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가족관계 상담이나 가족폭력 상담 등은 참여율이 낮았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 일반을 위한 서비스라기 보다는 특정한 상황에 놓인 여성결혼이민자에 특화된 서비스로서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취업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이 워낙 제한되어 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참여율을 거주지역 별로 비교해보면, 취업교육훈련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도시 거주자에 비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서비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2> 서비스 참여율

단위: %

구분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 강습	한국문화 교육	가족관계 상담	가족폭력 상담	정보화 교육	취업교육 훈련
농촌(241)	32.8	22.0	21.6	13.3	7.9	20.3	7.9
도시(822)	20.6	17.0	17.8	10.0	7.1	13.0	9.1
전체(1063)	23.3	18.2	18.6	10.7	7.2	14.7	7.2

자료: 설동훈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각종 서비스 가운데 도움이 된 서비스를 보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운데 70.4%가 한국어 교육이 도움이 된 것으로 응답해 가장 많은 이들이 한국어 교육의 유용성을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요리 강습을 지정한 이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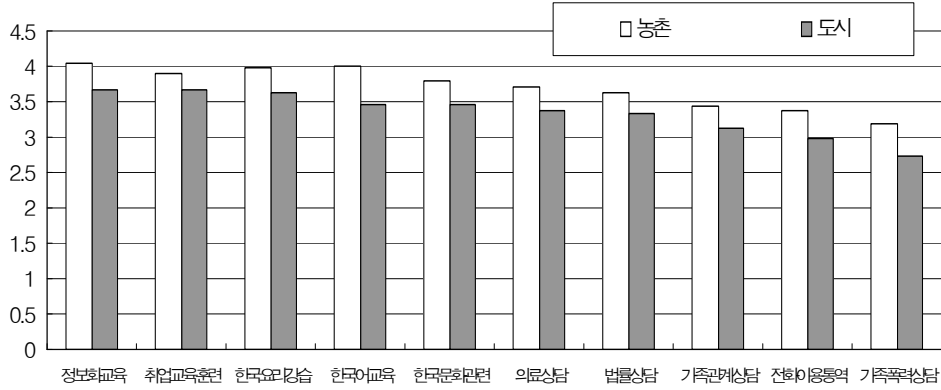
<표 II-6-3> 도움된 서비스(1순위+2순위)

단위: %

구분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 강습	한국문화 교육	가족관계 상담	가족폭력 상담	정보화 교육	취업교육 훈련
농촌(125)	70.4	32.8	26.4	24.0	16.0	8.0	4.0
도시(395)	51.1	32.4	27.3	24.3	23.5	8.9	2.8

자료: 설동훈 외(2006)

서비스 요구도에 있어서는 정보화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요리 강습, 취업교육 훈련 등에 대한 요구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있어 도시 지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설동훈 외(2006)

<그림 II-6-1> 서비스요구도(5점 척도 평균점수)

<표 II-6-4>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주요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
단위: %

구분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요구 (1+2순위)	가장 큰 도움 (1+2순위)
한국어	32.8	56.5	70.4
한국요리	22.0	33.5	32.8
한국문화	21.6	25.8	26.4
가족관계상담	13.3	5.7	8.0
컴퓨터·정보화교육	20.3	25.4	24.0
취업교육훈련	7.9	28.7	16.0

자료: 설동훈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 등 각종 서비스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점에 있어서는 가족들의 허락과 지원을 꾀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편리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 교육에 참여할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그리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 이외에 교통편을 지원해줄 것에 대한 요구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상당히 높아 농촌지역의 특성상 지리적 접근성이 어려운 점이 서비스 참여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5> 서비스 참여를 위한 지원 요구

단위: %

구분	가족의허락, 지원	편리한시간	자녀돌봄	교통편	통역서비스	기타
농촌(211)	29.9	25.6	21.8	16.6	5.7	0.5
도시(701)	28.7	25.5	24.5	10.6	6.7	4.0
전체(912)	28.9	25.5	23.9	12.0	6.5	3.2

자료: 설동훈 외(2006)

Ⅲ

20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점검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개요	49
2. 시·군 담당자 조사 결과	54
3. 서비스 제공자(교육도우미) 조사 결과	70
4. 서비스 이용자(여성결혼이민자) 조사 결과	82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개요

1) 목적과 주요 내용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사회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결혼이민자,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기본적 생활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며 기초적 적응을 거친 이후에도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는데 다양한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원활히 통합되어 완전한 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교육, 취업기술교육 및 일자리 알선, 가족 및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각종 서비스 인프라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는 현실에서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서비스 수혜에서 소외되기 쉽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 가운데에서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 중에는 조선족 보다는 동남아 출신자가 많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 체류기간이 짧고 본국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등 기본적인 생활 적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근 들어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각종 기관과 단체를 통해 서비스가 다각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서비스 참여율이 높아지고는 있다. 하지만, 교통과 지리적 근접성 등 농촌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접근성의 제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07년 농림부에서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로 방문도우미 서비스를 채택해 전국의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가족관계증진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농촌 정착에 기

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초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현실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업, 농촌의 핵심 인적자원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주요 골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각종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외부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교육은 크게 방문 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소그룹 교육 또는 시군에 따라 대그룹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방문 교육은 도우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1:1로 교육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 내에 시설이나 다른 가정을 이용하여 2-3명을 함께 교육할 수도 있음) 농림부가 개발한 교재를 가지고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도우미와 여성결혼이민자간에 개인적 친밀관계가 쌓이면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방문교육과 함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서는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함께 모여 한국어교육이나 요리강습, 문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⁴⁾.

2) 추진체계

(1) 시행절차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개인 대 개인의 대면과 소통을 통해 서비스를 추진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만큼, 적절한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연계하는 것이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도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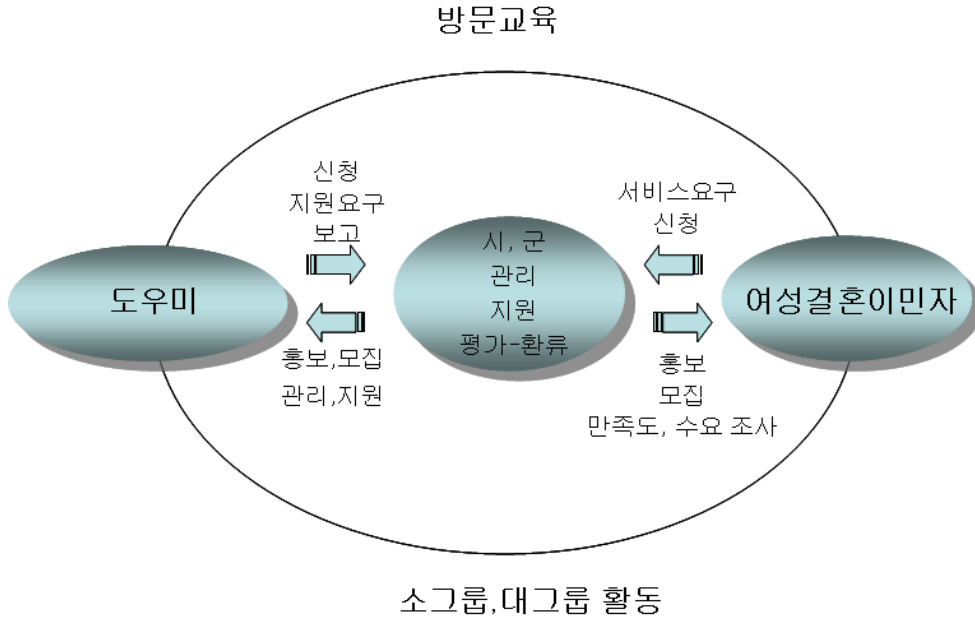
이 가운데 서비스 참여자 선정은 가족들이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으로 사업 대상 시·군에서 지역 내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가족

4) 이밖에 도차원에서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부교실이나 가족 캠프를 추진하고 모범적으로 정착한 가족을 선발하여 모국방문 비용을 지원하고 선진 영농현장을 견학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 군 차원에서 도우미를 중심으로 방문 교육과 소그룹, 대그룹 교육·활동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현황, 직업, 영농규모 등과 함께 한국어 수준, 방문교육 희망여부 등을 파악하는 한편, 교육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가 직접 시, 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현황조사와 신청에 따라 수요자 풀이 구성되면 그 가운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선발 기준은 우선적으로 한국어 수준이 낮은 농가 우선으로 선정하고 한국어 수준이 같은 정도면 가족구조를 고려해 시부모 동거 가족, 자녀가 있는 가족,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족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농가에서 지원대상자가 없을 경우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가 중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시·군 별로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서비스 제공자(교육도우미) 자격 기준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자나 인근 시군 거주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농림부의 공개모집에 응모한 이들이 대상이 된다. 응보자 가운데 시군별로 11명(예비 도우미 1명 포함)을 선정하는데, 관리기관에서 시·군별로 위촉한 선발위원이 서면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자원봉사경력, 교육 및 농업관련 경력, 헌신·봉사성, 교육자질, 외국어 수준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교육도우미들은 상, 하반기 각각 3명(연 6명)의 여성결혼이민자를 22주 동안 1주일에 3회씩 방문하여 교육과 상담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1주당 방문 2회, 소그룹 1회). 선발된 도우미는 관리기관에서 도우미로서의 교수방법과 상담기법 등 기본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교육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총 66시간 가운데 적어도 50시간은 농림부의 한국어 교재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는 도우미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나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도우미는 교육활동의 성과를 일일 활동일지, 가구별 지원일지 형식으로 기록해 시,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Ⅲ-1-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지역 단위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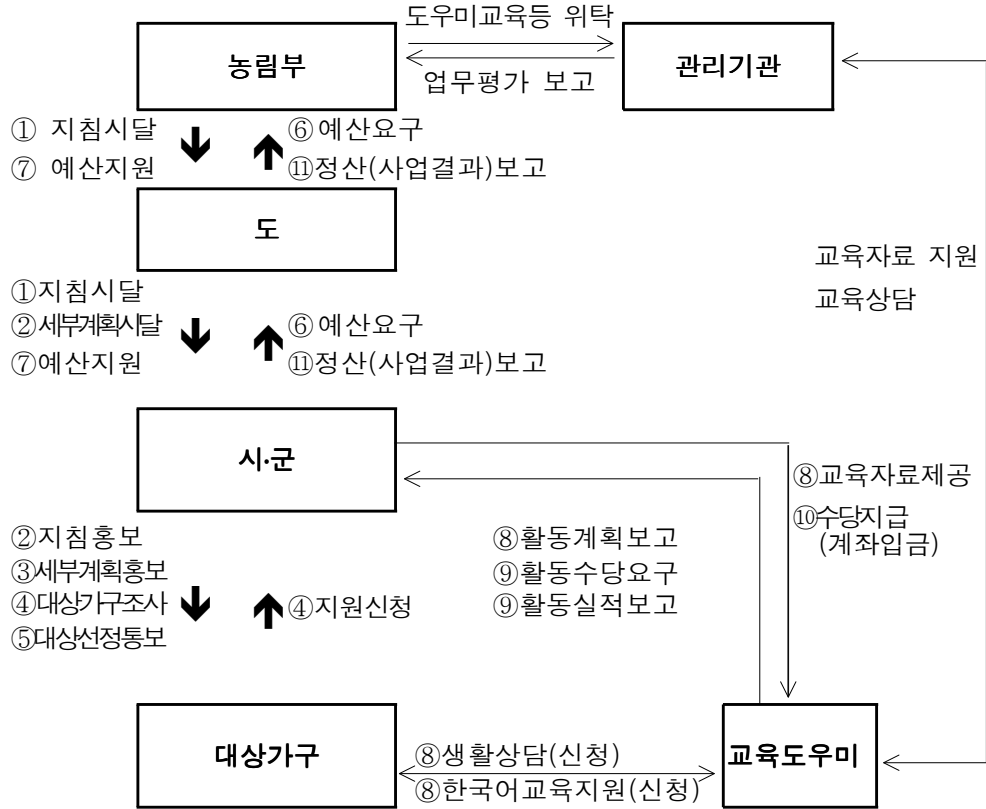
이처럼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자를 선정, 연계하고 교육활동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관리, 평가하는 역할은 시, 군에 맡겨져 있다. 시, 군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방문이나 전화확인 등을 통해 교육도우미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부의 위탁을 받은 전문관리기관에서는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관련기관역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농림부(관리기관)와 도, 시·군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표 Ⅲ-1-1> 사업 추진 기관

기관	주요 추진사항	세부 추진내용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총괄 지도·감독 - 관리기관 선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지침 시달 - 관리기관 공개선정, 지도·감독
관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도우미 운영관리 - 교육도우미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도우미 선발, 기본교육 실시 - 교육도우미 교육상담 등 교육지원 - 한국어 교재 및 교육재료 제공 - 담당공무원 워크샵 - 사업평가 및 실적보고(중간,연말)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교실, 가족캠프 실시 - 사업실시 대상 시·군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지도감독 - 사업실적(매월) 및 정산 보고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도우미 운영 - 지원대상 가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도우미 모집 - 교육도우미 복무감독(위촉·해촉) - 교육도우미 수당지급 - 지원대상가구 선정 - 모범가정 추천 - 사업실적(매월) 및 정산 보고
교육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한국어 교육 - 소그룹 교육 및 생활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가구 방문 한국어 교육실시 - 대상가구의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생활상담 실시 - 소그룹 교육계획 수립·실시 (요리강습, 문화예절, 영농교육) - 활동일지 작성·제출(날짜별, 가구별) - 담당지역내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파악



<그림 III-1-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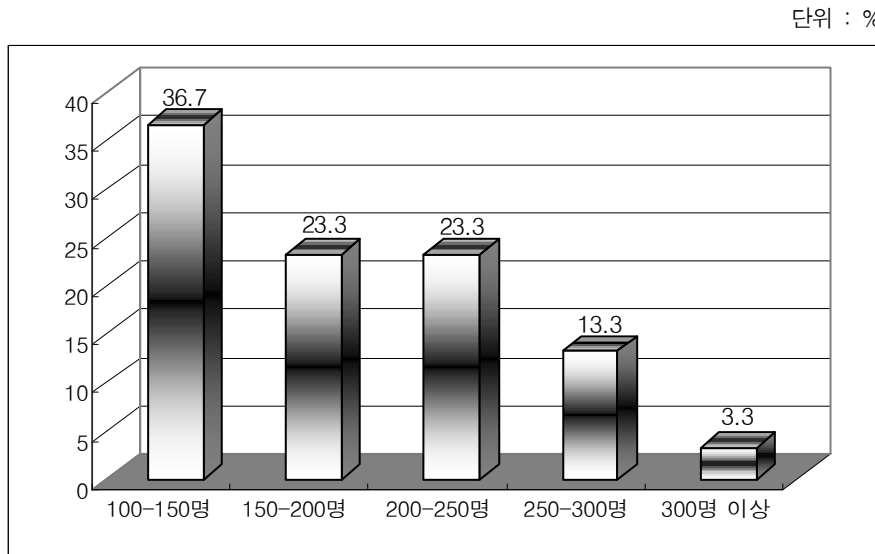
2. 시·군 담당자 조사 결과

2007년 전국 30개 지역에서 추진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담당자들에 대한 2차에 걸친 설문조사와 7개 시·군지역의 담당자와의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시·군담당자들에 대한 1차 설문조사는 농림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주관한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방문교육도우미 및 도·시·군 담당자 워크숍’ 일정 중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본 절에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1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본 조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본 사업여건, 서비스투입단계, 집행단계, 산출 및 평가단계로 구분하여 실태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업여건

우선 본 사업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수를 보면, <그림 Ⅲ-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수가 100~150명 미만인 지역이 11개 지역으로 전체의 36.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150~200명, 200~250명이 각각 7개 지역(23.3%), 250~300명 4개 지역(13.3%), 300명 이상 1개 지역(3.3%)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1> 시범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수

(1) 사업담당자

본 사업은 28개 지역에서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곳은 2명의 사업담당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사업담당자들의 특성을 보면(표 Ⅲ-2-1), 여성이 16명으로 남성보다 많고, 연령은 30~39세가

5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40세 이상이 30.0%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대 졸업(30.0%), 고등학교 졸업(13.3%)의 순을 보이고 있다. 직급별로는 7급 공무원이 3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8급과 9급이 각각 23.3%, 16.7%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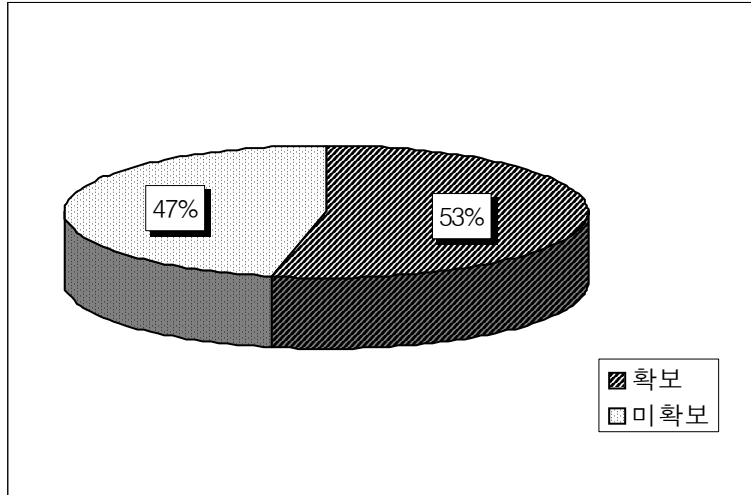
<표 III-2-1> 시·군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
성별	남자	14	46.7
	여자	16	53.3
연령	30세 미만	5	16.7
	30~39세	16	53.3
	40세 이상	9	3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4	13.3
	전문대 졸업	9	30.0
	대학교 졸업	15	50.0
	대학원 이상	2	6.7
직급	6급	1	3.3
	7급	10	33.3
	8급	7	23.3
	9급	5	16.7
	10급	3	10.0
	기타	4	13.3
계		30	100.0

(2) 자체예산 확보 여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는지를 조사한 결과(그림 III-2-2), 30개 지역 중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16개 지역에서는 농림부의 사업 예산외에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사업예산 외에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한 시·군의 자체예산액을 보면(표 III-2-2), 100~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곳이 5곳으로 가장 많으나, 300~600만원, 600~900만원, 900만원 이상이 각각 3 곳으로 자체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시·군에 따른 편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Ⅲ-2-2> 자체예산 확보 여부

<표 Ⅲ-2-2> 자체예산액

단위: 개(%)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300-600만원	600-900만원	900만원 이상	계
1(6.7)	5(33.3)	3(20.0)	3(20.0)	3(20.0)	15(100.0)

(3) 유사사업 여부

농림부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농림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3개 지역을 제외한 27개 지역(90.0%)에서 농림부 이외의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사업 수행 기관

단위: 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기타	사례수
11(44.0)	2(8.0)	1(4.0)	17(68.0)	5(20.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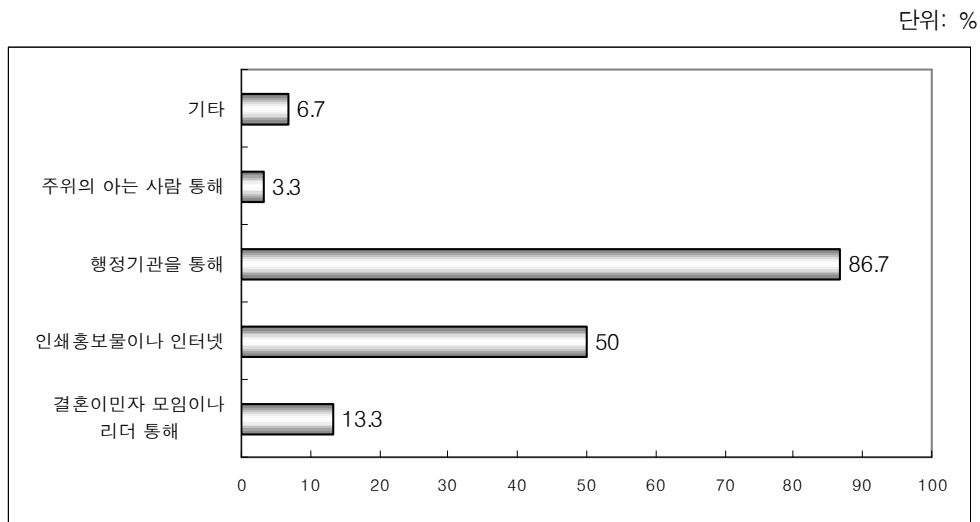
주 : 복수응답 분포

시청이나 군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응답한 지역이 전체의 68.0%에 달하는 17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족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도 11개 지역(44.0%)에 이른다(표 Ⅲ-2-3). 이 밖에 정부부처 이외의 민간단체 등의 기타기관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5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은 농림부 사업의 추진과 향후 방안 모색에 있어서 중요하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서비스 투입단계

(1) 사업홍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홍보방법은 읍·면사무소 등의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30개 시·군 중 86.7%가 행정기관을 통해 홍보했다고 밝혔다(그림 Ⅲ-3).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한 방법은 인쇄홍보물이나 인터넷으로 50.0%가 응답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 모임이나 리더를 통해 홍보한 곳도 13.3%에 달했다.



주: 복수응답 분포

<그림 Ⅲ-2-3> 사업홍보방법

(2) 교육생 모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은 ‘이장 등 읍면담당자들의 추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4). 그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자 본인 및 가족의 신청’(43.3%), ‘지역내 결혼이민자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30.0%)의 순을 보이고 있다.

<표 Ⅲ-2-4> 교육생 모집방법

단위: 개(%)

지역내 결혼이민자 현황조사를 토대로	결혼이민자 본인 및 가족의 신청으로	이장 등 읍면담당자의 추천으로	기타	사례수
9(30.0)	13(43.3)	15(50.0)	1(3.3)	30

주: 복수응답 분포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보면(표 Ⅲ-2-5),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자 4명을 제외한 86.7%가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많이 겪은 어려움은 ‘남편, 시어머니 등 가족들의 비협조’로 전체 시·군담당자의 43.3%가 이에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직원들이 직접 설명’(23.3%)거나 ‘본 사업대상자가 너무 많아 선정에 어려움’(20.0%)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사업 중복으로 인해 수요자 확보의 어려움’(16.7%)을 호소하였다. 이처럼 상반기 방문교육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전체 30개 지역 중 1개 지역을 제외한 29개 지역(96.7%)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방문 교육도우미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교육생으로 선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III-2-5> 교육생 모집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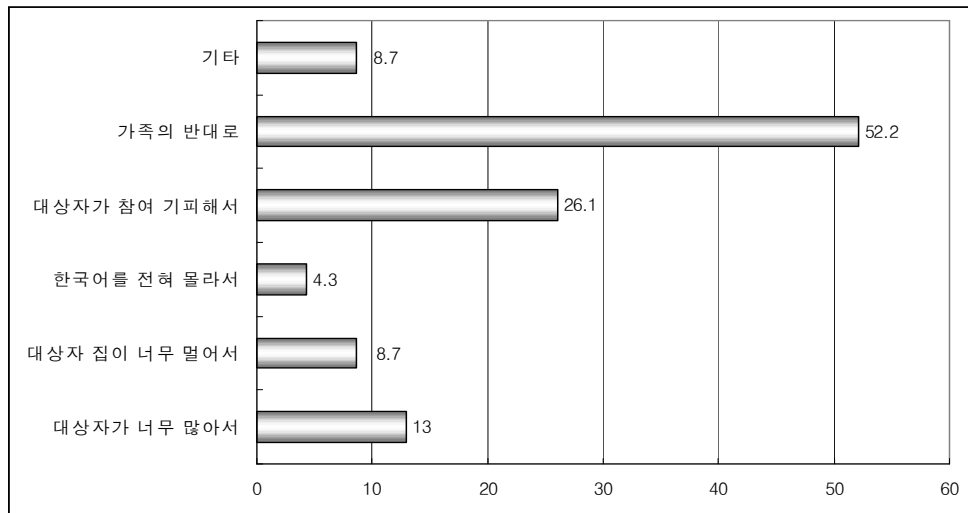
단위: 개(%)

어려움 없음	가족의 비협조	사업중복으로 인한 수요자 확보 어려움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	대상자가 많아 선정 어려움	결혼이민자 현황과악 어려움	사례수
4(13.3)	13(43.3)	5(16.7)	7(23.3)	6(20.0)	4(13.3)	30

주: 복수응답 분포

한편, 방문 교육도우미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상반기 교육생으로 포함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 23개 시·군담당자가 제시한 사유를 보면(그림 III-2-4), ‘남편, 시부모 등 가족의 반대’가 5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참여를 기피하거나’(26.1%), ‘사업대상자가 너무 많아서’(13.0%) 방문 교육도우미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단위: %



주: 복수응답 분포

<그림 III-2-4> 도움 필요한 여성이 교육생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

(3) 도우미 선정

30개 지역 중 무응답을 제외한 29개 지역에서 상반기에 교육도우미로 활동한 사람 수를 보면,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 10명인 경우가 27개 지역이고, 9명 또는 11명인 지역이 각각 1 개 지역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도우미 선정의 어려움

단위: 개(%)

어려움 없음	홍보 미비로 지원자 별로 없음	인적자원 부족	심사기준 불분명	지원자 너무 많아 과잉 경쟁	기타	사례수
11(37.9)	2(6.9)	3(10.3)	2(6.9)	13(44.8)	1(3.4)	29

주: 복수응답 분포

각 지역에서 교육도우미를 선정하는 과정은 교육생 모집과정보다는 어려움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III-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개 지역 중 37.9%에 달하는 11개 지역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뿐 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을 교육생으로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가족의 반대 등으로 인한 참여 기피로 하여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는 달리 ‘지원자가 너무 많아 과잉 경쟁이 유발되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운 44.8%에 달했다.

3) 서비스 집행단계

(1) 교육활동

농림부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교육도우미가 교육생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교육도우미가 다양한 소그룹 활동 등을 기획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I-2-7>은 각 시·군에서 교육도우미들이 상반기 동안 실시한 한국어 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 및 활동들을 정리한 표이다. 전국 30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실시한 교육활동은 ‘한국요리 강습’으로 25개 지역에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가족관계 상담’과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생활상담’으로 73.3%에 달하는

22개 지역에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공공기관, 은행, 교통편 이용 등의 지역생활 안내’(70.0%)나 ‘임신, 출산 교육’(66.7%), ‘전통예절, 한복입기 등의 전통문화교육’(66.7%) 등도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교육대상이었음에도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관련 교육’을 실시한 곳은 20.0%인 6개 지역에서만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III-2-7> 한국어 교육 이외의 교육 및 활동

단위: 개(%)

사례수	30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가족관계 상담	22(73.3)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생활상담	22(73.3)
한국인 가족대상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10(33.3)
부부교실, 가족캠프	10(33.3)
자녀양육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18(60.0)
임신, 출산교육	20(66.7)
지역생활안내(공공기관, 은행, 교통편 이용 등)	21(70.0)
전통문화교육(전통예절, 한복입기, 다도 등)	20(66.7)
한국요리 강습	25(83.3)
각국의 음식, 풍습 소개	9(30.0)
취미교실(꽃꽂이, 공예, 노래교실, 야유회 등)	14(46.7)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관련 교육	6(20.0)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등)	12(40.0)

주: 복수응답 분포

<표 III-2-8> 한국어 교육 이외의 교육활동 시 시·군 지원

단위: 개(%)

없음	결혼이민자 가정 방문	소그룹활동 예산 지원	대그룹활동 행사비용 지원	대그룹활동 협찬 지원	교통편, 장소 제공	사례수
6(20.0)	6(20.0)	8(26.7)	13(43.3)	2(6.7)	9(30.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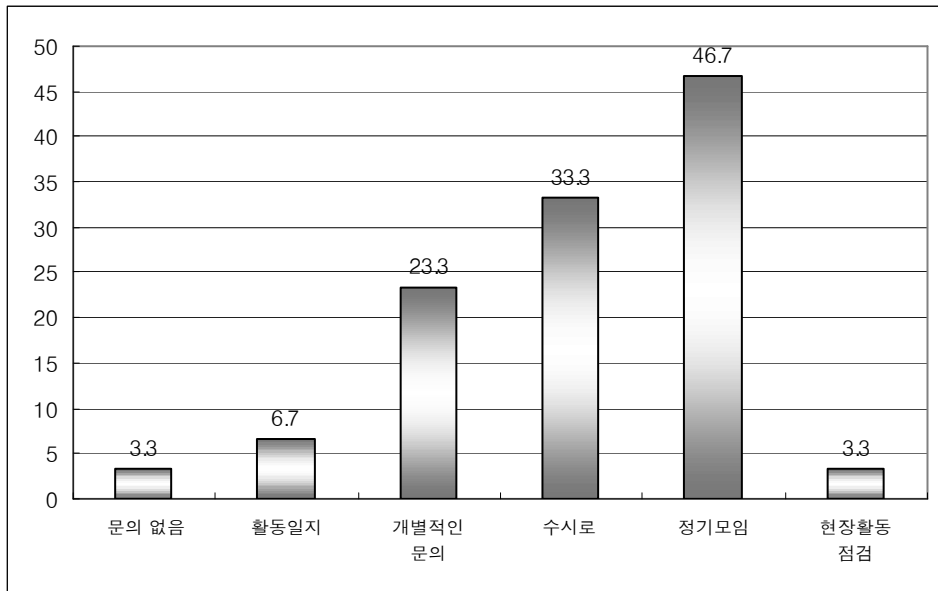
주: 복수응답 분포

한국어 교육이외의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시·군에서 교육도우미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주었는지를 보면, 20.0%에 달하는 6개 지역에서는 아무런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체의 80%에 달하는 지

역에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교육도우미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표 Ⅲ-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 관광 등 대그룹활동의 행사비용 지원’한 곳이 13개 지역(43.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교통편 또는 장소’(30.0%)를 제공하거나, ‘소그룹활동 시 재료비 등 예산 지원’(26.7%), ‘도우미와 함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방문’(20.0%) 등의 순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도우미 관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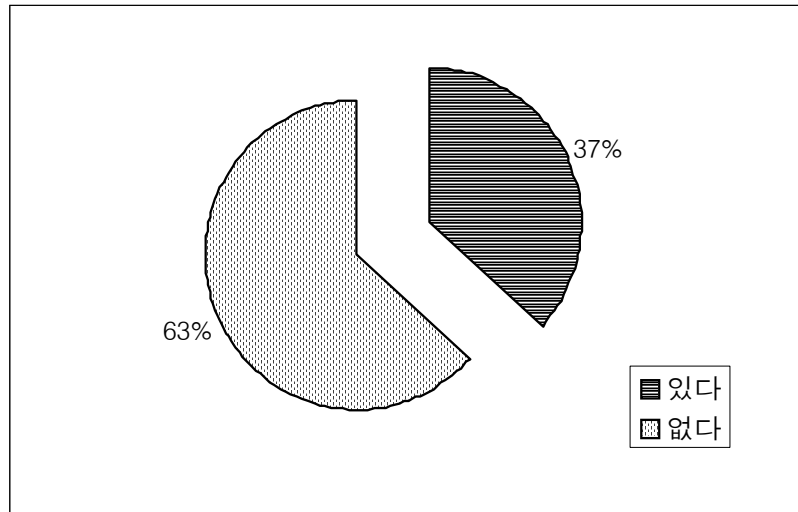


주: 복수응답 분포

<그림 Ⅲ-2-5> 도우미의 교육활동과정에서의 어려움 파악 방법

도우미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시·군·담당자들이 파악하는 방식을 보면(그림 Ⅲ-2-5),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파악하는 곳이 전체의 절반 가까운 46.7%로 가장 많고, ‘업무전달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33.3%) 또는 ‘도우미들의 개별적인 문의를 통해’(23.3%) 파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응답결과는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전화확인 등의

방법으로 도우미들의 교육활동을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한 농림부의 사업시행요령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림 III-2-6> 도우미활동 중도 포기자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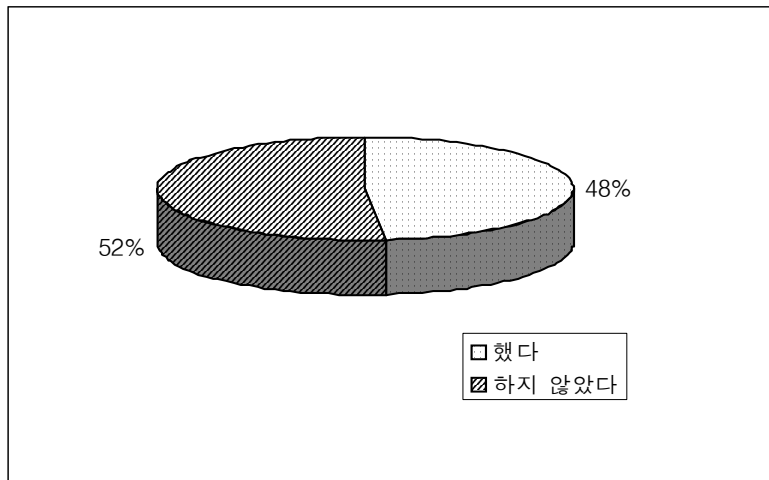
한편, 도우미활동 중 중도에 도우미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그림 III-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7%에 달하는 11개 지역에서 도우미활동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도우미활동을 중도에 그만두게 된 이유를 보면(표 III-9), ‘가사나 교육 또는 건강 등의 개인사정으로’(63.6%)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전체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우미 수당이 너무 적어서’ 또는 ‘도우미활동이 너무 힘들어서’와 같이 도우미활동과 관련한 문제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III-2-9> 도우미활동 중도 포기 이유

단위: 개(%)

가사, 교육,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도우미 수당이 적어서	도우미활동이 힘들어서	취업이 되서	계
7(63.6)	1(9.1)	1(9.1)	2(18.2)	11(100.0)

중도에 도우미가 그만둔 지역에서는 대부분(81.8%)이 새로운 도우미를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우미를 충원하지 않은 2개 지역은 ‘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예비 도우미가 없어서,’ ‘기존 도우미로 충분해서’ 신규 도우미를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Ⅲ-2-7> 도우미활동 평가 여부

<표 Ⅲ-2-10> 도우미활동 평가방법

단위: 개(%)

매월 제출하는 실적보고서를 통해	학습자의 교육소감 발표 및 면담	워크숍에서 상호토론	학습자들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	계
7(50.0)	1(7.1)	2(14.3)	4(28.6)	14(100.0)

도우미들의 교육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그림 Ⅲ-2-7), 응답을 하지 않은 1개 지역을 제외한 29개 지역 중 14개 지역 즉 48%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도우미들이 활동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우미활동에 대한 평가는 주로 ‘매월 도우미들이 제출하는 실적보고서를 통해’(50.0%)하는 곳이 가장 많았으며, ‘학습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현장 방문’(28.6%)과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우미활동을 평가하는 곳도 있다(표 Ⅲ-2-10).

(3) 사업추진상의 어려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담당자들이 부딪힌 어려움으로는 ‘교육도우미와 학습자를 관리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40.0%)는 점을 가장 많이 들었다(표 III-2-11). 그 다음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들의 의식 및 관심 부족’(30.0%)과 ‘소그룹 활동 및 각종 행사지원 등을 위한 예산 부족’(26.7%), ‘도우미활동을 봉사활동이 아니라 취업활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 나서’(23.3%) 등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표 III-2-11> 사업추진상의 어려움

단위 : 개(%)

정부사업의 중복	원거리 학습자 기피	관리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소요	예산 부족	가족의 의식 및 관심 부족	도우미활동을 취업활동으로 생각해서	사례수
6(20.0)	5(16.7)	12(40.0)	8(26.7)	9(30.0)	7(23.3)	30

주: 복수응답 분포

4) 서비스 성과 및 발전방안

(1) 교육실적

<표 III-2-12> 교육 참가 및 수료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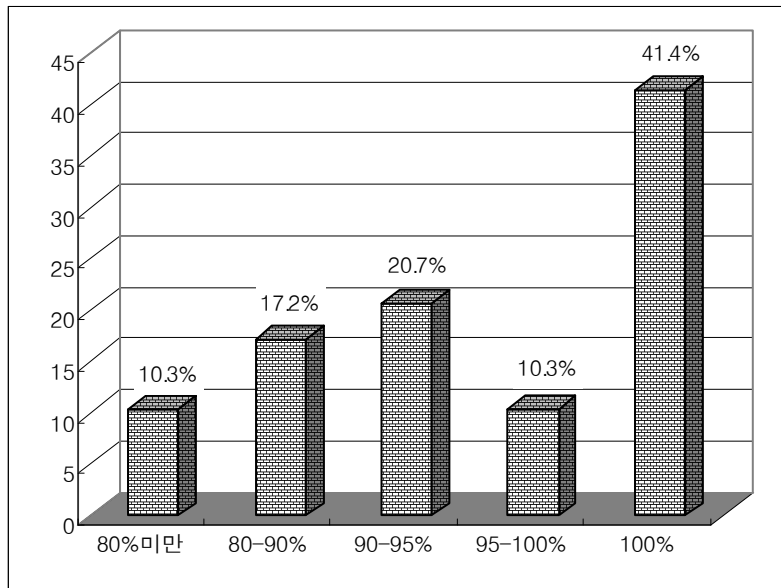
단위: 개(%)

교육 참가인원		교육 수료인원	
23명	1(3.4)	17명	1(3.3)
30명	15(51.7)	24명	1(3.3)
31명	1(3.4)	27명	1(3.3)
32명	3(10.3)	29명	3(10.0)
33명	4(13.8)	30명	23(76.7)
34명	1(3.4)		
35명	2(6.9)		
36명	1(3.4)		
40명	1(3.4)		
계	29(100.0)	계	29(100.0)

먼저, 무응답을 제외한 29개 지역에서 농림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에 참여한 상반기 교육생수를 보면 지역에 따른 편차가 적지 않다. <표 III-2-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게는 23명이 참여한 곳이 있는가 하면 많게는 40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농림부의 지침대로 30명의 교육생을 참여하도록 한 곳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15개 지역으로 가장 많다. 농림부의 지침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한 곳은 중간에 교육받는 것을 포기한 여성결혼이민자가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여성결혼이민자를 교육생으로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표 Ⅲ-2-12>을 보면,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최대 30명을 넘지 않고 있다. 30명이 교육을 수료한 지역은 전체의 4분의 3에 달하는 23개 지역(76.7%)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교육생은 배출한 곳은 17명으로 1개 지역이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총 845명으로 평균 교육수료율은 92.7%로 나타났다. 100% 수료율을 보인 곳은 12개 지역(41.4%)으로 나타났으며 95~100% 미만 3개 지역(10.3%), 90~95% 미만 6개 지역(20.7%)으로 전체의 72.4%에 달하는 지역에서는 90% 이상의 비교적 높은 교육수료율을 보이고 있다(그림Ⅲ-2-8). 그러나 3개 지역에서는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교육 수료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2-8> 교육수료율

(2) 사업 평가

도우미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시·군담당자들의 주관적인 평가결과를 보면(표 III-2-13),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46.7%의 시·군담당자가 ‘매우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50.0%는 ‘비교적 좋다’고 응답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에 대한 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이외에 소그룹 활동 및 대그룹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한국어 교육과 마찬가지로 93.0%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응답은 농림부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교육성과에 대해 본 사업을 추진한 실무담당자들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III-2-13>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단위: 개(%)

구분	그저 그렇다	비교적 좋음	매우 좋음	계
한국어 교육	1(3.3)	15(50.0)	14(46.7)	30(100.0)
기타 교육활동	2(7.0)	14(48.2)	13(44.8)	29(100.0)

<표 III-2-14> 사업내용의 적절성

단위: 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계
3(10.0)	2(6.7)	10(33.3)	15(50.0)	30(100.0)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뿐 아니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여성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촌사회가 다문화에 대해 열린의식을 갖고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사업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83.3%에 달하는 시·군담당자가 적절하다(표 III-2-14)고 응답함으로써, 본 사업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발전방안

향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표 III

-2-15)으로 시·군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96.6%)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초급, 중급, 고급 등 단계적인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89.7%), ‘소그룹 활동이나 대그룹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82.7%)는 의견들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 밖에 ‘시·군별 결혼이주여성의 수에 따라 도우미 숫자가 조정되어야 한다’(79.3%), ‘자원봉사로서의 교육도우미활동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79.3%)는 데 대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표 Ⅲ-2-15>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단위: 개(%)

구분	반대	보통	찬성	평균
1) 초급, 중급, 고급 등 단계적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필요함	1 (3.4)	2 (6.9)	26 (89.7)	4.48점
2) 소그룹 활동이나 대그룹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 함	5 (17.2)	-	24 (82.7)	4.03점
3) 시·군별 결혼이주여성의 수에 따라 도우미 숫자가 조정되어야 함	2 (6.9)	4 (13.8)	23 (79.3)	4.10점
4) 도우미 수당을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해야 함	9 (31.0)	2 (6.9)	18 (62.1)	3.59점
5)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함	-	1 (3.3)	28 (96.6)	4.59점
6) 교육도우미의 활동일지 등 관련 서류가 간소화되어야 함	5 (17.2)	5 (17.2)	19 (65.5)	3.83점
7) 자원봉사로서의 교육도우미활동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함	2 (6.9)	4 (13.8)	23 (79.3)	4.21점

여성 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열린 의식 형성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강화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교육이나 활동으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남편, 시부모 등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43.3%)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표 Ⅲ-2-16). ‘사업 및 단계적인 교육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20.0%)든지, 여성농업인력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상반기 교육활동

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본 사업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높은 지지율 등을 종합해 볼 때 시·군담당자들은 현재의 교육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사업내용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2-16> 향후 강화되어야 할 교육이나 활동방향(1순위)

단위: 개(%)

사업 및 교육내용의 확대	여성농업인력 육성으로 교육개편	결혼이민자 가족교육 필요	영농에 관심있는 대상자 우선선정	여성농업인 정착위한 제도적 방안	계
6(20.0)	3(10.0)	13(43.3)	4(13.3)	4(13.3)	30(100.0)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한 결과를 1순위에는 2점, 2순위에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한 결과(표 III-2-17)에서도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33점)와 ‘사업 및 교육내용의 확대’(22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등 유사한 반응을 나타낸다.

<표 III-2-17> 향후 강화되어야 할 교육이나 활동방향(종합점수)

사업 및 교육내용의 확대	여성농업인력 육성으로 교육 개편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교육 필요	영농에 관심있는 대상자 우선선정	여성농업인 정착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21점	8점	33점	10점	17점

3. 서비스 제공자(교육도우미) 조사 결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자인 교육도우미들의 교육활동 실태와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가 30개 시범지역의 교육도우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 응답한 도우미는 총 277명으로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지역에서 가장 많은 41명의 도우미가 조사에 참여하였다(표 III-3-1). 연령별로는 40~49세가 가장 많아 전체의 57.4%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인 30~39세로 23.5%로 나타났다. 도우미들의 학력을 보면 전문대졸 이상이 전체의 73.1%에 달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급인력이 본 사업에 많이 참여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Ⅲ-3-1> 교육도우미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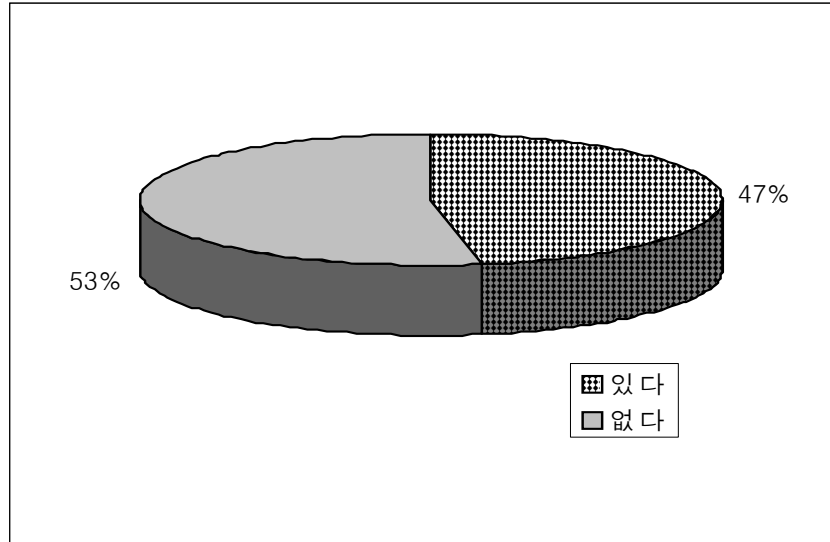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
연령	30세 미만	5	1.8
	30~39세	65	23.5
	40~49세	159	57.4
	50~59세	39	14.1
	60세 이상	9	3.2
학력	중학교졸업 이하	1	0.4
	고등학교 졸업	73	26.5
	전문대 졸업	68	24.7
	대학교 졸업	116	42.2
	대학원 이상	17	6.2
지역	경기도	36	13.0
	강원도	26	9.4
	충청북도	21	7.6
	충청남도	39	14.1
	전라북도	39	14.1
	전라남도	41	14.8
	경상북도	34	12.3
	경상남도	41	14.8
계		277	100.0

1) 교육도우미의 자격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사업시행요령에 따르면, 교육도우미 선발 및 심사기준은 서류심사의 경우 자원봉사경력 20점, 교육 및 농업관련 경력 10점으로 총 30점을 만점으로 되어 있다.

(1) 교육 및 농업관련 경력

먼저, 농업관련 경력을 보면(그림 Ⅲ-3-1), 농업경력이 있는 도우미는 전체의 47.2%로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업경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1~4년이 3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0~14년(28.4%)으로 나타났다(표 Ⅲ-3-2).



<그림 III-3-1> 농업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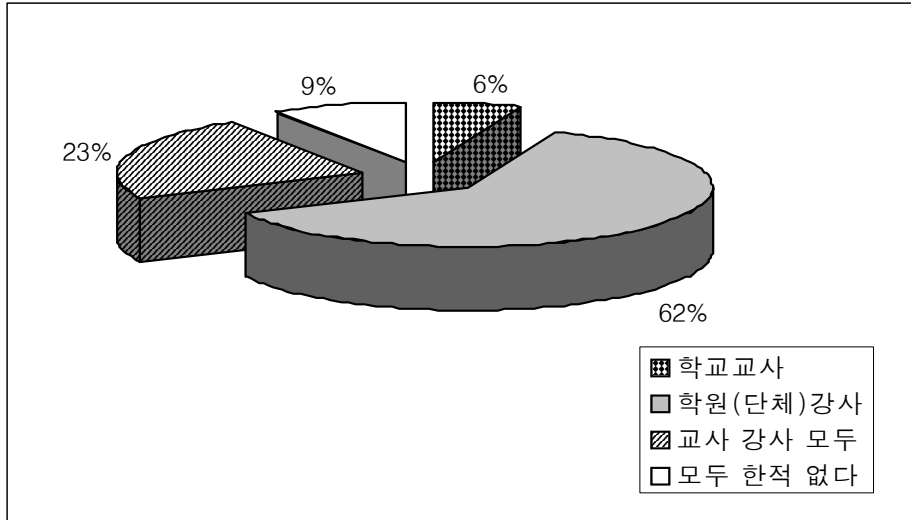
<표 III-3-2> 농업경력년수

단위: 명(%)

1~4년	5~9년	10~14년	15년 이상	계
45(38.8)	19(16.4)	33(28.4)	19(16.4)	116(100.0)

한편, 도우미들의 교육경력을 보면(그림 III-3-2),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9%로 도우미로 활동한 사람 대부분이 교육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에 달하는 사람이 학원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강사로 활동했다고 응답했으며, 6%는 학교교사 경력이며, 23%는 학교교사와 학원 등에서의 강사경력 모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교육경력년수 또한 적지 않아서 5년 이상 경력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8.5%에 달한다(표 III-3-3).

도우미들의 이 같은 농업 및 교육관련 경력을 볼 때, 농사경험보다 교육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도우미로 선발되는 데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3-2> 교육경력

<표 Ⅲ-3-3> 교육경력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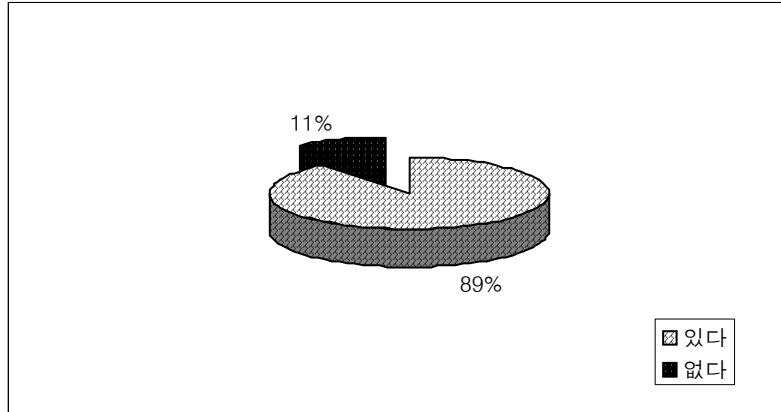
단위 : 명(%)

1~4년	5~9년	10~14년	15년 이상	계
76(41.5)	53(29.0)	30(16.4)	24(13.1)	116(100.0)

(2) 자원봉사경력

자원봉사 경력을 보면, 도우미의 89%가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림 Ⅲ-3-3). 뿐 만 아니라 전체의 56%가 서류심사에 있어서 자원봉사 경력 20점 만점에 해당하는 5년 이상의 자원봉사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Ⅲ-3-4). 그런데 자원봉사 경력은 도우미들의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시·군 담당자와의 면담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 일을 완전히 봉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만 갖고 하는 경우에는 힘들죠. 농림부는 애초부터 자원봉사경력자를 뽑아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부처 사업의 경우는 자원봉사 경험과는 상관없이 한글교육을 해본 사람 위주로 뽑았는데 중도에 거의 다 그만뒀어요.” (M군 담당자)



<그림 III-3-3> 자원봉사경력

<표 III-3-4> 자원봉사경력년수

단위 : 명(%)

1~4년	5~9년	10~14년	15년 이상	계
102(44.0)	64(27.6)	34(14.7)	32(13.8)	232(100.0)

2) 교육활동의 전개

(1) 교육생 수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도우미 1인당 3명의 교육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 조사에 응답한 도우미 1인당 교육생 수는 평균 3.29명으로 전반적으로는 농림부의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3-5>을 통해 도우미 1인당 교육생 수 분포를 보면, 상반기에 도우미로 활동한 사람의 74.5%가 농림부의 기준에 맞춰 3명을 교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25% 정도는 농림부 기준과는 달리 교육생수가 더 적거나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비록 소수 이기는 하지만, 농림부의 기준의 2배에 달하는 6명, 또는 7명을 가르친 도우미도 있어 일부 도우미들의 경우 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3-5> 도우미 당 교육생수

구분	빈도(명)	%
1명	3	1.1
2명	7	2.5
3명	205	74.5
4명	39	14.2
5명	12	4.4
6명	7	2.5
7명	2	0.7
계	275	100.0

(2) 교육활동

농림부는 개별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방문교육이 외에 2~3명의 소그룹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도우미들이 실제 시행한 교육형태를 <표 Ⅲ-3-6>를 통해 보면, 거의 전수가 가정방문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소그룹 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74.5%, 대그룹 교육 54.5%, 기타 1.8%로 나타났다. 이는 농림부가 주당 방문교육 2회, 소그룹 교육 1회를 실시하도록 했음에도, 방문교육이나 소그룹 교육 뿐만 아니라 대그룹 교육을 실시한 교육도우미들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등 농촌 현장에서는 농림부의 요구보다 더 활발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한 도우미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Ⅲ-3-6> 교육형태

단위: 명(%)

가정방문	소그룹 교육	대그룹 교육	기타	사례수
270(98.2)	205(74.5)	150(54.5)	5(1.8)	275

주: 복수응답 분포

한국어 교육이 외에 도우미들이 실시한 교육 및 활동을 보면(표 Ⅲ-3-7), ‘한국요리 강습’이 87.9%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은행, 교통편 이용 등 지역생활 안내’(82.4%),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생활 상담’(80.2%),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가족 관계 상담’(73.3%), ‘자녀양육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73.3%)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도우미들의 이러한 교육 및 활동내용을 보면, 한국어 교육 선생님의 역할을 넘어 자신이 맡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친정어머니 또는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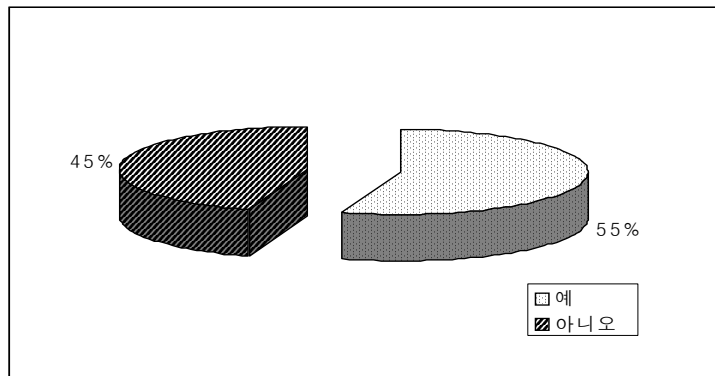
<표 III-3-7> 한국어 교육이 외의 교육 및 활동

단위: 명(%)

사례수	273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가족관계 상담	200(73.3)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생활 상담	219(80.2)
한국인 가족 대상 가족관계 상담, 교육	140(51.3)
부부교실, 가족캠프	75(27.5)
자녀양육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200(73.3)
임신·출산에 관한 교육	168(61.5)
지역생활 안내(공공기관, 은행, 교통편 이용 등)	225(82.4)
전통문화교육(전통예절, 한복입기, 다도 등)	168(61.5)
한국요리 강습	240(87.9)
각국의 음식, 풍습 소개	82(30.0)
취미교실(꽃꽂이, 공예, 노래교실, 영화, 야유회 등)	162(59.3)
농업기술 교육 등 농업관련 교육	51(18.7)
정보화 교육(컴퓨터, 인터넷 등)	115(42.1)
기타	1(0.4)

주: 복수응답분포

(3) 교육활동상의 어려움



<그림 III-3-4> 교육활동 원할 추진 여부

도우미들이 이 같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모든 교육활동이 원활히 추진되었는가에 대해 55%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그림 Ⅲ-3-4). 그러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의 도우미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은 도우미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육활동을 보면(표 Ⅲ-3-8), ‘부부교실, 가족캠프’가 30.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25.3%), ‘공공기관, 은행, 교통편 이용 등의 지역생활 안내’(21.1%) 순이다.

<표 Ⅲ-3-8>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교육

단위: 명(%)

사례수	95
결혼이민자 대상 가족관계 상담	5(5.3)
결혼이민자 대상 생활 상담	1(1.1)
한국인 대상 가족관계 상담, 교육	13(13.7)
부부교실, 가족캠프	29(30.5)
자녀양육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8(8.4)
임신·출산 교실	8(8.4)
지역생활 안내(공공기관, 은행, 교통편 이용 등)	20(21.1)
전통문화교육(전통예절, 한복입기, 다도 등)	12(12.6)
한국요리 강습	11(11.6)
각국의 음식, 풍습 소개	10(10.5)
취미 교실(꽃꽂이, 공예, 노래교실, 야유회 등)	15(15.8)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관련 교육	13(13.7)
정보화 교육(컴퓨터, 인터넷 등)	24(25.3)

주: 복수응답 분포

<표 Ⅲ-3-9> 원활히 추진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가족이 싫어해서	프로그램 불충분	혼자서 준비·진행이 어려워서	경비 및 차량 지원이 안돼서	학습자의 의지부족	학습자의 개인사정	지역 내 자원 부족	관련기관 협조 미흡	기타	사례수
66 (54.5)	39 (32.2)	34 (28.1)	39 (32.2)	5 (4.1)	60 (49.6)	20 (16.5)	5 (4.1)	2 (1.7)	121

주: 복수응답 분포

이처럼 교육이나 활동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보면(표Ⅲ-3-9), ‘남편이나 시부모가 이주여성이 가정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54.5%)와 ‘농사일, 육아 등 학습자들의 개인사정이 여의치 않아서’(49.6%)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가의 가족관련 요인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관련 교육이나 활동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아서’와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차량지원 등이 되지 않아서’가 각각 32.3%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련 요인이 외에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육생의 중도 탈락

상반기 교육 중 중도에 교육받기를 그만둔 여성결혼이민자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도우미 중 30%에 가까운 27.9%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중도에 교육을 그만 둔 이유를 보면(표 Ⅲ-3-10), ‘출산, 건강, 이혼, 이사 등 개인적인 사정’(56.6%)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고, ‘농사일 및 취업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져서’(27.6%)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Ⅲ-3-10> 여성결혼이민자가 교육을 중도에 포기한 이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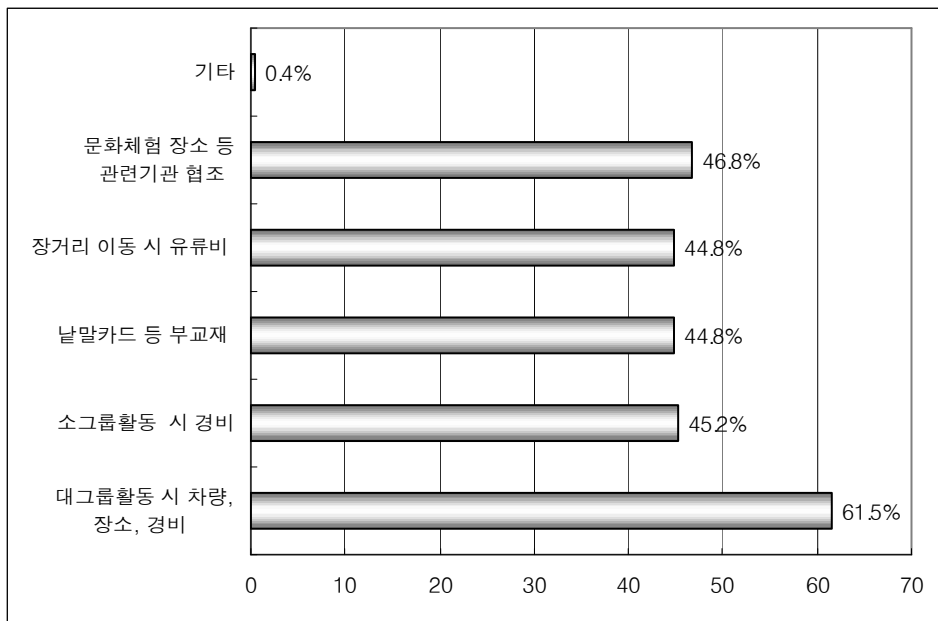
남편, 시부모 등 가족이 싫어해서	출산, 건강, 이혼 등 개인적 사정으로	가사, 자녀양육 때문에	농사일 및 취업 때문에	기타	계
6(7.9)	43(56.6)	5(6.6)	21(27.6)	1(1.3)	76(100.0)

3) 교육자원의 동원

앞서 교육활동이 원활히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도우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는 그 만큼 도우미들이 계획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자원의 배분과 지원이 요청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시·도의 지원

실제로 본 조사에 응답한 도우미의 91.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도우미활동을 하면서 시·군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도우미들이 시·군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고 싶어 했는지를 보면(그림 Ⅲ-3-5), ‘대그룹 활동시 차량지원, 교육장소 및 관련 소요 경비 지원’이 61.5%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문화체험 장소 등 관련기관 협조’(46.8%), ‘소그룹활동 시 소요경비 지원’(45.2%), ‘장거리 이동시 유류비 지원’(44.8%), ‘날말카드, 테이프 등 부교재 지원’(44.8%) 등에 대해서도 거의 절반 가까운 도우미들이 필요했었다고 응답하였다.



주: 복수응답 분포

<그림 Ⅲ-3-5> 시·군으로부터 필요했던 지원내용

이처럼 도우미들이 수행하는 활동 전반에 걸쳐 시·군으로부터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실제로 시·군으로부터의 지원정도는 어떠했을까? <표 Ⅲ-3-11>을 보면, 도우미들의 도움요청에 대한 시·군의 지원과 관련하여 51.2%

가 잘 이루어졌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28.1%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함으로써, 시·군으로부터의 지원정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도우미가 더 많기는 하나 시·군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불만을 가진 도우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I-3-11> 시·군 지원 정도

단위: 명(%)

전혀 잘 안 이루어짐	별로 잘 안 이루어짐	그저 그렇다	잘 이루어진 편임	매우 잘 이루어짐	계
8(3.3)	61(24.8)	51(20.7)	107 (43.5)	19(7.7)	246(100.0)

(2) 도우미간 정보교류

도우미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군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도우미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의 교류는 도우미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본 조사결과 도우미활동을 하면서 다른 도우미들과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한 적이 있다는 도우미는 98.9%로 거의 모든 도우미들이 상호간에 관련 정보를 교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3-12>를 보면, 전체 도우미 중 94.1%가 다른 도우미와의 정보 교환이 도우미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그저 그렇다든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하다. 이러한 응답 분포는 도우미들이 다른 도우미들과의 정보 교류가 도우미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III-3-12> 도우미간 정보 교환의 도움 정도

단위: 명(%)

전혀 도움이 안됨	별로 도움이 안됨	그저 그렇다	비교적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
-	6(2.2)	10(3.7)	139(51.3)	116(42.8)	271(100.0)

이처럼 거의 모든 도우미들이 다른 도우미와의 정보 교환이 도우미 활동에 도

움이 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도우미들간의 정보 교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어서 98.9%에 달하는 거의 모든 도우미들이 도우미들간에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우미들이 상호 간에 의견이나 정보를 교류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표 Ⅲ-3-13), ‘소그룹 및 대그룹 활동 아이디어 교환’(65.9%)에서부터 ‘생활상담 사례 및 상담방법’(58.2%), ‘국가별 학습자 성향 및 문화 정보’(52.0%), ‘한국어 교수법’(50.5%) 등에 이르기까지 도우미활동을 하면서 축적된 경험(know-how)을 공유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표 Ⅲ-3-13> 도우미간 정보교환 희망 내용

단위: 명(%)

한국어 교수법	소그룹 및 대그룹 활동 아이디어 교환	지자체 지원 얻는 법	생활상담 사례 및 상담방법	국가별 학습자 성향 및 문화 정보	사례수
138(50.5)	180(65.9)	107(39.2)	159(58.2)	142(52.0)	273

주: 복수응답 분포

4) 교육활동 소감

도우미활동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도우미는 한명도 없어, 도우미들 모두 도우미활동 중에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Ⅲ-3-14), ‘유류비, 교통사고 위험 등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사업이 집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본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먼 지역에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교육시간 동안 학습자의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43.7%), ‘학습자가 교육시간을 수시로 변경해서’(30.7%) 어려움을 겪은 도우미들도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우미들이 도우미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한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앞으로 도우미활동을 계속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272명 중 단 3명을 제외한 98.9%가 계속하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표 III-3-14> 도우미 활동 시 어려웠던 점

단위: 명(%)

사례수	277
별다른 어려움 없음	-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193(69.7)
교육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져서	11(4.0)
소그룹 활동을 위한 장소, 경비 지원 미비	59(21.3)
혼자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준비하기 어려움	42(15.2)
학습자가 교육시간 수시로 변경	85(30.7)
남편이나 시부모의 인식 부족	60(21.7)
학습자의 교육의지 부족	43(15.5)
학습자와 의사소통 어려움	32(11.6)
가족문제, 건강, 육아 등 생활상담의 어려움	39(14.1)
교육시간 동안 학습자의 아이 돌봐줄 사람 없음	121(43.7)
노력에 비해 수당 등 보상이 미흡해서	56(20.2)
기타	1(0.4)

주: 복수응답 분포

4. 서비스 이용자(여성결혼이민자) 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1) 사회 인구학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시, 군 단위에서 관리했던 담당자, 서비스 제공자(방문교육 도우미)와 함께 30개 시, 군에서 상반기에 농촌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이용했던 여성결혼이민자 57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네팔, 러시아, 몽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페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13개국 출신 여성결혼민자들로서 이 가운데 베트남 출신이 337명으로 58.4%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필리핀출신이 106명(18.4%)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출신 40명(6.9%), 일본 출신 36명(6.2%)이었다. 이외에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출신이 30명(5.2%)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5개

국 출신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82.0%를 차지했다.

이들의 연령층은 20대가 66.8%로 가장 많고 30대가 25.8%, 40대 이상이 7.3%로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Ⅲ-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단위 :명(%)

출신국가	베트남	337 (58.4)
	필리핀	106 (18.4)
	일본	36 (6.2)
	중국	40 (6.9)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30 (5.2)
	기타	28 (4.9)
	계	577 (100.0)
연령층	20대	383 (66.8)
	30대	148 (25.8)
	40대 이상	42 (7.3)
	계	573 (100.0)
한국거주 기간	1년	113 (19.7)
	2년	194 (33.9)
	3년	88 (15.4)
	4년	53 (9.2)
	5년~9년	101 (17.6)
	10년이상	24 (4.2)
	계	573 (100.0)
결혼기간	1년	110 (19.3)
	2년	187 (32.7)
	3년	96 (16.8)
	4년	51 (8.9)
	5~9년	104 (18.2)
	10년 이상	23 (4.0)
	계	571 (100.0)
교육수준	무학	74 (13.1)
	초졸	106 (18.7)
	중졸	141 (24.9)
	고졸	161 (28.4)
	대졸이상	85 (15.0)
	계	567 (100.0)

한국에 거주한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19.7%, 1-2년 이 33.9%, 2-3년이 15.4%로 69.0%가 한국에 체류한지 3년이 채 안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초기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한국에 체류한지 3-4년이 여성이 8.9%였으며 5-9년 된 여성이 18.2%였고, 10년이 넘은 여성도 4.0% 포함되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초기 적응 단계에서 각종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여 적응과정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상반기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이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은 한국생활 경험이 짧은 것으로 보아 사업의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수혜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한국생활기간이 5년이 넘은 여성들, 심지어 10년 이상 된 여성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수혜자 선정 기준이 준수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주 후 한국생활 경험이 상당기간에 이르러도 초기 적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도 있을 수 있지만, 개중에는 한국어 구사를 비롯해 어느 정도 생활적응을 거친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방문교육 서비스와 같은 고비용 서비스가 보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선정에 있어서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28.4%,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이 15.0%로 43.4%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무학이 13.1%, 초등학교 졸업이 18.7%, 중등학교 졸업이 24.9%이었다.

<표 Ⅲ-4-2> 출신국가별 연령층, 교육수준, 거주기간

단위: 명(%)

구분		베트남	필리핀	일본	중국	캄보디아 인니	기타	계
연령층	20대	297 (89.5)	33 (31.1)	1 (2.9)	19 (48.7)	18 (60.0)	12 (48.0)	380 (67.0)
	30대	33 (9.9)	59 (55.7)	14 (40.0)	16 (41.0)	11 (36.7)	13 (52.0)	146 (25.7)
	40대 이상	2 (0.6)	14 (13.2)	20 (57.1)	4 (10.3)	1 (3.3)	-	41 (7.2)
교육수준	무학	69 (21.2)	-	-	-	5 (16.7)	-	74 (13.2)
	초졸	99 (30.4)	3 (2.8)	-	3 (7.7)	1 (3.3)	-	106 (18.9)
	중졸	104 (31.9)	9 (8.5)	-	17 (43.6)	9 (30.0)	1 (4.0)	140 (25.0)
	고졸	51 (15.6)	49 (46.2)	20 (57.1)	12 (30.8)	13 (43.3)	12 (48.0)	157 (28.0)
	대졸이상	3 (0.9)	45 (42.5)	15 (42.9)	7 (17.9)	2 (6.7)	12 (48.0)	84 (15.0)
거주기간	1년	80 (24.1)	5 (4.7)	0 (0.0)	16 (41.0)	5 (16.7)	7 (28.0)	113 (19.9)
	2년	152 (45.8)	22 (20.8)	1 (2.9)	7 (17.9)	4 (13.3)	6 (24.0)	192 (33.9)
	3년	61 (18.4)	6 (5.7)	4 (11.4)	2 (5.1)	11 (36.7)	2 (8.0)	86 (15.2)
	4년	30 (9.0)	13 (12.3)	4 (11.4)	-	5 (16.7)	1 (4.0)	53 (9.3)
	5년~9년	7 (2.1)	54 (50.9)	14 (40.0)	10 (25.6)	5 (16.7)	9 (36.0)	99 (17.5)
	10년이상	2 (0.6)	6 (5.7)	12 (34.3)	4 (10.3)	-	-	24 (4.2)

출신국가별로 연령층과 한국거주기간, 교육수준을 비교해보면 우선 연령에 있어서는 베트남 출신자 중에는 89.5%가 20대 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 출신자에 비해 20대 연령층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 필리핀,

중국 출신자 가운데에는 20대 연령층이 각각 2.9%, 31.1%, 48.7%로 베트남 출신자에 비해 20대 연령대가 월등히 적고 특히 일본 출신자의 경우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나 필리핀, 중국 출신자 중에는 30대가 각각 40.0%, 55.7%, 41.0%로 베트남 출신자의 경우(9.9%)보다 월등히 많으며 특히 일본 출신자의 경우 40대 이상 층이 57.1%로 비교적 고연령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베트남 출신자 중에는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이 각각 21.2%, 30.4%로 50%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필리핀과 일본, 중국, 캄보디아·태국·인도네시아, 기타 국가 출신자의 경우에는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적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적게는 30%대에서 많게는 57%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필리핀과 일본, 기타 출신자의 경우에는 대졸 이상자가 각각 42.5%, 42.9%, 48.0%로 비교적 높은 학력을 지닌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주기간도 출신국가별로 서로 비교 되는데, 베트남 출신자의 경우 한국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여성이 24.1%, 1-2년 미만인 경우가 45.8%로 약 70%가 한국생활이 채 2년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자의 경우에도 58.9%가 한국거주기간이 2년 미만으로 비교적 최근에 한국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필리핀출신자 경우에는 한국에 체류한지 5-9년 된 여성들이 50.9%, 10년 이상된 여성도 5.7%였으며 특히 일본 출신자 중에는 5-9년된 여성이 40.0%, 10년 이상된 여성도 34.3%로 비교적 오랫동안 한국생활을 해온 여성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추이와 함께 결혼의 대상자 역시 급격히 변화해온 바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국제결혼 대상자라면 통일교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점차 필리핀 여성이 대다수를 이루게 되다가 2000년대를 기점으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대상자도 베트남 출신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베트남 출신자 중에는 한국생활경험이 짧은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비해, 일본이나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기간이 비교적 긴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비교해보면, 우선 연령층의 경우 20대 연령층의 여성결혼이민자 중 남편 역시 20대인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남편이 30대인 경우가 40.6%, 40대인 경우가 53.6%였다. 30대 연령층의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73.1%가 남편이 40대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나 20-30대 연령층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남편의 연령대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3> 본인과 남편의 연령층

단위 :명(%)

구분		남편연령				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본인연령	20대	4 (1.1)	154 (40.6)	203 (53.6)	18 (4.7)	379 (100.0)
	30대	0 (0.0)	27 (18.6)	106 (73.1)	12 (8.3)	145 (100.0)
	40대 이상	0 (0.0)	1 (2.4)	35 (83.3)	6 (14.3)	42 (100.0)
계		4 (0.7)	182 (32.2)	344 (60.8)	36 (6.4)	5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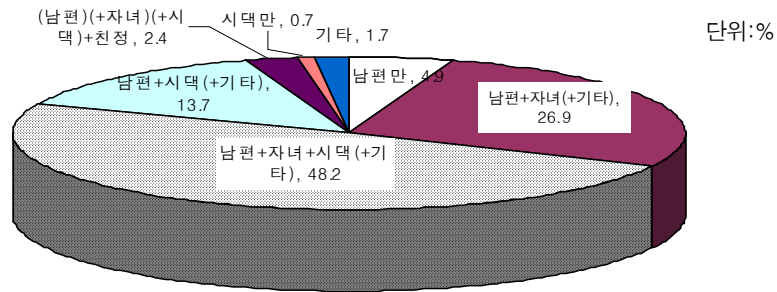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교육수준을 비교해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 중등학교 졸업 정도로 낮은 경우에는 대부분 남편의 교육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졸인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48.8%가 남편 역시 고졸이며 32.3%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자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82.2%가 자신보다 남편의 학력이 낮아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이 남편보다 높은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4> 본인과 남편의 교육수준

단위: 명(%)

구분	남편 교육수준						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모름		
본인 교육수준	무학	9 (12.3)	17 (23.3)	17 (23.3)	21 (28.8)	2 (2.7)	7 (9.6)	73 (100.0)
	초졸	5 (4.8)	17 (16.2)	20 (19.0)	55 (52.4)	4 (3.8)	4 (3.8)	105 (100.0)
	중졸	8 (5.7)	12 (8.6)	32 (22.9)	67 (47.9)	14 (10.0)	7 (5.0)	140 (100.0)
	고졸	8 (5.0)	14 (8.7)	30 (18.6)	92 (57.1)	11 (6.8)	6 (3.7)	161 (100.0)
	대졸이상	2 (2.4)	13 (15.5)	13 (15.5)	41 (48.8)	14 (16.7)	1 (1.2)	84 (100.0)
계	32 (5.7)	73 (13.0)	112 (19.9)	276 (49.0)	45 (8.0)	25 (4.4)	563 (100.0)	

(2) 가족구성



<그림 III-4-1> 가족유형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구성을 보면, 남편과 자녀, 그리고 시부모를 비롯한 시댁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부계확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48.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26.9%가 자신과 남편,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핵가족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 자녀는 없이 남편과 시댁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13.7%, 남편과 자신만이 거주하는 경우가 4.9%이다. 이밖에 친정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도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5> 가족유형

단위: 명(%)

구분	가족유형							계	
	남편만	남편+자녀 (+기타)	남편+자녀+ 시댁(+기타)	남편+시댁 (+기타)	(남편)(+자녀) (+시댁)+친정	시댁만	기타		
전체	28 (4.9)	155 (26.9)	278 (48.2)	79 (13.7)	14 (2.4)	4 (0.7)	10 (1.7)	568 (100.0)	
출신국가	베트남	14 (4.2)	67 (20.3)	180 (54.5)	52 (15.8)	9 (2.7)	3 (0.9)	5 (1.5)	330 (100.0)
	필리핀	3 (2.9)	45 (43.7)	41 (39.8)	9 (8.7)	1 (1.0)	0 (0.0)	4 (3.9)	103 (100.0)
	일본	4 (11.4)	17 (48.6)	11 (31.4)	3 (8.6)	0 (0.0)	0 (0.0)	0 (0.0)	35 (100.0)
	중국	7 (17.9)	9 (23.1)	15 (38.5)	5 (12.8)	2 (5.1)	1 (2.6)	0 (0.0)	39 (100.0)
	캄보디아 국민	0 (0.0)	7 (23.3)	18 (60.0)	4 (13.3)	1 (3.3)	0 (0.0)	0 (0.0)	30 (100.0)
	기타	0 (0.0)	8 (32.0)	12 (48.0)	4 (16.0)	0 (0.0)	0 (0.0)	1 (4.0)	25 (100.0)
	본인연령	20대	14 (3.7)	77 (20.4)	207 (54.8)	60 (15.9)	9 (2.4)	4 (1.1)	7 (1.9)
30대		6 (4.1)	61 (41.8)	60 (41.1)	13 (8.9)	4 (2.7)	0 (0.0)	2 (1.4)	146 (100.0)
40대		5 (12.2)	17 (41.5)	11 (26.8)	6 (14.6)	1 (2.4)	0 (0.0)	1 (2.4)	41 (100.0)
이상		7 (6.5)	12 (11.1)	40 (37.0)	41 (38.0)	1 (0.9)	3 (2.8)	4 (3.7)	108 (100.0)
결혼기간	1년	8 (4.3)	44 (23.9)	101 (54.9)	24 (13.0)	6 (3.3)	0 (0.0)	1 (0.5)	184 (100.0)
	2년	4 (4.2)	25 (26.0)	57 (59.4)	6 (6.3)	2 (2.1)	0 (0.0)	2 (2.1)	96 (100.0)
	3년	2 (4.1)	16 (32.7)	26 (53.1)	1 (2.0)	3 (6.1)	0 (0.0)	1 (2.0)	49 (100.0)
	4년	5 (4.9)	44 (42.7)	43 (41.7)	7 (6.8)	2 (1.9)	0 (0.0)	2 (1.9)	103 (100.0)
	5~9년	0 (0.0)	13 (56.5)	10 (43.5)	0 (0.0)	0 (0.0)	0 (0.0)	0 (0.0)	23 (100.0)
	10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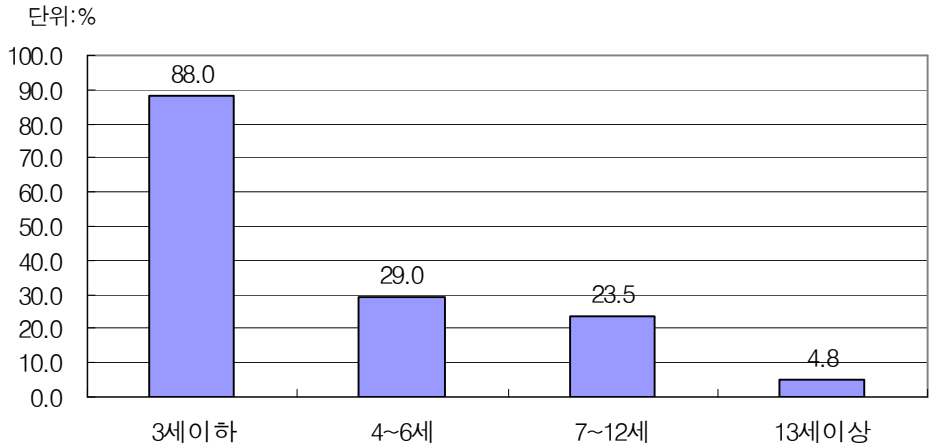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자나 캄보디아·태국·인도네시아 출신자들 중에서 자신과 남편 자녀, 그리고 시댁 가족을 중심으로 한 부계확대가족이나 자녀 없이 남편과 시댁 가족으로 구성된 부계가족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가 거주하는 형태의 부계 중심적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기간별로는 부계확대가족은 2-4년 정도 된 경우, 자녀가 없는 부계 중심적 가족은 결혼한 지 채 1년이 안된 경우에 보다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수를 보면, 25.3%가 동거 자녀가 없으며 47.0%가 자녀 1명과, 21.3%가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도 6.4%에 달했다. 자녀의 연령대는 최고 21세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88.0%가 3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어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이 3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4-6세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29.0%, 7-12세로 초등학교 학령기에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23.5%, 13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3.8%이다.

<표 III-4-6> 동거자녀수

단위: 명(%)

구분		동거자녀수				계
		없음	1명	2명	3명이상	
전체		146 (25.3)	271 (47.0)	123 (21.3)	37 (6.4)	577 (100.0)
출신 국가	베트남	95 (28.3)	188 (56.0)	46 (13.7)	7 (2.1)	336 (100.0)
	필리핀	20 (18.9)	28 (26.4)	45 (42.5)	13 (12.3)	106 (100.0)
	일본	7 (20.0)	6 (17.1)	8 (22.9)	14 (40.0)	35 (100.0)
	중국	13 (33.3)	17 (43.6)	8 (20.5)	1 (2.6)	39 (100.0)
	캄보 태국 인니	5 (16.7)	15 (50.0)	10 (33.3)	0 (0.0)	30 (100.0)
	기타	4 (16.0)	14 (56.0)	6 (24.0)	1 (4.0)	25 (100.0)
본인 연령	20대	108 (28.2)	213 (55.6)	51 (13.3)	11 (2.9)	383 (100.0)
	30대	22 (14.9)	51 (34.5)	58 (39.2)	17 (11.5)	148 (100.0)
	40대 이상	13 (31.0)	6 (14.3)	14 (33.3)	9 (21.4)	42 (100.0)
결혼 기간	1년	57 (51.8)	47 (42.7)	4 (3.6)	2 (1.8)	110 (100.0)
	2년	48 (25.7)	118 (63.1)	18 (9.6)	3 (1.6)	187 (100.0)
	3년	16 (16.7)	67 (69.8)	10 (10.4)	3 (3.1)	96 (100.0)
	4년	6 (11.8)	14 (27.5)	31 (60.8)	0 (0.0)	51 (100.0)
	5~9년	16 (15.4)	22 (21.2)	49 (47.1)	17 (16.3)	104 (100.0)
	10년 이상	0 (0.0)	2 (8.7)	10 (43.5)	11 (47.8)	23 (100.0)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417명)기준임.

<그림 Ⅲ-4-2> 자녀연령대

2) 농업 및 농외취업 현황

(1) 가구 농업경영 현황

조사대상자 중 농사 소속원은 73.7%이며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자와 캄보디아·태국·인도네시아 출신자 중 각각 80.8%, 76.7%가 집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본 출신 중에는 48.6%만이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농가 소속원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7> 가구 농업경영 여부

단위: 명(%)

구분	농업		계	
	한다	안한다		
전체	414 (73.7)	148 (25.6)	562 (100.0)	
출신국가	베트남	265 (80.8)	63 (19.2)	328 (100.0)
	필리핀	66 (66.0)	34 (34.0)	100 (100.0)
	일본	17 (48.6)	18 (51.3)	35 (100.0)
	중국	25 (65.8)	13 (34.2)	38 (100.0)
	캄보 태국 인니	23 (76.7)	7 (23.3)	30 (100.0)
	기타	15 (60.0)	10 (40.0)	25 (100.0)

<표 III-4-7> 가구 농업경영 여부 (계속)

단위: 명(%)

구분		농업		계
		한다	안한다	
연령	20대	300 (76.6)	77 (20.4)	377 (100.0)
	30대	87 (62.1)	53 (37.9)	140 (100.0)
	40대 이상	24 (57.1)	18 (42.9)	42 (100.0)
교육수준	무학	60 (84.5)	11 (15.5)	71 (100.0)
	초졸	77 (74.8)	26 (25.2)	103 (100.0)
	중졸	111 (79.9)	28 (20.1)	139 (100.0)
	고졸	112 (70.4)	47 (29.6)	159 (100.0)
	대졸이상	46 (56.1)	36 (43.9)	82 (100.0)

집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 구성을 보면, 논농사와 밭농사를 함께 짓는 경우가 24.5%로 가장 많고 논농사, 밭농사와 함께 과수원이나 하우스농사를 짓는 경우가 17.3%, 논농사, 밭농사와 함께 축산을 하는 경우가 13.6%로 논농사와 밭농사를 중심으로 한 복합영농 형태의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논농사만 짓는 경우는 13.1%, 밭농사만 짓는 경우는 10.7%였다.

<표 III-4-8> 농업구성

단위 :명(%)

논농사만	49 (13.1)
밭농사만	40 (10.7)
과수원(+논)	23 (6.1)
축산(+논)	22 (5.9)
논+밭농사	92 (24.5)
논+밭+과수원또는하우스	65 (17.3)
논+밭+축산	51 (13.6)
밭+과수원또는하우스	15 (4.0)
축산+밭또는과수원또는하우스	18 (4.8)
계	375 (100.0)

주 수입원인 농업분야는 논농사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밭농사 23.0%, 과수원 농사 16.9%, 축산 9.0%, 하우스 농사 3.1% 순이었다.

<표 Ⅲ-4-9> 주 수입 농업분야

단위: 명(%)

논농사	171 (48.0)
밭농사	82 (23.0)
과수원농사	60 (16.9)
하우스농사	11 (3.1)
축산	32 (9.0)
계	356 (100.0)

농업경영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에서 논, 밭, 과수원 등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규모를 보면, 27.5%가 경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1000평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18.3%, 1001-2000평 이하가 17.7%, 2001-3000평이 12.0%였다. 이에 비해, 24.6%는 3001평 이상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표 Ⅲ-4-10> 경지(논, 밭, 과수원) 소유규모

단위: 명(%)

경지 무소유	140 (27.5)
1000평이하	93 (18.3)
1001~2000평이하	90 (17.7)
2001~3000평이하	61 (12.0)
3001~5000평이하	63 (12.4)
5001평이상	62 (12.2)
계	509 (100.0)

* 농업경영 여부와 무관한 경지 소유규모임.

논이나 밭, 과수원, 하우스, 임야 등 토지경영을 하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토지 경영규모를 보면, 19.1%가 1000평 이하의 경지를 경영하고 있으며, 1001-2000평 규모인 경우가 20.4%, 2001-3000평 규모를 경영하는 경우는 16.5%로 56.0%가 3000평 이하의 토지를 경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3001-5000평 규모의 토지를 경영하는 경우는 17.8%, 5001평 이상을 경영하는 경우는 26.2%였다.

5) 농지소유규모 및 농업경영규모에 대해 응답자 자신이 모를 경우에는 가족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얻었다.

<표 III-4-11> 농업(경지) 경영규모

단위: 명(%)

1000평이하	59 (19.1)
1001~2000평이하	63 (20.4)
2001~3000평이하	51 (16.5)
3001~5000평이하	55 (17.8)
5001평이상	81 (26.2)
계	309 (100.0)

* 토지경영 있는 사례만 대상으로 함.

<표 III-4-12> 농산물 판매액

단위: 명(%)

판매안함	72 (18.7)
300만원 이하	47 (12.2)
300~500만원	40 (10.4)
500~1000만원	47 (12.2)
1000~2000만원	41 (10.6)
2000~3000만원	22 (5.7)
3000만원 이상	13 (3.4)
모름	103 (26.8)
계	385 (100.0)

연간 농산물 판매 수입규모에 대해서는 ‘판매액수를 모른다’는 여성결혼이민자가 26.8%로 농가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상당수는 가구의 농업경영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에서 주로 소비하는 수준으로 판매를 거의 안한다는 응답이 18.7%, 연간 판매규모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12.2%, 300-500만원 정도라는 응답이 10.4%, 500-1000만원이라는 응답이 12.2% 등으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총 53.5%에 달해 여성결혼이민자가 소속된 농가 대부분은 소규모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연간 판매액이 1000-2000만원이라는 응답이 10.6%, 2000-3000만원이라는 경우는 5.7%, 3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3.4%였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참여 현황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이 지난 1년간 농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2.9%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36.2%였다.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자 중에는 72.5%가 지난 1년간 농업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농업참여 경험율이 높는데 비해, 일본 출신자 중에는 35.3%만이 농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참여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중에는 68.8%가 참여 경험이 있어 30대(53.1%), 40대 이상(48.8%)에 비해 참여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은 층에서 높은 층에 비해 농업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주기간별로는 5년 이상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농업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오랜 기간 거주함에 따라 농업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III-4-13> 농업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		지난 1년간 농업참여 경험		계
		있음	없음	
전체		363 (62.9)	209 (36.2)	572 (100.0)
출신국가	베트남	242 (72.5)	92 (27.5)	334 (100.0)
	필리핀	59 (56.7)	45 (43.3)	104 (100.0)
	일본	12 (35.3)	22 (64.7)	34 (100.0)
	중국	21 (53.8)	18 (46.2)	39 (100.0)
	캄보 태국 인니	17 (56.7)	13 (43.3)	30 (100.0)
	기타	8 (32.0)	17 (68.0)	25 (100.0)
연령	20대	262 (68.8)	119 (31.2)	381 (100.0)
	30대	78 (53.1)	69 (46.9)	147 (100.0)
	40대 이상	20 (48.8)	21 (51.2)	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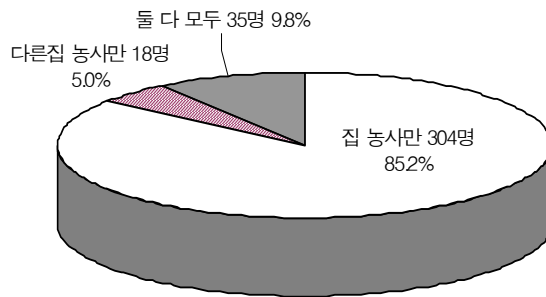
6) 본 조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 종사율은 여성가족부의 2006년 조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조사대상자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을 뿐 더러, 이외에 질문방식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는 주요한 직업을 물어보았는데, 가족농에 기초한 농업구조 상 농업을 가사노동의 연장성 산에서 받아들이고 농업에 참여하면서도 이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는 농후하다. 이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직업으로서 보다는 농업참여 경험 여부를 질문하였다.

<표 III-4-13> 농업참여 여부 (계속)

단위: 명(%)

구분		지난 1년간 농업참여 경험		계
		있음	없음	
교육수준	무학	56 (76.7)	17 (23.3)	73 (100.0)
	초졸	77 (72.6)	29 (27.4)	106 (100.0)
	중졸	92 (65.2)	49 (34.8)	141 (100.0)
	고졸	97 (60.6)	63 (39.4)	160 (100.0)
	대졸이상	34 (41.0)	49 (59.0)	83 (100.0)
거주기간	1년	79 (69.9)	34 (30.1)	113 (100.0)
	2년	122 (63.2)	71 (36.8)	193 (100.0)
	3년	53 (60.2)	35 (39.8)	88 (100.0)
	4년	38 (71.7)	15 (28.3)	53 (100.0)
	5~9년	54 (55.1)	44 (44.9)	98 (100.0)
	10년 이상	14 (58.3)	10 (41.7)	24 (100.0)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참여 범위를 보면 85.2%가 자신의 집 농사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집 농사와 다른 집 농사를 하는 경우가 9.8%였다. 이밖에 5.0%는 다른 집 농사만 하고 있다.



<그림 III-4-3> 농업참여 범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업을 통해 얻는 월평균 수입을 보면, 조사대상자 중 79.8%가 자신의 집 농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현금 수입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8.6%는 한달 평균 농업을 통해 30만원 이하의 수입을 올린다고 응답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농업수입이 월 평균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11.7% 였다. 이처럼 가족농에 기초한 농업구조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집 농사를 중심으로 농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농업을 통해 별도의 현금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금수입이 있더라도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4> 월평균 농업수입

단위: 명(%)

구분		농업 수입			계
		돈 안 받음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전체		281 (79.8)	30 (8.6)	41 (11.7)	352 (100.0)
출신국가	베트남	189 (80.4)	20 (8.5)	26 (11.1)	235 (100.0)
	필리핀	48 (82.8)	4 (6.9)	6 (10.3)	58 (100.0)
	일본	9 (75.0)	1 (8.3)	2 (16.7)	12 (100.0)
	중국	17 (81.0)	2 (9.5)	2 (9.5)	21 (100.0)
	캄보 태국 인니	11 (68.8)	2 (12.5)	3 (18.8)	16 (100.0)
	기타	4 (66.7)	0 (0.0)	2 (33.3)	6 (100.0)
연령	20대	213 (83.2)	22 (8.6)	21 (8.2)	256 (100.0)
	30대	52 (71.2)	6 (8.2)	15 (20.5)	73 (100.0)
	40대 이상	14 (70.0)	2 (10.0)	4 (20.0)	20 (100.0)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집 농사에 참여하는 정도를 보면, 29.3%가 다른 가족원 만큼 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본인이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2.2%는 다른 가족원이 집 농사를 주로 하고 자신은 조금만 돕는다고 하였다. 출신국가별로는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부분 조금만 돕는 정도로 농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베트남 여성들은 다른 국가 출신 여성에 비해 다른 가족원과 유사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집 농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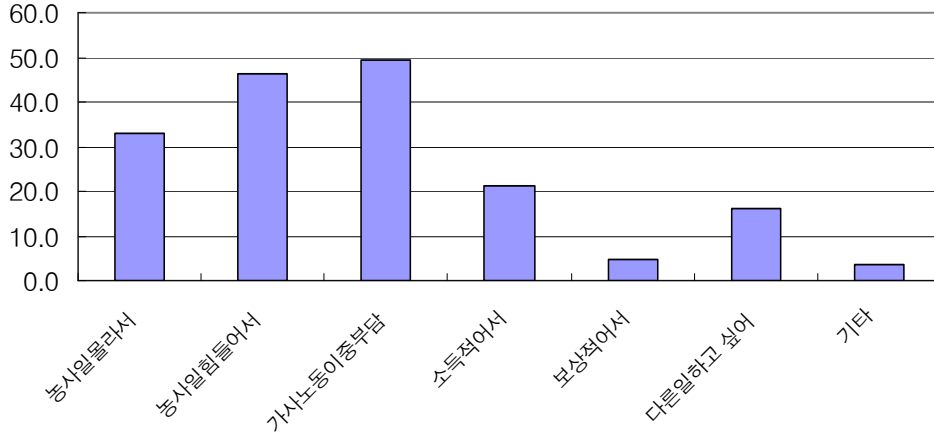
<표 III-4-15> 가구 농업 참여 정도

단위: 명(%)

구분		농업 참여 정도			계
		다른 식구만큼 혹은 그 이상	조금만 돕는다	남의 집 일만	
전체		125 (29.3)	219 (62.2)	8 (1.4)	352 (100.0)
출신국가	베트남	93 (39.7)	135 (57.7)	6 (2.6)	234 (100.0)
	필리핀	16 (28.1)	39 (68.4)	2 (3.5)	57 (100.0)
	일본	2 (16.7)	10 (83.3)	0 (0.0)	12 (100.0)
	중국	7 (33.3)	14 (66.7)	0 (0.0)	21 (100.0)
	캄보 태국 인니	6 (35.3)	11 (64.7)	0 (0.0)	17 (100.0)
	기타	1 (14.3)	6 (85.7)	0 (0.0)	7 (100.0)
연령	20대	91 (35.5)	159 (62.1)	6 (2.3)	256 (100.0)
	30대	27 (37.0)	45 (61.6)	1 (1.4)	73 (100.0)
	40대 이상	6 (30.0)	13 (65.0)	1 (5.0)	20 (100.0)

농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49.3%가 농업과 가사노동을 함께 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46.1%가 농사일 자체의 어려움을 지적해 노동 자체의 고됨을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한국사회의 특징적인 농업구조 및 성역할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농 구조 하에서 여성들의 농업참여는 가사노동과 명확히 분리되지 않으며 가사의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다. 가사를 여성결혼이민자가 전담해야 하고 가사·육아 지원을 위한 공공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참여는 기존의 가내 의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농사일을 몰라서 어렵다는 여성들도 32.9%에 이르렀으며 21.3%는 농업 소득이 적은 점을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단위:%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347) 기준임.

<그림 Ⅲ-4-4> 농업의 어려움

<표 Ⅲ-4-16> 농업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농사일을 몰라서	농사일이 힘들어서	가사노동이중부담	소득이 적어서	보상이 적어서	다른 일하고 싶어	기타	
전체	114 (32.9)	160 (46.1)	171 (49.3)	74 (21.3)	17 (4.9)	56 (16.1)	12 (3.5)	
출신 국가	베트남	73 (31.3)	111 (47.6)	110 (47.2)	48 (20.6)	14 (6.0)	36 (15.5)	8 (3.4)
	필리핀	14 (24.6)	23 (40.4)	39 (68.4)	13 (22.8)	0 (0.0)	9 (15.8)	3 (5.3)
	일본	7 (58.3)	3 (25.0)	6 (50.0)	1 (8.3)	1 (8.3)	1 (8.3)	1 (8.3)
	중국	8 (44.4)	8 (44.4)	6 (33.3)	7 (38.9)	2 (11.1)	3 (16.7)	0 (0.0)
	캄보디아	6 (37.5)	9 (56.3)	7 (43.8)	4 (25.0)	0 (0.0)	3 (18.8)	0 (0.0)
	태국	6 (37.5)	9 (56.3)	7 (43.8)	4 (25.0)	0 (0.0)	3 (18.8)	0 (0.0)
	인니	6 (37.5)	9 (56.3)	7 (43.8)	4 (25.0)	0 (0.0)	3 (18.8)	0 (0.0)
기타	5 (71.4)	3 (42.9)	3 (42.9)	0 (0.0)	0 (0.0)	3 (42.9)	0 (0.0)	
연령	20대	81 (32.1)	122 (48.4)	121 (48.0)	50 (19.8)	14 (5.6)	40 (15.9)	9 (3.6)
	30대	25 (34.2)	31 (42.5)	41 (56.2)	15 (20.5)	2 (2.7)	15 (20.5)	1 (1.4)
	40대 이상	8 (42.1)	7 (36.8)	8 (42.1)	7 (36.8)	1 (5.3)	0 (0.0)	2 (10.5)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 기준임.

(3) 본국에서의 취업 경력

조사대상자들의 본국에서의 취업경력을 살펴보면, 우선 본국에서 취업 경험이 있는 이들이 74.7%에 달했다. 출신국가별로는 일본과 중국, 필리핀 출신자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이들이 비교적 많았으며, 이에 비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출신자들은 취업 경험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높은 연령대에서, 교육수준 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국에서 취업했던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7> 본국에서의 취업 여부

단위: 명(%)

구분		본국에서 취업 경험		계
		있음	없음	
전체		431 (74.7)	134 (23.2)	565 (100.0)
출신국가	베트남	231 (70.6)	96 (29.4)	327 (100.0)
	필리핀	89 (85.6)	15 (14.4)	104 (100.0)
	일본	33 (94.3)	2 (5.7)	35 (100.0)
	중국	35 (89.7)	4 (10.3)	39 (100.0)
	캄보 태국 인니	18 (60.0)	12 (40.0)	30 (100.0)
	기타	21 (84.0)	4 (16.0)	25 (100.0)
연령	20대	269 (71.5)	107 (28.5)	376 (100.0)
	30대	121 (84.0)	23 (16.0)	144 (100.0)
	40대 이상	39 (92.9)	3 (7.1)	42 (100.0)
교육수준	무학	47 (67.1)	23 (32.9)	70 (100.0)
	초졸	70 (66.7)	35 (33.3)	105 (100.0)
	중졸	104 (74.3)	36 (25.7)	140 (100.0)
	고졸	127 (80.4)	31 (19.6)	158 (100.0)
	대졸이상	78 (92.9)	6 (7.1)	84 (100.0)
거주기간	1년	85 (75.2)	28 (24.8)	113 (100.0)
	2년	133 (71.1)	54 (28.9)	187 (100.0)
	3년	61 (70.1)	26 (29.9)	87 (100.0)
	4년	42 (82.4)	9 (17.6)	51 (100.0)
	5~9년	88 (88.0)	12 (12.0)	100 (100.0)
	10년 이상	20 (83.3)	4 (16.7)	24 (100.0)

본국에서 했던 일의 종류를 보면, 공장에 다녔던 여성들이 4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무직(15.6%), 외국어 통역이나 강사(14.6%)의 순이었다. 본국에서 농업을 했던 여성들은 13.2%였다.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자 가운데에는 농업에 종사했던 경우가 20.8%, 공장에 다녔던 경우가 49.8%로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많았다. 이에 비해, 필리핀이나 일본 출신자 중에는 농업에 종사해본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신 사무직이나 교사, 간호사 등으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 비교적 많았다. 이 밖에 필리핀 출신자 중에는 가사도우미로 일해 본 이들이 비교적 다수를 차지했다.

<표 Ⅲ-4-18> 본국에서의 취업 분야

단위: 명(%)

구분	농업	공장	사무직	교사 간호사	통역 ·강사	가게 운영	가게 종업원	가사 도우미	기타	
전체	55 (13.2)	170 (40.7)	65 (15.6)	35 (8.4)	61 (14.6)	43 (10.3)	18 (4.3)	50 (12.0)	10 (2.4)	
출신 국가	베트남	46 (20.8)	110 (49.8)	11 (5.0)	2 (0.9)	35 (15.8)	24 (10.9)	10 (4.5)	22 (10.0)	0 (0.0)
	필리핀	3 (3.4)	26 (29.9)	20 (23.0)	13 (14.9)	11 (12.6)	7 (8.0)	2 (2.3)	19 (21.8)	4 (4.6)
	일본	0 (0.0)	6 (19.4)	18 (58.1)	6 (19.4)	4 (12.9)	4 (12.9)	1 (3.2)	1 (3.2)	4 (12.9)
	중국	4 (11.4)	11 (31.4)	7 (20.0)	5 (14.3)	4 (11.4)	4 (11.4)	4 (11.4)	5 (14.3)	1 (2.9)
	캄보 태국 인니	2 (11.1)	9 (50.0)	3 (16.7)	1 (5.6)	2 (11.1)	1 (5.6)	0 (0.0)	2 (11.1)	1 (5.6)
	기타	0 (0.0)	8 (38.1)	3 (14.3)	7 (33.3)	3 (14.3)	3 (14.3)	1 (4.8)	1 (4.8)	0 (0.0)
연령	20대	45 (17.2)	127 (48.7)	18 (6.9)	12 (4.6)	37 (14.2)	32 (12.3)	13 (5.0)	29 (11.1)	2 (0.8)
	30대	7 (6.0)	34 (29.3)	27 (23.3)	17 (14.7)	21 (18.1)	6 (5.2)	3 (2.6)	17 (14.7)	4 (3.4)
	40대 이상	2 (5.1)	9 (23.1)	19 (48.7)	6 (15.4)	3 (7.7)	5 (12.8)	2 (5.1)	4 (10.3)	4 (10.3)
교육 수준	무학	14 (31.8)	18 (40.9)	2 (4.5)	0 (0.0)	4 (9.1)	7 (15.9)	2 (4.5)	5 (11.4)	0 (0.0)
	초졸	12 (17.4)	34 (49.3)	1 (1.4)	0 (0.0)	15 (21.7)	9 (13.0)	2 (2.9)	7 (10.1)	1 (1.4)
	중졸	20 (19.4)	51 (49.5)	5 (4.9)	0 (0.0)	17 (16.5)	11 (10.7)	5 (4.9)	12 (11.7)	0 (0.0)
	고졸	8 (6.4)	54 (43.2)	26 (20.8)	9 (7.2)	18 (14.4)	12 (9.6)	8 (6.4)	16 (12.8)	4 (3.2)
	대졸이상	1 (1.4)	10 (13.5)	31 (41.9)	26 (35.1)	7 (9.5)	4 (5.4)	1 (1.4)	10 (13.5)	5 (6.8)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 기준임.

(4) 농외취업 현황

현재 농업이외의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8.9%로 농업참여율에 비해 농외취업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로는 필리핀과 중국 출신자 가운데 농외취업자가 비교적 많고, 연령대로는 30대 이상층에서,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상의 고학력층과 무학 출신자 가운데 농외취업자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9> 농외취업 현황

단위 :명(%)

구분		농업외 취업 여부		계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	
전체		106 (18.9)	454 (81.1)	560 (100.0)
출신국가	베트남	54 (16.7)	270 (83.3)	324 (100.0)
	필리핀	31 (30.7)	70 (69.3)	101 (100.0)
	일본	3 (8.6)	32 (91.4)	35 (100.0)
	중국	9 (23.1)	30 (76.9)	39 (100.0)
	캄보 태국 인니	5 (16.7)	25 (83.3)	30 (100.0)
	기타	3 (12.0)	22 (88.0)	25 (100.0)
연령	20대	54 (14.6)	316 (85.4)	370 (100.0)
	30대	41 (28.5)	103 (71.5)	144 (100.0)
	40대 이상	10 (23.8)	32 (76.2)	42 (100.0)
교육수준	무학	15 (21.7)	54 (78.3)	69 (100.0)
	초졸	16 (15.2)	89 (84.8)	105 (100.0)
	중졸	23 (16.7)	115 (83.3)	138 (100.0)
	고졸	27 (17.3)	129 (82.7)	156 (100.0)
	대졸이상	22 (26.8)	60 (73.2)	82 (100.0)
거주기간	1년	15 (13.6)	95 (86.4)	110 (100.0)
	2년	26 (13.8)	162 (86.2)	188 (100.0)
	3년	15 (18.1)	68 (81.9)	83 (100.0)
	4년	9 (17.6)	42 (82.4)	51 (100.0)
	5~9년	36 (36.0)	64 (64.0)	100 (100.0)
	10년 이상	4 (16.7)	20 (83.3)	24 (100.0)

농외취업자들이 일하는 종류를 보면, 공장에 다니는 이들이 3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타(18.3%), 외국어 통역이나 강사(15.1%), 가게 운영(15.1%)였다. 농외취업분야는 출신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베트남 출신자 가운데에는 공장에 다니는 이들이 현저히 많은데 비해, 필리핀 출신자 중에는 간호사 등으로 일하거나 외국어 통역이나 강사로 일하는 경우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이나 한국거주기간별로 보면,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교육수준이나 거주기간이 크게 관련이 없고 다만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나 한국생활이 10년 이상된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사나 간호사, 외국어 통역이나 강사 등으로 일하는 경우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 한국생활기간이 적어도 4-5년은 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외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외국어 강사나 통역, 교사나 간호사 등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영어나 일본어를 할 수 있으면서 상당 수준의 학력과 한국 생활 경험을 지니고 있는 필리핀이나 일본 출신의 소수 여성결혼이민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택할 수 있는 농외취업은 공장에 다니는 것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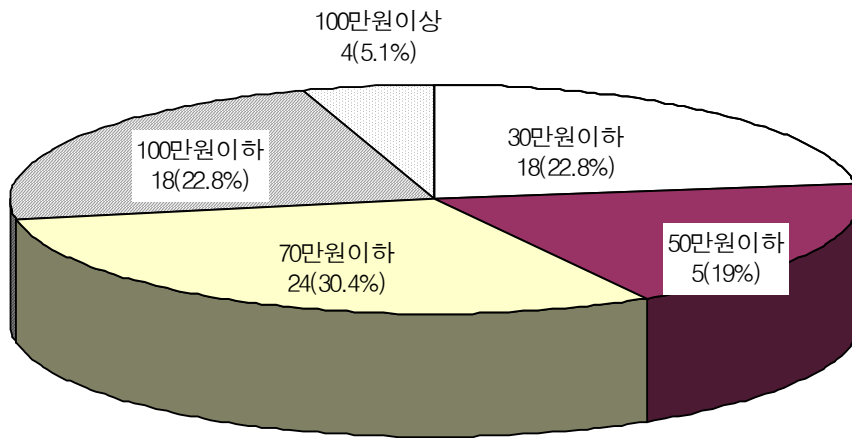
<표 III-4-20> 농외취업 분야

단위: 명(%)

구분	공장	사무직	교사 간호사	통역 ·강사	가게 운영	가게 종업원	가사 도우미	노무직	기타	
전체	29 (34.9)	5 (6.0)	3 (3.6)	14 (15.1)	14 (15.1)	3 (3.2)	5 (5.4)	3 (3.2)	17 (18.3)	
출신국가	베트남	20 (54.1)	4 (10.8)	0 (0.0)	1 (2.7)	5 (13.5)	2 (5.4)	4 (10.8)	0 (0.0)	6 (16.2)
	필리핀	4 (15.4)	0 (0.0)	2 (7.7)	10 (38.5)	3 (11.5)	1 (3.8)	1 (3.8)	2 (7.7)	7 (26.9)
	일본	0 (0.0)	1 (33.3)	0 (0.0)	1 (33.3)	1 (33.3)	0 (0.0)	0 (0.0)	0 (0.0)	0 (0.0)
	중국	1 (12.5)	0 (0.0)	1 (12.5)	1 (12.5)	4 (50.0)	0 (0.0)	0 (0.0)	0 (0.0)	2 (25.0)
	캄보 태국 인니	1 (20.0)	0 (0.0)	0 (0.0)	0 (0.0)	1 (20.0)	0 (0.0)	0 (0.0)	1 (20.0)	2 (40.0)
	기타	3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연령	20대	17 (48.6)	4 (11.4)	0 (0.0)	3 (8.6)	6 (17.1)	1 (2.9)	2 (5.7)	0 (0.0)	5 (14.3)
	30대	10 (27.0)	0 (0.0)	3 (8.1)	6 (16.2)	7 (18.9)	2 (5.4)	3 (8.1)	2 (5.4)	10 (27.0)
	40대 이상	2 (20.0)	1 (10.0)	0 (0.0)	4 (40.0)	1 (10.0)	0 (0.0)	0 (0.0)	1 (10.0)	2 (20.0)
교육수준	무학	5 (45.5)	1 (9.1)	0 (0.0)	0 (0.0)	2 (18.2)	0 (0.0)	2 (18.2)	0 (0.0)	3 (27.3)
	초졸	6 (54.5)	2 (18.2)	0 (0.0)	0 (0.0)	2 (18.2)	0 (0.0)	0 (0.0)	0 (0.0)	2 (18.2)
	중졸	9 (50.0)	1 (5.6)	0 (0.0)	0 (0.0)	4 (22.2)	1 (5.6)	1 (5.6)	1 (5.6)	3 (16.7)
	고졸	7 (33.3)	1 (4.8)	1 (4.8)	2 (9.5)	5 (23.8)	1 (4.8)	1 (4.8)	1 (4.8)	5 (23.8)
	대졸이상	2 (10.0)	0 (0.0)	2 (10.0)	11 (55.0)	1 (5.0)	1 (5.0)	0 (0.0)	1 (5.0)	4 (20.0)
거주기간	1년	2 (20.0)	0 (0.0)	0 (0.0)	0 (0.0)	6 (60.0)	1 (10.0)	0 (0.0)	0 (0.0)	1 (10.0)
	2년	8 (47.1)	0 (0.0)	0 (0.0)	2 (11.8)	3 (17.6)	1 (5.9)	2 (11.8)	0 (0.0)	4 (23.5)
	3년	10 (71.4)	3 (21.4)	0 (0.0)	0 (0.0)	1 (7.1)	0 (0.0)	1 (7.1)	0 (0.0)	1 (7.1)
	4년	3 (42.9)	0 (0.0)	0 (0.0)	1 (14.3)	0 (0.0)	0 (0.0)	2 (28.6)	1 (14.3)	1 (14.3)
	5~9년	6 (19.4)	1 (3.2)	3 (9.7)	9 (29.0)	4 (12.9)	1 (3.2)	0 (0.0)	1 (3.2)	10 (32.3)
	10년 이상	0 (0.0)	1 (33.3)	0 (0.0)	1 (33.3)	0 (0.0)	0 (0.0)	0 (0.0)	1 (33.3)	0 (0.0)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 기준임.

농외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월평균 취업 소득을 보면, 22.8%가 30만원 이하라고 응답했으며, 30-50만원 수준인 경우가 19.0%, 50-70만원이 30.4%, 70-100만원이 22.8%, 100만원 이상이 5.1%로 농업 소득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5> 농외취업 소득

3) 농업·농촌에 대한 전망

(1) 농촌 거주 의사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촌 인구구조와 농업 동향을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는 향후 농촌사회와 농업 및 관련산업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이 농촌 거주와 농업 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 농촌에 대한 전망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전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계획의 실현을 뒷받침할 만한 정책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 여성결혼이민자의 향후 농촌 거주의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가운데 62.1%가 농촌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농촌을 떠나고

싶다는 여성은 37.9%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신국가별로는 일본 출신자 중에서 농촌 거주 의사를 지닌 이들이 비교적 많은데 비해, 이농 의사를 지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특히 중국 출신자 가운데 비교적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층에 비해 20-30대층에게서 이농 의사가 비교적 높았으며 거주기간별로는 3-4년차 여성결혼이민자가 이농 의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초적인 적응단계를 어느 정도 거친 이들에게서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농가 소속 여성결혼이민자, 농업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그 밖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농촌거주 의사가 약간 높은 것으로는 나타났으나, 농가소속원, 농업경험자 가운데에서도 35% 가량이 이농 의사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경지소유규모 면에서는 경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1000평 이하 수준의 소규모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결혼이민자에 비해 그 이상의 경지를 소유한 가구 소속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앞으로 농촌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았다. 또한 농업경영규모 면에서도 3000평 이상의 경지를 경영하는 농가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소규모 경영 농가의 여성결혼이민자보다 농촌거주 의사가 높아 일정 규모 이상이 경지를 소유하거나 경영 규모를 갖춘 농가 소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농촌거주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상당수가 농촌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점은 농촌사회의 미래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젊은 연령층에서는 이농 의사가 높고 한국사회에 대한 기초적 적응단계를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떠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점은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사회에 실질적 활력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 연령층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사회에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으며 특히 농촌, 농촌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농가 소속 여성결혼이민자, 농업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그 가운데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경지를 소유하거나 경영규모를 갖춘 농가 소속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사회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자리잡아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Ⅲ. 20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점검 107

<표 Ⅲ-4-21> 농촌 거주 의사

단위: 명(%)

구분	농촌 거주 의사		계	
	계속 살고 싶다	떠나고 싶다		
전체	350 (62.1)	214 (37.9)	564 (100.0)	
출신국가	베트남	205 (62.5)	123 (37.5)	328 (100.0)
	필리핀	64 (62.7)	38 (37.3)	102 (100.0)
	일본	26 (74.3)	9 (25.7)	35 (100.0)
	중국	17 (43.6)	22 (56.4)	39 (100.0)
	캄보 태국 인니	24 (82.8)	5 (17.2)	29 (100.0)
	기타	12 (48.0)	13 (52.0)	25 (100.0)
연령	20대	233 (62.3)	141 (37.7)	374 (100.0)
	30대	87 (60.0)	58 (40.0)	145 (100.0)
	40대 이상	30 (71.4)	12 (28.6)	42 (100.0)
교육수준	무학	45 (61.6)	28 (38.4)	73 (100.0)
	초졸	65 (61.3)	41 (38.7)	106 (100.0)
	중졸	90 (67.2)	44 (32.8)	134 (100.0)
	고졸	94 (58.8)	66 (41.3)	160 (100.0)
	대졸이상	50 (61.0)	32 (39.0)	82 (100.0)
거주기간	1년	71 (63.4)	41 (36.6)	112 (100.0)
	2년	123 (64.7)	67 (35.3)	190 (100.0)
	3년	50 (58.1)	36 (41.9)	86 (100.0)
	4년	31 (59.6)	21 (40.4)	52 (100.0)
	5~9년	59 (60.8)	38 (39.2)	97 (100.0)
	10년 이상	16 (66.7)	8 (33.3)	24 (100.0)
농가여부	농가	258 (63.4)	149 (36.6)	407 (100.0)
	비농가	81 (56.3)	63 (43.8)	144 (100.0)
농사경험	있음	235 (66.0)	121 (34.0)	356 (100.0)
	없음	113 (55.1)	92 (44.9)	205 (100.0)
경지소유규모	없음	76 (55.5)	61 (44.5)	137 (100.0)
	1000평이하	53 (58.2)	38 (41.8)	91 (100.0)
	1001~2000평이하	64 (72.7)	24 (27.3)	88 (100.0)
	2001~3000평이하	38 (63.3)	22 (36.7)	60 (100.0)
	3001~5000평이하	38 (60.3)	25 (39.7)	63 (100.0)
	5001평이상	42 (67.7)	20 (32.3)	62 (100.0)
농업경영규모	1000평이하	41 (63.1)	24 (36.9)	65 (100.0)
	1001~2000평이하	43 (62.3)	26 (37.7)	69 (100.0)
	2001~3000평이하	32 (62.7)	19 (37.3)	51 (100.0)
	3001~5000평이하	37 (66.1)	19 (33.9)	56 (100.0)
	5001평이상	58 (69.9)	25 (30.1)	83 (100.0)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농을 원하는 이유를 보면, 농촌에서는 돈을 벌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 여성결혼이민자가 6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 교육문제(52.7%)가 지적되었다. 그리고 힘든 농사일, 낙후된 생활환경, 제한된 문화향수기회 등을 지적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결국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구조적 현실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농촌을 떠났던 것처럼, 여성결혼이민자들 역시 이러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이농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농촌사회의 본격적 활성화(revitalization)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III-4-22> 이농희망 이유

단위: 명(%)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농사일이 힘들어서	돈벌기가 힘들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어서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주위에 친하게 지낼 사람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 때문에	기타
84 (41.4)	86 (42.4)	128 (63.1)	66 (32.5)	107 (52.7)	27 (13.3)	19 (9.4)	19 (9.4)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203) 기준임.

이밖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흔히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적 소외와 주변사람들의 차별적 시선이다. 농촌사회에서 부녀회 참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조사대상자 가운데 3/4 정도의 여성결혼이민자는 부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내 한국인 여성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되었다. 현재 부녀회에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24.9% 수준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농가 소속의 여성결혼이민자, 농업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녀회 참여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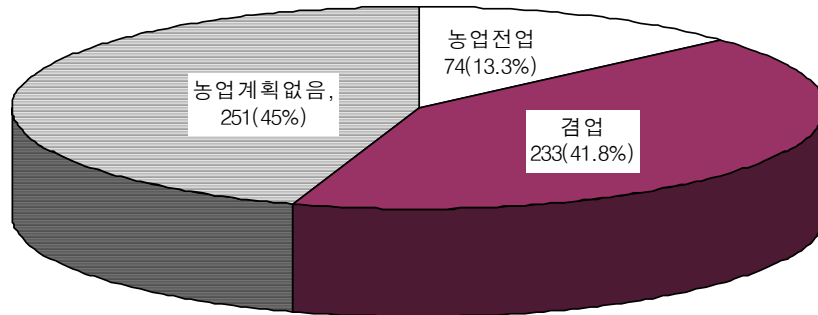
<표 Ⅲ-4-23> 부녀회 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		부녀회 참여		계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전체		138 (24.9)	416 (75.1)	554 (100.0)
출신국가	베트남	67 (20.9)	254 (79.1)	321 (100.0)
	필리핀	37 (37.0)	63 (63.0)	100 (100.0)
	일본	11 (31.4)	24 (68.6)	35 (100.0)
	중국	7 (18.4)	31 (81.6)	38 (100.0)
	캄보 태국 인니	11 (36.7)	19 (63.3)	30 (100.0)
	기타	4 (6.0)	21 (84.0)	25 (100.0)
연령	20대	78 (21.0)	293 (79.0)	371 (100.0)
	30대	44 (31.7)	95 (68.3)	139 (100.0)
	40대 이상	16 (38.1)	26 (61.9)	42 (100.0)
교육수준	무학	20 (29.4)	48 (70.6)	68 (100.0)
	초졸	19 (18.8)	82 (81.2)	101 (100.0)
	중졸	28 (20.0)	112 (80.0)	140 (100.0)
	고졸	41 (26.5)	114 (73.5)	155 (100.0)
	대졸이상	26 (32.1)	55 (67.9)	81 (100.0)
거주기간	1년	17 (15.9)	90 (84.1)	107 (100.0)
	2년	38 (20.3)	149 (79.7)	187 (100.0)
	3년	24 (27.9)	62 (72.1)	86 (100.0)
	4년	12 (24.0)	38 (76.0)	50 (100.0)
	5~9년	37 (38.1)	60 (61.9)	97 (100.0)
	10년 이상	10 (41.7)	14 (58.3)	24 (100.0)
농가여부	농가	103 (25.8)	296 (74.2)	399 (100.0)
	비농가	32 (22.2)	112 (77.8)	144 (100.0)
농사경험	있음	96 (27.5)	253 (72.5)	349 (100.0)
	없음	41 (20.3)	161 (79.7)	202 (100.0)

(2) 농업 관련 계획

향후 농업 계획에 대해서는 55.1%가 앞으로 농업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3.3%가 농업만 할 계획이 있으며 41.8%는 농업과 다른 일을 함께 할 계획이 있어 농업 전업보다는 농업과 농외취업을 함께 하는 겸업 의사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6> 향후 농업 계획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출신자 중에서, 연령대별로는 20대 연령층에서 농업계획이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나 대졸이상 보다는 중졸 이하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거주기간이 비교적 짧은 이들에게서 농업계획이 있는 경우가 보다 많았다. 그리고 농가소속 여성결혼이민자, 농업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농업계획이 있는 경우가 보다 많았다. 토지소유 및 농업경영규모 면에서도 비교적 넓은 면적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소속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한된 면적의 경지를 소유한 가구의 여성결혼이민자보다, 경영규모가 큰 농가 소속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영규모가 제한된 농가의 여성결혼이민자보다 앞으로 농업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향후 농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의사를 발전시키고 농업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농업 인적자원으로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방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지를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농가 소속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농업과 농외취업을 함께 하는 겸업에 대한 의사가 높은 만큼 겸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젊은 연령층, 한국생활 초기단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중요할 것이다.

<표 Ⅲ-4-24> 향후 농업 계획

단위: 명(%)

구분	농업 계획			계	
	농업만	농업 + 다른 일	농업 계획 없음		
전체	74 (13.3)	233 (41.8)	251 (45.0)	558 (100.0)	
출신국가	베트남	54 (16.7)	144 (44.4)	126 (38.9)	324 (100.0)
	필리핀	9 (9.1)	40 (40.4)	50 (50.5)	99 (100.0)
	일본	2 (5.7)	13 (37.1)	20 (57.1)	35 (100.0)
	중국	3 (7.7)	15 (38.5)	21 (53.8)	39 (100.0)
	캄보 태국 인니	5 (16.7)	11 (36.7)	14 (46.7)	30 (100.0)
	기타	1 (4.0)	7 (28.0)	17 (68.0)	25 (100.0)
연령	20대	54 (14.6)	168 (45.4)	148 (40.0)	370 (100.0)
	30대	14 (9.9)	48 (33.8)	80 (56.3)	142 (100.0)
	40대 이상	5 (11.9)	15 (35.7)	22 (52.4)	42 (100.0)
교육수준	무학	16 (23.2)	24 (34.8)	29 (42.0)	69 (100.0)
	초졸	9 (8.7)	52 (50.0)	43 (41.3)	104 (100.0)
	중졸	26 (19.0)	61 (44.5)	50 (36.5)	137 (100.0)
	고졸	15 (9.5)	62 (39.2)	81 (51.3)	158 (100.0)
	대졸이상	6 (7.5)	28 (35.0)	46 (57.5)	80 (100.0)
거주기간	1년	15 (13.5)	55 (49.5)	41 (36.9)	111 (100.0)
	2년	22 (12.0)	77 (42.1)	84 (45.9)	183 (100.0)
	3년	15 (17.2)	32 (36.8)	40 (46.0)	87 (100.0)
	4년	8 (15.4)	22 (42.3)	22 (42.3)	52 (100.0)
	5~9년	9 (9.3)	37 (38.1)	51 (52.6)	97 (100.0)
	10년 이상	4 (16.7)	8 (33.3)	12 (50.0)	24 (100.0)
농가여부	농가	66 (16.3)	210 (52.0)	128 (31.7)	404 (100.0)
	비농가	6 (4.3)	18 (12.8)	117 (83.0)	141 (100.0)
농사경험	있음	55 (15.6)	192 (54.5)	105 (29.8)	352 (100.0)
	없음	18 (8.9)	40 (19.8)	144 (71.3)	202 (100.0)
경지소유면적	없음	13 (9.8)	35 (26.3)	85 (63.9)	133 (100.0)
	1000평이하	14 (15.7)	42 (47.2)	33 (37.1)	89 (100.0)
	1001~2000평이하	11 (12.6)	46 (52.9)	30 (34.5)	87 (100.0)
	2001~3000평이하	11 (18.3)	28 (46.7)	21 (35.0)	60 (100.0)
	3001~5000평이하	8 (12.7)	36 (57.1)	19 (30.2)	63 (100.0)
	5001평이상	11 (18.0)	31 (50.8)	19 (31.1)	61 (100.0)
농업경영규모	1000평이하	11 (17.2)	32 (50.0)	21 (32.8)	64 (100.0)
	1001~2000평이하	6 (9.0)	39 (58.2)	22 (32.8)	67 (100.0)
	2001~3000평이하	10 (20.0)	25 (50.0)	15 (30.0)	50 (100.0)
	3001~5000평이하	9 (15.8)	31 (54.4)	17 (29.8)	57 (100.0)
	5001평이상	16 (19.8)	45 (55.6)	20 (24.7)	81 (100.0)

농업의사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희망하는 농업 분야를 보면 46.1%가 논농사를 희망하여 논농사를 희망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으며 32.8%가 밭농사를, 28.4%가 과수원을 희망하였다. 25.8%가 축산을, 11.1%가 하우스 농사를 희망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연령층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과수원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에 비해 밭농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5> 희망 농업 분야

단위: 명(%)

구분		논	밭	과수원	하우스	축산
전체		125 (46.1)	89 (32.8)	77 (28.4)	30 (11.1)	70 (25.8)
연령	20대	90 (46.2)	58 (29.7)	65 (33.3)	21 (10.8)	47 (24.1)
	30대	25 (45.5)	23 (41.8)	10 (18.2)	5 (9.1)	16 (29.1)
	40대 이상	10 (52.6)	8 (42.1)	2 (10.5)	4 (21.1)	5 (26.3)
농가 여부	농가	116 (47.5)	84 (34.4)	69 (28.3)	26 (10.7)	62 (25.4)
	비농가	5 (23.8)	5 (23.8)	7 (33.3)	4 (19.0)	5 (23.8)
농사 경험	있음	106 (48.2)	77 (35.0)	64 (29.1)	22 (10.0)	55 (25.0)
	없음	18 (36.7)	12 (24.5)	12 (24.5)	8 (16.3)	14 (28.6)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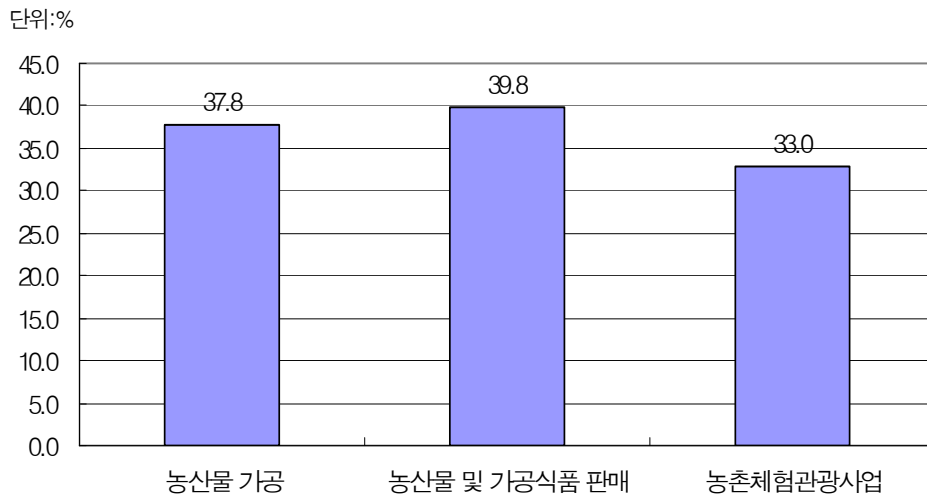
희망하는 농업분야의 구성을 보면, 과수원만 하거나 과수원과 논농사를 함께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논농사와 밭농사를 함께 희망하는 경우가 각각 23.2%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만 하거나 축산과 논농사를 함께 희망하는 경우가 19.2%였다.

<표 Ⅲ-4-26> 희망 농업 분야의 구성

단위: 명(%)

논농사만	30(11.1)
밭농사만	16(5.9)
과수원(+논)	63(23.2)
하우스(+논)	22(8.1)
축산(+논)	52(19.2)
논+밭농사	63(23.2)
밭+과수원또는하우스	6(2.2)
축산+밭농사또는과수원또는하우스	18(6.6)
기타	1(0.4)
계	271(100.0)

농업과 함께 농산물 가공이나 판매, 농촌체험관광 등의 농업관련산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관심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37.8%가 농산물 가공에, 39.8%가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판매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체험관광사업에 관심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도 33.0%로 분야별로 33%-40% 정도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437) 기준임.

<그림 Ⅲ-4-7>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관심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자들과 캄보디아·태국·인도네시아 출신자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농산물 가공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았으며 필리핀 출신자들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에, 일본 출신자들은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았다. 중국 출신자들은 판매나 농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에는 농산물 가공과 판매에 관심이 비교적 높았으며 이에 비해 30-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농업경영 현황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참여 경험에 따라서는 농가 소속 여성결혼이민자, 농업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농산물 가공과 판매에 관심이 비교적 높았으며, 그렇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농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서로 비교되는 양상을 보였다. 경지소유규모 면에서는 5001평 이상의 비교적 넓은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소속 여성결혼이민자는 농산물 가공에 대한 관심은 다소 낮은 반면 판매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산물 가공에 대한 관심은 중간 규모의 경지를 소유한 가구 소속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규모별로는 2001-3000평 정도의 경지를 경영하는 농가 소속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산물 가공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높았으며,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경영규모가 비교적 큰 여성들 사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7>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관심

단위: 명(%)

구분		농산물 가공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	농촌체험 관광사업
출신국가	베트남	103 (41.9)	89 (36.2)	70 (28.5)
	필리핀	25 (31.6)	34 (43.0)	26 (32.9)
	일본	7 (24.1)	11 (37.9)	17 (58.6)
	중국	9 (27.3)	16 (48.5)	17 (51.5)
	캄보 태국 인니	13 (50.0)	11 (42.3)	5 (19.2)
	기타	6 (33.3)	8 (44.4)	8 (44.4)
연령층	20대	120 (41.2)	118 (40.5)	80 (27.5)
	30대	33 (29.5)	44 (39.3)	47 (42.0)
	40대 이상	12 (36.4)	11 (33.3)	17 (51.5)
농가여부	농가	133 (40.7)	136 (41.6)	95 (29.1)
	비농가	27 (26.5)	37 (36.3)	47 (46.1)

<표 Ⅲ-4-27> 농업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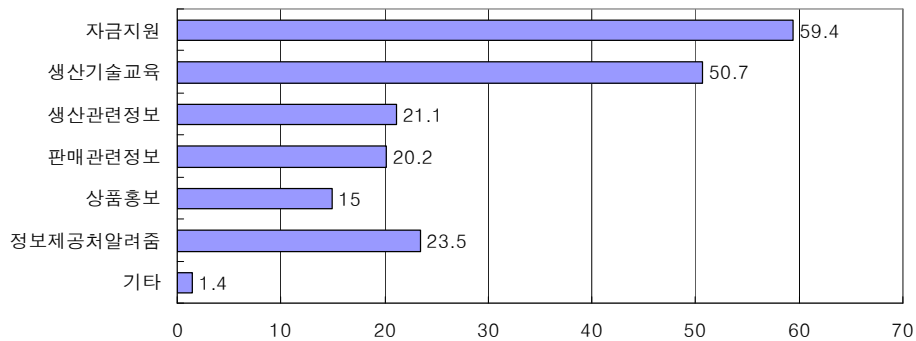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농산물 가공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	농촌체험 관광사업
농사경험	있음	113 (39.8)	122 (43.0)	81 (28.5)
	없음	51 (33.6)	52 (34.2)	63 (41.4)
경지소유 규모	없음	33 (32.7)	40 (39.6)	38 (37.6)
	1000평이하	30 (39.5)	33 (43.4)	21 (27.6)
	1001~2000평이하	28 (40.0)	25 (35.7)	23 (32.9)
	2001~3000평이하	21 (43.8)	19 (39.6)	11 (22.9)
	3001~5000평이하	22 (45.8)	15 (31.3)	16 (33.3)
	5001평이상	15 (31.9)	26 (55.3)	14 (29.8)
농업경영 규모	1000평이하	21 (42.0)	19 (38.0)	11 (22.0)
	1001~2000평이하	22 (41.5)	20 (37.7)	17 (32.1)
	2001~3000평이하	21 (51.2)	18 (43.9)	10 (24.4)
	3001~5000평이하	13 (29.5)	19 (43.2)	14 (31.8)
	5001평이상	31 (46.3)	32 (47.8)	16 (23.9)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 기준임.

농업관련산업에 관심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업관련산업과 관련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살펴보면,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59.4%, 상품생산기술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50.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23.5%였으며 상품생산 관련 정보, 판매 관련 정보 제공을 원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각각 21.2%, 20.2%로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 정보 접근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426) 기준임.

<그림 Ⅲ-4-8> 농업관련산업 지원 요구

관심분야별로 지원요구를 살펴보면, 농산물 가공에 관심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상품제조기술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판매에 관심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서는 사업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와 함께 판매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농촌체험관광사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금지원과 함께 사업에 대한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자 하는 요구도 컸다.

<표 III-4-28> 관심분야별 지원요구

단위: 명(%)

구분	사업자금 지원	상품제조 기술교육	상품생산관련 정보제공	상품판매관련 정보제공	상품홍보	지원·정보 제공처알려줌	기타
농산물 가공	90 (55.6)	99 (61.1)	38 (23.5)	25 (15.4)	16 (9.9)	37 (22.8)	5 (3.1)
농산물,가공 식품 판매	108 (62.4)	82 (47.4)	32 (18.5)	45 (26.0)	29 (16.8)	39 (22.5)	0 (0.0)
농촌체험 관광사업	83 (60.6)	59 (43.1)	28 (20.4)	25 (18.2)	28 (20.4)	36 (26.3)	2 (1.5)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 기준임.

농업, 농촌과 관련한 각종 교육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요구를 살펴보면, 농산물 및 관련상품 시장 정보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는 이들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판매를 위한 교육(37.3%), 농산물 관련 정보화 교육(33.1%) 등으로 농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작물 재배기술교육(32.8%)과 가공기술교육(31.4%) 등 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9> 농업·농촌관련 교육 요구

단위: 명(%)

전망있는 판매 식품 정보	222 (46.8)
농작물 재배기술 교육	153 (32.3)
농기계 운전 교육	65 (13.7)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149 (31.4)
식품 판매를 위한 교육	177 (37.3)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 능력 교육	157 (33.1)
가공업체 운영 교육	65 (13.7)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교육	82 (17.3)
농촌지도자 교육	62 (13.1)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474) 기준임.

4)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서비스 요구

(1) 사전 정보 접근

본 조사는 2007년 상반기에 전국 30개 지역에서 시행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사대상자에게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해당 시·군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 선정하였는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주요 경로를 보면 행정기관을 통해 사업에 대해 알게 된 경우가 46.9%로 가장 많고 남편과 그 외의 가족을 통해 정보에 접하게 된 경우가 27.2%,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가 15.3%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처럼 시·군 행정기관이나 마을 이장 또는 부녀회장 등 공식적 행정전달체계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주요한 정보 전달체계로 작동하였으며 이외에 정보 제공에 있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30> 주요 정보 전달 통로

단위: 명(%)

이장님 및 부녀회장님이 알려줌	85 (15.3)
행정기관이 알려줌	261 (46.9)
남편가족이 알려줌	151 (27.2)
이웃사람이 알려줌	28 (5.0)
같은 출신국가의 친구/모임을 통해	48 (8.6)
교육에 대한 홍보를 보고	5 (0.9)
기타	20 (3.6)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556) 기준임.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활동 참여 결정에 있어 가족들의 협조적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서 조사대상자 가운데 69.7%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가를 권하며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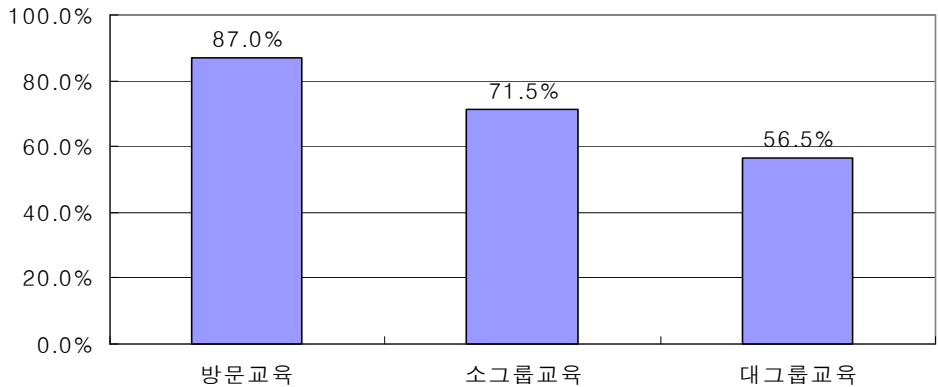
29.1%는 여성이 뜻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대부분이 사업 참여를 지지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족들이 사업 참여를 반대한 경우는 3.0%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이 이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여성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석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업 참여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도를 유추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 해당 사업 뿐 아니라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가족들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재확인할 수 있다.

<표 III-4-31> 교육 참가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

단위: 명(%)

적극적으로 참가 권함	387 (67.9)
원하면 참가하라고 함	166 (29.1)
반대함	17 (3.0)
계	570 (100.0)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주기적인 가구 방문 교육과 함께 집합교육을 병행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교육·활동 방식 내지 여성결혼이민자의 참여 방식에 대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교육 방식별로 사전 인식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방문교육에 대해서는 87.0%가 교육 참여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역단위의 소그룹 교육에 대해서는 71.5%만이 알고 있었으며 보다 큰 지역을 단위로 한 일종의 집합교육에 대해서는 56.5%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육 추진방식에 대해 교육방식별로 많게는 50% 가까이 적게는 13%의 참여자가 정확한 교육방식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추진방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보가 전달된 경우에도 주로 가구방문교육 중심으로 정보가 전달되었을 뿐, 집합교육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4-9> 교육에 대한 사전 인식도

(2) 교육·활동 내용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 생활, 문화적응, 지역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육과 지원서비스, 각종 활동 등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했던 분야를 보면, 한국어 교육에 참여했던 이들이 98.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한국요리 강습(52.0%), 가족관계 상담(52.4%), 생활상담(52.2%)의 순이었다. 이밖에 자녀양육지원서비스(41.5%), 지역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내(36.8%)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영농기술을 중심으로 한 농업교육에 참여한 여성은 0.6%로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군 담당자나 서비스 제공자(도우미) 조사결과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시·군 담당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농업관련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제공자(도우미) 조사결과에서도 18.7%가 농업관련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에는 농업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교육 기회 자체가 지극히 제한되었을 뿐 더러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기억할 만한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데에도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4-3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참여 분야

단위: 명(%)

한국어 교육	488 (98.8)
가족관계 상담	259 (52.4)
생활상담	258 (52.2)
부부교실 가족캠프	88 (17.8)
자녀양육지원	205 (41.5)
임신출산교육	103 (20.9)
지역생활안내	182 (36.8)
전통문화교육	144 (29.1)
한국요리 강습	257 (52.0)
각국의 음식 풍습 소개	32 (6.5)
취미교실	81 (16.4)
농업교육	3 (0.6)
정보화교육	35 (7.1)
기타	11 (2.2)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494) 기준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된 다양한 교육과 지원서비스, 활동 중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었던 분야를 보면, 한국어 교육에 주로 관심을 두었던 여성결혼이민자가 90.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한국요리 강습(40.8%), 가족교육(23.0%),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23.0%) 순이었다. 이밖에 농업 및 농촌과 관련된 교육에 주로 관심이 있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4.5%로 다른 분야의 교육이나 지원 서비스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 사업에서 농업교육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극소수인 것으로 보아 그나마도 충족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Ⅲ. 20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점검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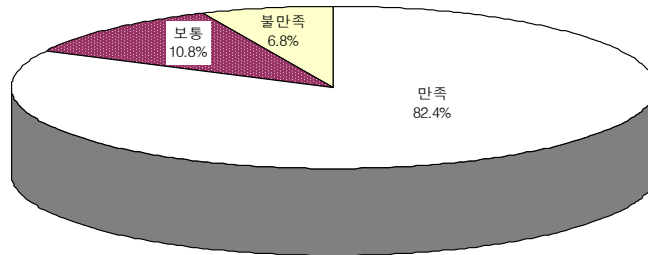
<표 Ⅲ-4-3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중 주요 관심 서비스
단위: 명(%)

구분	한국어 교육	가족관계 교육	자녀양육 교육	한국요리 강습	농업 농촌교육	문화예술 교육	기타	
전체	522 (90.9)	132 (23.0)	132 (23.0)	234 (40.8)	26 (4.5)	57 (9.9)	5 (0.9)	
출신 국가	베트남	304 (91.3)	76 (22.8)	79 (23.7)	128 (38.4)	18 (5.4)	35 (10.5)	2 (0.6)
	필리핀	97 (91.5)	30 (28.3)	15 (14.2)	44 (41.5)	7 (6.6)	8 (7.5)	1 (0.9)
	일본	32 (91.4)	8 (22.9)	9 (25.7)	18 (51.4)	0 (0.0)	2 (5.7)	1 (2.9)
	중국	32 (82.1)	8 (20.5)	11 (28.2)	17 (43.6)	0 (0.0)	6 (15.4)	1 (2.6)
	캄보 태국 인니	28 (93.3)	4 (13.3)	10 (33.3)	12 (40.0)	1 (3.3)	4 (13.3)	0 (0.0)
	기타	25 (100.0)	4 (16.0)	6 (24.0)	13 (52.0)	0 (0.0)	1 (4.0)	0 (0.0)
연령	20대	348 (91.1)	86 (22.5)	85 (22.3)	162 (42.4)	18 (4.7)	35 (9.2)	3 (0.8)
	30대	134 (90.5)	35 (23.6)	39 (26.4)	53 (35.8)	7 (4.7)	17 (11.5)	0 (0.0)
	40대 이상	38 (90.5)	11 (26.2)	8 (19.0)	18 (42.9)	0 (0.0)	5 (11.9)	2 (4.8)
교육 수준	무학	64 (86.5)	19 (25.7)	17 (23.0)	26 (35.1)	8 (10.8)	5 (6.8)	0 (0.0)
	초졸	99 (93.4)	16 (15.1)	30 (28.3)	42 (39.6)	1 (0.9)	17 (16.0)	1 (0.9)
	중졸	130 (92.2)	32 (22.7)	36 (25.5)	53 (37.6)	9 (6.4)	12 (8.5)	1 (0.7)
	고졸	144 (89.4)	38 (23.6)	35 (21.7)	73 (45.3)	5 (3.1)	15 (9.3)	1 (0.6)
	대졸이상	78 (91.8)	26 (30.6)	13 (15.3)	37 (43.5)	3 (3.5)	8 (9.4)	2 (2.4)
거주 기간	1년	107 (94.7)	19 (16.8)	15 (13.3)	55 (48.7)	7 (6.2)	13 (11.5)	0 (0.0)
	2년	173 (89.6)	51 (26.4)	51 (26.4)	71 (36.8)	12 (6.2)	14 (7.3)	1 (0.5)
	3년	83 (94.3)	20 (22.7)	22 (25.0)	34 (38.6)	2 (2.3)	12 (13.6)	1 (1.1)
	4년	48 (90.6)	8 (15.1)	12 (22.6)	22 (41.5)	2 (3.8)	9 (17.0)	0 (0.0)
	5~9년	90 (89.1)	29 (28.7)	28 (27.7)	38 (37.6)	3 (3.0)	6 (5.9)	0 (0.0)
	10년 이상	19 (79.2)	5 (20.8)	4 (16.7)	13 (54.2)	0 (0.0)	3 (12.5)	2 (8.3)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 기준임.

(3) 만족도 및 교육 효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 중 82.4%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참여자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0.8%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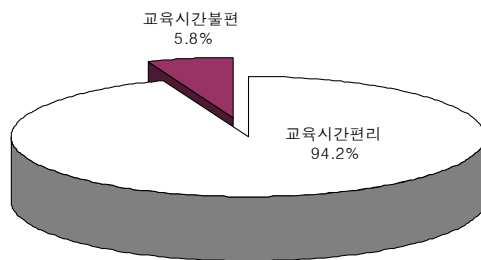


<그림 III-4-10>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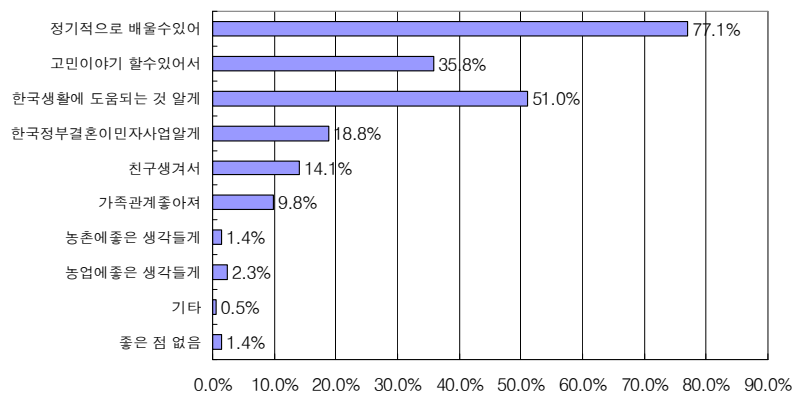
<표 III-4-34>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만족도			계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39 (6.8)	62 (10.8)	472 (82.4)	573 (100.0)	
출신국가	베트남	19 (5.7)	43 (12.9)	271 (81.4)	333 (100.0)
	필리핀	9 (8.6)	5 (4.8)	91 (86.7)	105 (100.0)
	일본	5 (14.3)	4 (11.4)	26 (74.3)	35 (100.0)
	중국	5 (12.8)	4 (10.3)	30 (76.9)	39 (100.0)
	캄보 태국 인니	0 (0.0)	3 (10.0)	27 (90.0)	30 (100.0)
	기타	0 (0.0)	3 (12.0)	22 (88.0)	25 (100.0)
연령	20대	23 (6.0)	43 (11.3)	315 (82.7)	381 (100.0)
	30대	11 (7.5)	13 (8.8)	123 (83.7)	147 (100.0)
	40대 이상	4 (9.5)	6 (14.3)	32 (76.2)	42 (100.0)
교육수준	무학	7 (9.6)	10 (13.7)	56 (76.7)	73 (100.0)
	초졸	6 (5.7)	10 (9.5)	89 (84.8)	105 (100.0)
	중졸	8 (5.7)	17 (12.1)	116 (82.3)	141 (100.0)
	고졸	10 (6.2)	19 (11.8)	132 (82.0)	161 (100.0)
	대졸이상	7 (8.3)	6 (7.1)	71 (84.5)	84 (100.0)
거주기간	1년	8 (7.1)	9 (8.0)	95 (84.8)	112 (100.0)
	2년	11 (5.7)	28 (14.6)	153 (79.7)	192 (100.0)
	3년	7 (8.0)	7 (8.0)	74 (84.1)	88 (100.0)
	4년	6 (11.3)	5 (9.4)	42 (79.2)	53 (100.0)
	5~9년	5 (5.0)	9 (8.9)	87 (86.1)	101 (100.0)
	10년 이상	2 (8.3)	4 (16.7)	18 (75.0)	24 (100.0)

만족 내지 불만족 사항을 교육방식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개별방문교육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개별 방문교육이 편리한 시간대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4.2%가 교육이 편리한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응답해 교육시간에 있어서는 대부분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교육의 장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들이 77.1%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는 점들을 알게 된 것(51.0%),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다(35.8%)는 점도 중요한 장점으로 꼽혔다. 이밖에 한국정부가 결혼이민자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알게된 점, 친구가 생긴 점 등을 이번 사업의 좋은 점으로 지적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교육기회인 동시에 정책이나 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서도 의미가 있었으며 친구이자 상담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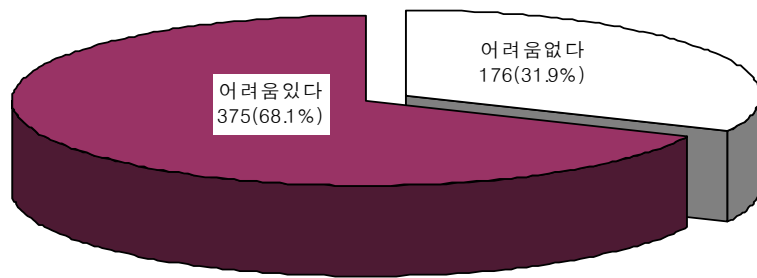
<그림 III-4-11> 방문교육시간의 편리성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573) 기준임.

<그림 III-4-12> 방문교육의 장점

반면, 개별방문교육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중 31.9%가 어려움이 없다고 한데 비해 68.1%가 다소간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다. 개별방문교육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집에서 교육을 받는 만큼 가사나 자녀 양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들이 58.1%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교육 내용이나 교재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여성도 34.1%, 다른 일로 바빠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다는 여성이 33.3%였다. 이외에 임신 등으로 몸이 불편해 교육을 받기 어려웠다는 경우, 강사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다는 여성들도 20% 이상 있었다. 이처럼 개별 방문교육이 전반적으로 장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방문교육의 특성 자체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측면도 있다. 즉, 여성들이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교육에 몰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일대일 대면관계를 통해 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내용이나 교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대화를 통해 함께 이해를 높여갈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향후 개별 방문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본격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4-13> 방문교육의 어려움 여부

<표 Ⅲ-4-35> 방문교육의 어려움

단위: 명(%)

모르는 사람의 방문 불편함	30 (8.0)
교육 내용 및 교재 이해 어려움	128 (34.1)
교육동안 가족의 간섭으로 방해 받음	34 (9.1)
가사 및 양육으로 집중 어려움	218 (58.1)
다른 일로 바빠 시간 맞추기 어려움	125 (33.3)
몸이 불편해서	98 (26.1)
강사와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76 (20.3)
기타	25 (6.7)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375) 기준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서는 개별방문교육과 함께 비방문 집합 교육도 함께 시행되었는데, 비방문교육의 경우에는 주요한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 자녀와 함께 다니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가족들이 집이나 마을 밖에서 교육이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도 집합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여러 장애요인으로 개별방문교육 이외의 집합 교육에는 참여하지 못한 여성들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별방문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가 있지만, 이에 비해 비집합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집합 교육을 사업의 일부로 포함시킨 점은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비집합 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4-36> 비방문교육·활동 참여 장애요인

단위: 명(%)

참가하지 못함	110 (22.7)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음	135 (27.9)
교통편	274 (56.6)
아이들 때문에	252 (52.1)
교육이 너무 많아 번거로움	30 (6.2)
교육이 별로 유익하지 않음	17 (3.5)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484) 기준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과 교육을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한국어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한국어 구사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수준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 조사대상자들의 사업 참여 이전 한국어 수준을 보면, 14.9%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했으며, 58.9%는 간단한 대화만 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화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던 이들이 22.1%, 대화와 쓰기 모두를 잘할 수 있었던 여성이 3.9%로 교육 참여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이들도 상당수 포함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어 구사 수준 기준이 충실히 준수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일선에서 활용할 만한 한국어 구사 수준 점검 도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어 구사 수준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만큼, 한국어 구사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신국가별로는 일본 출신자,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층, 거주기간이 10년 이상된 이들 가운데 교육 참여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이들이 많아 향후에는 참가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대나 한국체류기간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4-37> 교육참여 이전 한국어 수준

단위: 명(%)

구분	교육전 한국어 수준				계	
	전혀 못함	간단한 대화만	대화는 자유자재로	대화와 쓰기 모두 잘함		
전체	85 (14.9)	336 (58.9)	126 (22.1)	22 (3.9)	571 (100.0)	
출신 국가	베트남	59 (17.8)	195 (58.7)	65 (19.6)	13 (3.9)	332 (100.0)
	필리핀	11 (10.4)	68 (64.2)	23 (21.7)	4 (3.8)	106 (100.0)
	일본	0 (0.0)	17 (48.6)	18 (51.4)	0 (0.0)	35 (100.0)
	중국	9 (23.7)	20 (52.6)	6 (15.8)	3 (7.9)	38 (100.0)
	캄보 태국 인니	5 (16.7)	15 (50.0)	9 (30.0)	1 (3.3)	30 (100.0)
	기타	0 (0.0)	20 (80.0)	4 (16.0)	1 (4.0)	25 (100.0)
연령	20대	65 (17.2)	224 (59.3)	71 (18.8)	18 (4.8)	378 (100.0)
	30대	15 (10.1)	88 (59.5)	41 (27.7)	4 (2.7)	148 (100.0)
	40대 이상	4 (9.5)	22 (52.4)	16 (38.1)	0 (0.0)	42 (100.0)
거주 기간	1년	33 (29.5)	65 (58.0)	9 (8.0)	5 (4.5)	112 (100.0)
	2년	34 (17.8)	118 (61.8)	31 (16.2)	8 (4.2)	191 (100.0)
	3년	11 (12.5)	54 (61.4)	20 (22.7)	3 (3.4)	88 (100.0)
	4년	4 (7.7)	26 (50.0)	20 (38.5)	2 (3.8)	52 (100.0)
	5~9년	2 (2.0)	62 (61.4)	33 (32.7)	4 (4.0)	101 (100.0)
	10년 이상	1 (4.2)	8 (33.3)	15 (62.5)	0 (0.0)	24 (100.0)

교육참여 이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준을 보면, 전혀 못하는 여성이 1.2%, 간단한 대화만 할 수 있는 경우는 27.4%로 교육참여 이전과 비교해 전혀 못하거나 간단한 대화만 할 수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화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경우가 58.3%, 대화와 쓰기 모두 잘하는 여성은 14.3%로 교육참여 이전에 비해 어느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여성이 크게 늘어나 한국어 교육의 면에서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참여자들의 주관적이고 인상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뿐, 해당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III-4-38> 교육참여 이후 한국어 수준

단위: 명(%)

구분	교육후 한국어 수준				계	
	전혀 못함	간단한 대화만	대화는 자유자재로	대화와 쓰기 모두 잘함		
전체	7 (1.2)	155 (27.4)	323 (58.3)	81 (14.3)	566 (100.0)	
출신 국가	베트남	6 (1.8)	92 (28.0)	182 (55.5)	48 (14.6)	328 (100.0)
	필리핀	1 (1.0)	33 (31.7)	61 (58.7)	9 (8.7)	104 (100.0)
	일본	0 (0.0)	6 (17.1)	25 (71.4)	4 (11.4)	35 (100.0)
	중국	0 (0.0)	11 (28.2)	21 (53.8)	7 (17.9)	39 (100.0)
	캄보 태국 인니	0 (0.0)	8 (26.7)	15 (50.0)	7 (23.3)	30 (100.0)
	기타	0 (0.0)	4 (16.7)	15 (62.5)	5 (20.8)	24 (100.0)
연령	20대	5 (1.3)	107 (28.4)	205 (54.4)	60 (15.9)	377 (100.0)
	30대	2 (1.4)	37 (25.7)	89 (61.8)	16 (11.1)	144 (100.0)
	40대 이상	0 (0.0)	10 (23.8)	27 (64.3)	5 (11.9)	42 (100.0)
거주 기간	1년	3 (2.7)	36 (32.4)	57 (51.4)	15 (13.5)	111 (100.0)
	2년	3 (1.6)	64 (33.9)	102 (54.0)	20 (10.6)	189 (100.0)
	3년	0 (0.0)	21 (23.9)	52 (59.1)	15 (17.0)	88 (100.0)
	4년	1 (1.9)	11 (21.2)	27 (51.9)	13 (25.0)	52 (100.0)
	5~9년	0 (0.0)	21 (21.2)	64 (64.6)	14 (14.1)	99 (100.0)
	10년 이상	0 (0.0)	2 (8.3)	18 (75.0)	4 (16.7)	24 (100.0)

(4) 일반적 교육 참여 경험과 요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개별방문교육을 통해 일반적 집합 교육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데 커다란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군담당자나 마을 단위의 이장 등에게 기존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참여와 이를 위한 가족들의 협조를 독려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본연의 목적이 시행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실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07년 시행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이외의 교육 참여 경험을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51.0%가 교육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참여자 중 절반 정도가 그 외의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서비스 소외집단에 대한 특별한 조치로서의 의의는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에는 서비스 소외집단의 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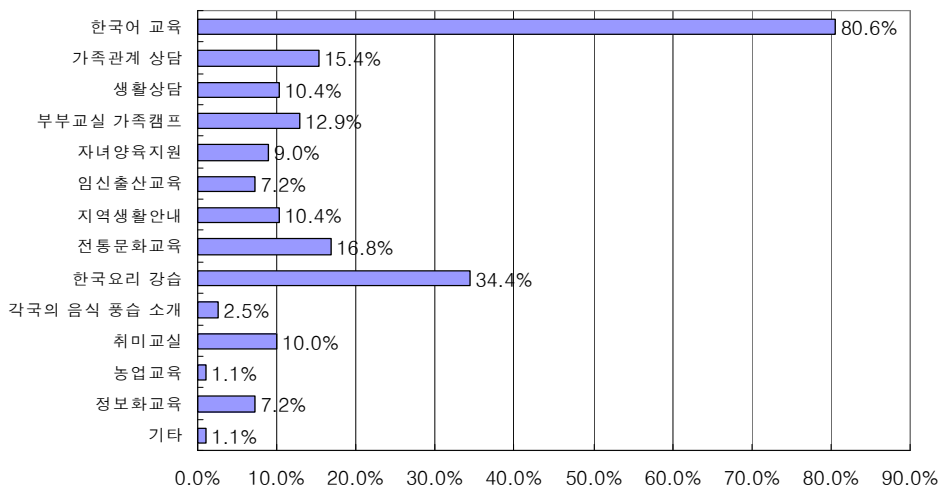
<표 III-4-39> 일반적 교육참여 경험

단위: 명(%)

구분		교육 참여 경험		계
		있다	없다	
전체		289 (51.0)	273 (49.0)	567 (100.0)
출신국가	베트남	171(52.0)	158(48.0)	329 (100.0)
	필리핀	63(60.6)	41(39.4)	104 (100.0)
	일본	18 (52.9)	16 (47.1)	34 (100.0)
	중국	15 (38.5)	24 (61.5)	39 (100.0)
	캄보 태국 인니	15 (50.0)	15 (50.0)	30 (100.0)
	기타	6 (24.0)	19 (76.0)	25 (100.0)
연령	20대	199 (52.8)	178 (47.2)	377 (100.0)
	30대	66 (45.2)	80 (54.8)	146 (100.0)
	40대 이상	21 (51.2)	20 (48.8)	41 (100.0)
교육수준	무학	38 (52.8)	34 (47.2)	72 (100.0)
	초졸	53 (50.0)	53 (50.0)	106 (100.0)
	중졸	62 (45.3)	75 (54.7)	137 (100.0)
	고졸	82 (51.3)	78 (48.8)	160 (100.0)
	대졸이상	46 (55.4)	37 (44.6)	83 (100.0)
거주기간	1년	58 (52.3)	53 (47.7)	111 (100.0)
	2년	95 (49.7)	96(50.3)	191 (100.0)
	3년	48 (54.5)	40 (45.5)	88 (100.0)
	4년	25 (49.0)	26 (51.0)	51 (100.0)
	5~9년	50 (50.0)	50 (50.0)	100 (100.0)
	10년 이상	11 (47.8)	12 (52.2)	23 (100.0)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이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한 교육을 보면, 한국어 교육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요리 강습에 참여했던 이들이 많았다. 이밖에 가족관계상담이나 부부교실이나 가족캠프, 전통문화교육 등에 참여한 여성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업관련 교육에 참여해본 여성결혼이민자는 극소수로 다른 교육에 비해 농업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서 조차 농업관련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촌, 농업에 대한 비전을 형성하고 관련 인적자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전무했던 것이다. 농촌지역

에 특화된 사업이자 농업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향부터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279) 기준임.

<그림 III-4-14> 그 밖의 참여 교육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이외의 교육에 참여해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불만사항을 보면, 내용이 매번 비슷하다는 점, 교육기회는 있지만 정작 필요한 교육은 찾기 힘들다는 점, 교육내용이나 교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들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교육기회는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정작 필요한 프로그램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본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초, 중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 등 기본적인 교육을 거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점에 대한 불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응단계와 요구에 특화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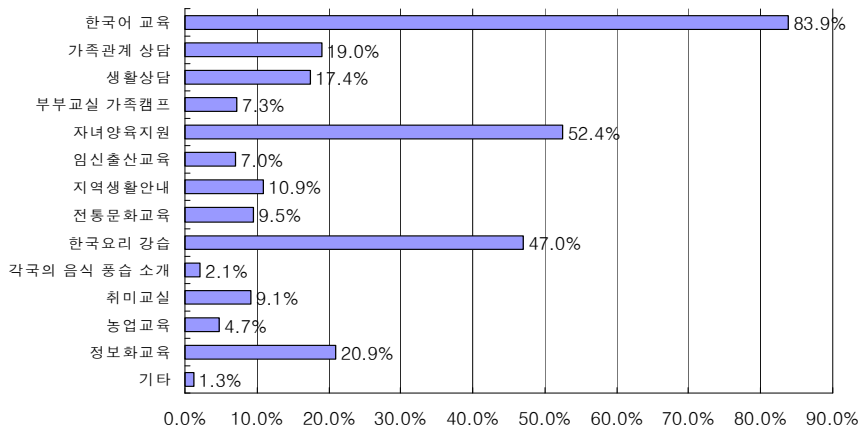
<표 Ⅲ-4-40> 교육 일반에 대한 불만사항

단위: 명(%)

아쉬운점 없음	156 (58.2)
내용이 매번 비슷	35 (13.1)
정말 필요한 교육 찾기 어려움	34 (12.7)
교육내용이나 교재 이해 어려움	50 (18.7)
강사와 의사소통 어려움	24 (9.0)
기타	15 (5.6)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268) 기준임.

앞으로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요구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한국요리 강습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농업교육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중 4.7%가 요구하고 있어 다른 교육에 비해 요구 차체가 제한되어 있으나 현재의 서비스는 그마저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농촌거주계획이나 농업 계획,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관심 등을 고려할 때, 농업, 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농업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농업, 농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전망과 비전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가 소속 여성결혼이민자, 농업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농업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559) 기준임.

<그림 Ⅲ-4-15> 교육 요구

<표 III-4-41> 교육 요구

단위: 명(%)

구분	한국어 교육	가족 관계 상담	생활 상담	부부 교실 가족 캠프	자녀 양육 지원	임신 출산 교실	지역 생활 안내	전통 문화 교육	한국 요리 강습	각국 음식 풍습 소개	취미 교실	농업 교육	정보화 교육	기타	
전체	469 (83.9)	106 (19.0)	97 (17.4)	41 (7.3)	293 (52.4)	39 (7.0)	61 (10.9)	53 (9.5)	263 (47.0)	12 (2.1)	51 (9.1)	26 (4.7)	117 (20.9)	7 (1.3)	
출신 국가	베트남	280 (87.2)	67 (20.9)	60 (18.7)	21 (6.5)	173 (53.9)	29 (9.0)	38 (11.8)	23 (7.2)	139 (43.3)	8 (2.5)	24 (7.5)	18 (5.6)	50 (15.6)	3 (0.9)
	필리핀	91 (87.5)	24 (23.1)	18 (17.3)	11 (10.6)	40 (38.5)	1 (1.0)	8 (7.7)	16 (15.4)	50 (48.1)	0 (0.0)	10 (9.6)	4 (3.8)	29 (27.9)	1 (1.0)
	일본	27 (77.1)	0 (0.0)	5 (14.3)	0 (0.0)	24 (68.6)	1 (2.9)	0 (0.0)	7 (20.0)	23 (65.7)	1 (2.9)	4 (11.4)	0 (0.0)	12 (34.3)	0 (0.0)
	중국	25 (65.8)	4 (10.5)	5 (13.2)	2 (5.3)	22 (57.9)	0 (0.0)	5 (13.2)	4 (10.5)	15 (39.5)	2 (5.3)	9 (23.7)	2 (5.3)	15 (39.5)	3 (7.9)
	캄보 태국 인니	26 (86.7)	3 (10.0)	5 (16.7)	2 (6.7)	19 (63.3)	3 (10.0)	6 (20.0)	1 (3.3)	16 (53.3)	1 (3.3)	3 (10.0)	1 (3.3)	4 (13.3)	0 (0.0)
	기타	18 (72.0)	4 (16.0)	4 (16.0)	4 (16.0)	12 (48.0)	2 (8.0)	4 (16.0)	2 (8.0)	16 (64.0)	1 (4.0)	1 (4.0)	6 (24.0)	0 (0.0)	0 (0.0)
연령	20대	311 (83.8)	78 (21.0)	65 (17.5)	29 (7.8)	191 (51.5)	31 (8.4)	41 (11.1)	25 (6.7)	179 (48.2)	11 (3.0)	34 (9.2)	18 (4.9)	63 (17.0)	6 (1.6)
	30대	123 (84.8)	24 (16.6)	25 (17.2)	10 (6.9)	80 (55.2)	6 (4.1)	17 (11.7)	18 (12.4)	63 (43.4)	1 (0.7)	13 (9.0)	6 (4.1)	41 (28.3)	1 (0.7)
	40대 이상	33 (80.5)	4 (9.8)	6 (14.6)	1 (2.4)	22 (53.7)	1 (2.4)	3 (7.3)	10 (24.4)	20 (48.8)	0 (0.0)	4 (9.8)	2 (4.9)	13 (31.7)	0 (0.0)
거주 기간	1년	96 (88.1)	23 (21.1)	24 (22.0)	7 (6.4)	49 (45.0)	14 (12.8)	16 (14.7)	7 (6.4)	48 (44.0)	3 (2.8)	11 (10.1)	4 (3.7)	18 (16.5)	1 (0.9)
	2년	165 (88.7)	38 (20.4)	31 (16.7)	16 (8.6)	103 (55.4)	15 (8.1)	20 (10.8)	15 (8.1)	85 (45.7)	5 (2.7)	16 (8.6)	7 (3.8)	27 (14.5)	1 (0.5)
	3년	72 (80.0)	10 (20.0)	6 (12.0)	7 (14.0)	25 (50.0)	6 (6.8)	12 (13.6)	7 (8.0)	47 (53.4)	3 (3.4)	7 (8.0)	6 (6.8)	19 (21.6)	4 (4.5)
	4년	40 (80.0)	10 (20.0)	6 (12.0)	7 (14.0)	25 (50.0)	0 (0.0)	5 (10.0)	6 (12.0)	22 (44.0)	1 (2.0)	4 (8.0)	2 (4.0)	16 (32.0)	0 (0.0)
	5~9년	78 (78.0)	16 (16.0)	18 (18.0)	7 (7.0)	54 (54.0)	1 (1.0)	5 (5.0)	15 (15.0)	50 (50.0)	0 (0.0)	11 (11.0)	5 (5.0)	29 (29.0)	0 (0.0)
	10년 이상	16 (66.7)	2 (8.3)	3 (12.5)	0 (0.0)	20 (83.3)	2 (8.3)	3 (12.5)	3 (12.5)	9 (37.5)	0 (0.0)	2 (8.3)	2 (8.3)	8 (33.3)	1 (4.2)
농가 여부	농가	336 (83.6)	76 (18.9)	70 (17.4)	31 (7.7)	205 (51.0)	30 (7.5)	41 (10.2)	38 (9.5)	186 (46.3)	9 (2.2)	37 (9.2)	25 (6.2)	83 (20.6)	7 (1.7)
	비농가	124 (34.9)	29 (19.9)	24 (16.4)	10 (6.8)	82 (56.2)	8 (5.5)	19 (13.0)	15 (10.3)	70 (47.9)	3 (2.1)	12 (8.2)	1 (0.7)	33 (22.6)	0 (0.0)
농사 경험	있음	291 (82.7)	67 (19.0)	68 (19.3)	27 (7.7)	176 (50.0)	26 (7.4)	35 (9.9)	34 (9.7)	165 (46.9)	8 (2.3)	32 (9.1)	24 (6.8)	66 (18.8)	6 (1.7)
	없음	175 (85.8)	39 (19.1)	28 (13.7)	14 (6.9)	115 (56.4)	13 (6.4)	26 (12.7)	19 (9.3)	98 (48.0)	4 (2.0)	18 (8.8)	2 (1.0)	51 (25.0)	1 (0.5)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 기준임.

교육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해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에 참가하는 동안 보육 서비스 제공, 교육장소까지의 교통편 제공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요구와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육내용을 모국어로 통역해주거나 쉬운 한국말로 진행하는 등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언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42> 교육 참여를 위한 지원 요구

단위: 명(%)

가까운 곳에서 교육	271 (48.5)
교통편 제공	215 (38.5)
교육받는 동안 아이 돌봐줌	229 (41.0)
쉬운 한국말로 교육	117 (20.9)
모국어로 통역	122 (21.8)
가족들의 이해	63 (11.3)
교육내용에 대해 미리 상세한 설명	50 (8.9)

주: 복수응답으로 사례수(559) 기준임.

IV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국내외 사례

- | | |
|--------------------|-----|
| 1. 국내 사례 | 137 |
| 2. 해외 사례: 일본 야마가타현 | 143 |

1. 국내 사례

1)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영농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점들과 농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결혼이민자 10명을 면담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연령에서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그리고 거주기간도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1년까지 다양한 특성을 보였다.

<표 IV-1-1> 인터뷰 대상자

번호	나이	출신국적	농사품목	거주지	한국거주기간
사례1	28	베트남	고추, 축산(소)	청양	2년
사례2	24	베트남	과수(수박, 배), 벼농사	청양	5년
사례3	23	베트남	고추, 벼농사	청양	2년2개월
사례4	33	필리핀	고추, 벼농사	청양	5년4개월
사례5	35	중국	과수(배)	아산	11년
사례6	38	필리핀	과수(복숭아), 밭농사	아산	4년6개월
사례7	24	베트남	벼농사, 양계	아산	4년
사례8	35	필리핀	과수(사과), 오미자, 배추	장수	8년
사례9	25	캄보디아	하우스(토마토, 쌈배추)	장수	2년3개월
사례10	38	필리핀	벼농사, 옥수수	장수	7년

이들의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사례5>, <사례7>, <사례9>, <사례10>을 제외한 6명은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여성들이 자녀양육과 함께 시부모 부양이나 병 간호를 맡고 있었다. 또한 <사례2>와 <사례7> 여성은 남편의 전처가 낳은 자녀와 같이 살고 있었다. 본인이 낳은 자녀 수는 <사례3>의 여성만 현재 없으며(현재 임신중), <사례1>, <사례9> 여성이 1명(현재 임신중), <사례8> 여성이 5명, 나머지 여성들은 모두 2명이었다. 인터뷰 대상자인 여성들은 거의 전적으로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시부모 부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다.

한국에 오기 전 까지 종사했던 일은 대부분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을 하였으며, 장사를 하거나 가사도우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했던 여성들 중 가장 학력이 높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례10> 여성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를 하였다. 모국에서의 거주 지역은 대부분 도시 근교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었으며, 부모가 농사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은 농사일의 경험이 많지 않았다. <사례2>, <사례8>, <사례9> 여성은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바쁠 때 조금씩 거들어 주는 경험이 있었으며, <사례4> 여성은 본인이 토마토 농장에서 1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여성들은 농사일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볼 때, 대부분 한국인 친구나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이웃이 거의 없고, 있는 경우에도 친척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거나 정보를 얻는 통로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나 상담소, 그리고 모국 출신의 모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업종사 현황

(1) 농업노동

현재 이들이 하고 있는 농사일은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 주종목은 있지만 하우스, 과수, 논, 밭농사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사일을 한꺼번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농사일의 특성상 시기를 맞추어 진행해야 하므로 계절적으로 겨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농사일에 바쁘다.

과수 농사의 경우 순을 따고 솎거나 봉지를 씌우는 일, 과수 나무를 고정시키는 일, 수확하여 포장하는 일 등을 하고 있으며, 밭농사의 경우 풀을 뽑거나 약주는 일, 물을 주고, 수확하는 일 등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례7> 여성은 계란을 선별하고 닦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주된 농사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고추, 무, 마늘, 배추 등 조그만 규모의 밭농사를 하고 있어서 밭농사일도 겸해서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농사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왔지만, 남편과

시부모의 가족이 전업농인 관계로 한국에 온 후 바로 농사일을 시작하였으며 농사일은 남편이나 시부모로부터 배웠다. 초기에는 한국의 기후나 농촌의 생활패턴에 익숙하지 않아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대체로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의 여성들은 한국의 겨울 기후에 적응하기가 힘들어했으며, 여름에도 농사일을 하기에는 너무 덥고 힘들다고 말한다. 고추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례1>과 <사례2> 여성의 경우 하우스 농사일이 너무 덥고 견디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영농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은 매일 정해져 있지 않지만,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12시간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시부모 부양이나 자녀를 돌보고 가사일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매일을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해진 시간 없이 수시로 틈만 나면 하우스나 밭에 나가 농사일을 하며, 시부모의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집에 와서 가사일을 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3>과 <사례6> 여성은 시어머니의 몸이 불편하고, <사례4> 여성은 시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여, 농사일을 하면서 동시에 시부모를 돌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농사일 외에도 남의 집 농사일을 거들어 주고 돈을 받기도 한다. 품파는 일을 하는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이다. <사례2>의 여성은 여름 동안 여름 동안 남의 집 배 농사 일을 하고 월 40~50만원의 수입을 얻으며, <사례5>의 여성은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여 일당 15만을 벌여 연간 150~200만원 수입을 번다. <사례6>의 여성 또한 남의 집 배 과수원에서 수확과 선별하는 일을 하여 하루 일당 2만5천원씩 받고 연간 1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그러나 <사례8>의 여성처럼 본인의 농사일이 너무 과중하여 농사품을 팔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인터뷰 대상자인 이 여성들은 대부분 1차적인 작물재배를 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이나 기타 농업과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단, <사례5>의 여성만 동네 여성들에게 고추장을 담그는 법을 배워서 본인이 고추장도 직접 담궈서 먹는다고 한다.

(2) 경영 참여 정도

현재 부부단위 농가의 영농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여성결혼이민자들 역시 실질적인 농업인으로서 농가소득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영농활동에서의 자기주도성이나 의사결정 정도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 인터뷰 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 중에서 영농규모와 농가의 소득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사규모와 영농수입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는 <사례5>, <사례6> 여성에 불과했다. <사례9>의 여성은 하우스 농사의 연간 수입 정도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소득 구조나 농사규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둘째, 농사규모와 소득수준만이 아니라 농사일의 구조와 각종 정보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사일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작물의 재배와 수확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만, 농업 소득이 되기까지 농산물의 판로와 유통과정이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 생산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셋째, 자기주도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하고, 자신이 벌어들인 농업노동 소득을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영농에 대하여 자기의사결정권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단순히 농업노동만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8> 여성처럼 한국에 와서 농사경력이 8년이 되었는데도 남편이 매일 하루에 수행해야 할 농사일의 종류와 목표량을 지시하고 본인은 이것을 충실히 수행한 다음 저녁에 다시 남편에게 보고해야 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사례5>와 <사례6> 여성의 경우 자신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본인의 의지대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편이다. <사례5> 여성은 다른 집 배 과수 농사를 거들어주고 벌어들인 수입을 친정어머니와 자신,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집 배 수확물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를 원하고 있다. <사례6> 여성의 경우에는 밭농사 수확물을 공판장에 내거나 장날에 직접 내다 팔기도 한다. 또 자동차를 직접 몰고 농산물 판매나 다른 불일이 있을 때 다니고 있다.

사례 여성들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차이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과 농사경력의 차이, 남편이나 가족의 태도, 농가소득 및 경영규모, 개인의 성격이나 적응력 등이 그것이다. <사례5> 여성이 다른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영농활동에서의 주도성이 높고 농사일에 대한 의욕이 높은 이유는 정착 기간이 길다는 점도 있겠지만, 조선족이기 때문에 한국어 소통에서 자유롭다는 점, 한국의 농촌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크게 작용했으리라 본다.

이러한 점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도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하고, 농업에 관한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 습득과 숙련도 향상에 필요한 교육이나 기타 지원뿐 아니라 한국의 농업 생산과 유통 구조, 농경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3) 농업 및 농외취업에 대한 욕구

인터뷰 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앞으로 농사일에 대한 생각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농사일을 그만두고 공장일이나 장사와 같이 새로운 일을 하고 싶거나 농사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농사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사례1>과 <사례6>의 여성처럼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 공장에 다니거나 다른 장사를 하여 좀 더 쉬운 돈벌이를 하고 싶어한다. <사례6>의 여성은 밭농사 수확물을 직접 장에 내다팔고 원두막에서 파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의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살려 다른 장사를 하고 싶지만, 남편의 반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농사일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사례7>과 같이 현재 빛이 많으니깐 양계장 땅을 팔아 빚을 갚고 농사를 짓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작물을 해보고 싶거나 농산물 판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하는 여성도 있다. <사례5>의 여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농사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례이다. 현재의 농사일로는 수입이 꾸준하지 않고, 농한기에는 상대적으로 한가하고 일거리가 없다보니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있으면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사실 <사례5>와 같은 여성들은 자신의 농산물을 활용한 또 다른 농산품의 생산이나 다른 품목의 영농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어떤 계기만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농림부나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농업 관련 교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대상자인 여성들은 농업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전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들 대부분은 농업과 관련하여 뚜렷한 동기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막연히 원한다 하더라도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이들에게 농촌의 생활과 농업에 대하여 적응하고 이해하기도 전에 과도한 농사일이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국의 농업에 관한 다양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정할 수 있고, 이들이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농업 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농업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농업에 대하여 자신의 욕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농촌과 농업을 이해하고 이것을 자신의 영농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시사점

인터뷰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농사일에 대하여 대부분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농업경영에서도 거의 소외되어 있고, 심지어는 농사일에 대한 자기통제권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농촌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고, 농업 인력으로서 육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한국의 농업 상황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대부분 모국 출신의 같은 여성결혼이민자들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한계이다.

그런 점에서 마을이나 인근 지역의 여성농업인들과의 교류와 관계망 형성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농촌문화와 농업을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적으로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이 먼의 중심지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고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집합교육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거의 하루종일 농사일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번기에 정기적인 교육에 참여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마을 여성조직이나 여성농업인 조직과 연계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필요한 농업관련 교육과 정보제공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업과 관련한 새로운 전망을 세우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보다 증대될 것이다.

2. 해외 사례: 일본 야마가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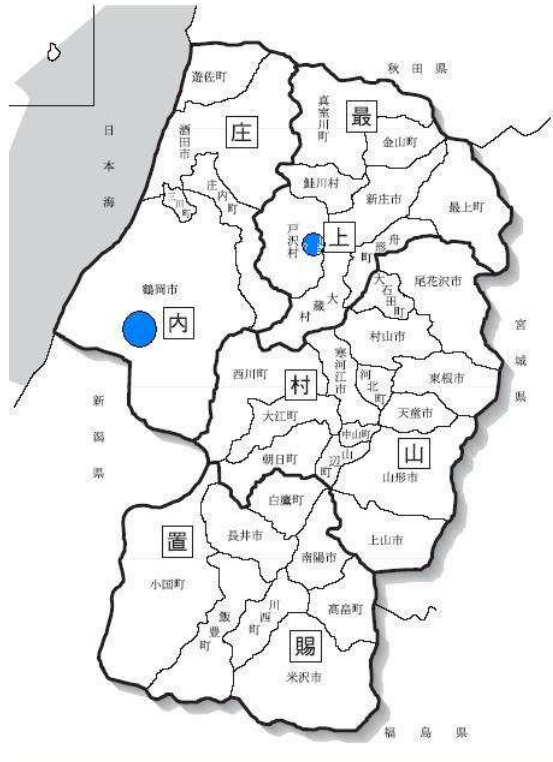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서 일본 야마가타현(山形縣) 도자와무라(戸沢村)와 쓰루오카시(鶴岡市)를 방문하였다. 본 절에서는 야마가타현의 도자와무라와 쓰루오카시의 사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상호협력과 이들의 문화적 자원을 국제교류 및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 농촌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을 모색하는데 있어 시사점들을 끌어내고자 한다.

1) 야마가타현의 국제결혼

사례 탐색을 위하여 방문한 도자와무라와 쓰루오카시는 농촌 및 산촌 지역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도자와무라는 야마가타현의 북부 모가미(最上)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가 약 6,000여명 규모로 일본 행정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촌(村)이다. 그리고 쓰루오카시는 인구 141,504명(□□國勢調査□□, 2006)으로 2005년 10월 1일자로 본래의 쓰루오카시를 비롯하여 3개의 정(町)과 1개의 촌(村)을 병합하여 현재의 쓰루오카시로 확대된 지역이다.

야마가타현은 전체 면적의 77%가 산림이며 벼농사와 과수 농사 등 1차 산업

이 발달한 지역으로 1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10.9%를 차지하여, 현재 일본 전국 평균인 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www.pref.yamagata.jp).



* 출처 : 山形縣, 2006, □□山形縣の概況□□. ●표시는 방문지역임

<사진 IV-2-1> 야마가타현 지도

일본은 1950년대부터 농촌 지역 남성의 결혼난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농현상 가속화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자체의 농촌남성의 결혼 상담과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농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농업인 단체와 함께 결혼상담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농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이카모토, 2006).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도시 여성들과의 결혼 주선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1980년대 중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제결혼을 주선하기에 이르게 된다. 1985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야마가타현 아사히 마치(朝日町)에서 행정기관이 주선하여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부부 9쌍이 탄생하였으며, 국제결혼 주선 사업은 이후 80년대 말까지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⁷⁾

2005년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국세조사□□에 따르면, 야마가타현의 인구는 총 1,216,181명이고 이 중 외국인인 6,383명으로 0.53%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외국인 중 여성이 78.7%, 남성이 21.3%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IV-2-1> 참조).

<표 IV-2-1> 야마가타현의 거주 외국인 현황

단위: 명

국적	외국인 수		
	전체	여성	남성
전체	6,383	5,022	1,361
한국·조선	1,904	1,573	331
중국	2,726	2,154	572
필리핀	657	629	28
타이	83	71	12
인도네시아	30	17	13
베트남	269	260	9
영국	30	8	22
미국	134	59	75
브라질	271	136	135
페루	11	6	5
기타	268	109	159

자료: 총무성 통계국 (2006) □□2005년 국세조사□□.

7) 야마가타현에서는 마무로가와 마치(眞室川町), 오후라무라(大藏村)가 87년에, 사케가와무라(鮎川村)와 도자와무라(戸澤村)가 88년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결혼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인근의 아키타현, 니가타현, 도쿠시마현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국제결혼사업이 수행되었다(佐竹眞明, 2007).

한편 국제결혼 비율에서도 야마가타현은 일본 전국 평균 5.8%보다 높은 6.2%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전국 평균 4.8%인데 반하여 야마가타현은 6.0%로 국제결혼의 대부분이 일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후생노동성, 2006). 이러한 통계자료로 미루어 보아 야마가타현의 거주 외국인은 80%에 가까운 수가 여성이고, 또한 여성들의 상당수는 일본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라고 볼 수 있다.

야마가타현의 일본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1980년대 중반에는 필리핀 여성과 한국 여성들이 주를 이루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중국 여성들의 수가 더 많다. 현재 야마가타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은 약 1,500여명을 넘는다. 그리고 이들은 상당수가 일본 내 제일 코리언이 아닌 '뉴커머'로서 한국에서 살다가 결혼을 계기로 일본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인의 소개나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일본 남성과 결혼하였으며, 거주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은 20여년 가까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일본에 정착하며 생활하면서 지역의 국제교류에 많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생계수단이나 생활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사례 지역 또한 한국인 여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여성결혼이민자로서 지역 사회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출함과 동시에 일본 지역 사회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도자와무라(戸沢村)의 고려관과 도자와류 김치

(1) 고려관 건립의 배경 및 과정

도자와무라에서 고려관이 설립된 배경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민간 국제교류의 흐름과 국제결혼 부부의 탄생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는데, 특히 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도자와무라의 민간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였을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서 고려관이 건립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도자와무라에서 민간 국제교류는 1985년 '국제청년회'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에 도치기현의 아시아 학원과 교류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 학원과의

교류를 통하여 도자와무라의 국제청년회는 한국을 비롯하여 필리핀, 인도, 태국 등 외국인들과 교류를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충북 제천시 송학면과 지속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

1990년 국제청년회를 주도하였던 청년들이 ‘국제교류숙’을 설립하고 송학면과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오고가며 농업 기술을 전수하거나 김치 제조 등의 방법을 알려주는 등 많은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매년 송학면과 도자와무라에서는 어린이, 여성, 농민 등 다양한 주민들의 상호방문 교류가 이루어졌다.⁸⁾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김치를 비롯한 한국음식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한국음식은 지역 축제 등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 소개되고 호평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국적인 음식문화는 도자와무라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특산품 개발’이라는 계기를 부여해주게 되었다.

한편, 도자와무라에는 외국인이 모두 3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모두 여성이며 한국 11명, 필리핀 10명, 중국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자와무라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살게 된 것은 지자체가 농업 후계자 대책의 하나로서 국제결혼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1988년 도자와무라의 국제결혼 추진 결과 한국인 3명, 필리핀 2명이 처음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외국인 여성들의 지인들이나 민간 중개업체를 통하여 국제결혼 부부가 탄생하였다.

도자와무라에 정착하게 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도자와무라의 국제교류와 지역 사회에 모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들은 1990년 도자와무라에 처음으로 한국의 김치를 소개하였고, 1991년에는 ‘한국요리회’를 개최하였으며 계속하여 1994년, 1998년 국제식문화교류회 등의 행사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교류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교류가 축적되면서 도자와무라에서는 한일 교류를 보다 심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으로서, 그리고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한 도자와류 김치

8) 도자와무라의 한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이자 현재 고려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 순호씨에 따르면 도자와무라 주민 중 50%는 한국을 최소한 1번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와 냉면 등 한국 식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5년에 '고려관' 건설을 발표하였다.

이후 고려관 건립은 일본의 중앙정부와 야마가타현, 도자와무라가 비용을 분담하여 총 13억엔을 들여 완성하여 1997년 9월에 개관하였다. 고려관은 민속문화관, 한국물산관, 식문화관을 비롯하여 한국정원, 자료관 등 고려관 개관 첫 해에 제1회 농악제와 식문화국제교류회가 개최된 이후 2007년 현재까지 농악제는 11회, 식문화국제교류회는 10회 개최되었으며, 이 밖에 현재 한국식당과 한국식품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IV-2-2> 고려관의 전경과 내부



<사진 IV-2-3> 고려관의 식품매장

(2) 도자와류 김치랜드의 설립과 운영

“도자와류 김치”는 1990년 도자와무라의 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도자와무라와 한국의 송학면과의 교류 과정에서 한국의 김치 제조방법을 소개함으로써 탄생하게 되었다. 국제교류의 모임 등을 통하여 소개된 김치와 한국음식들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호평을 받게 되고, 이것은 김치를 활용하여 지역의 토착적인 상품으로 개발하고 자원화하려는 움직임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도자와무라에 정착한 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에 의해 소개된 김치는 이후 도자와무라 일본 여성들과 한국 송학면의 여성들의 ‘김치 기술 연수’ 교류로 확대되어 몇 년 간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이 왕래하며 김치 제조 기술을 전수해주고 배우는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도자와무라의 한국인 여성결혼이민자와 일본인 여성들이 주도한 김치 교류는 결국 ‘도자와류 김치’를 상품화하고, 이를 이 지역의 고유한 산업으로서 발전시키려는 시도로까지 추진되어 도자와무라 차원에서 시험적인 김치 제조실을 만들어 여기서 김치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김치 외에도 도자와무라에서 생산하는 소바 가루를 사용한 ‘도자와류 냉면’도 개발·판매를 시작하였다. 도자와무라의 □□과소지역자립촉진계획서□□(2004년 12월)에 따르면, 2000년 직영 공장 겸 판매소가 설립되었고, 이 공장의 설립은 국제교류가 계기가 되어 설립된 것이며, 도자와류 김치 생산 및 판매는 지방 고유 산업의 하나로 탄생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진 IV-2-4> 도자와류 김치와 냉면

도자와무라의 김치공장은 당시 지역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야마가타 현의 정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설립하였으며 현재 ‘도자와무라 김치랜드’라는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는 김치 공장의 운영과 관리는 도자와무라의 상인 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도자와무라의 김치 및 냉면 등 김치랜드의 생산품은 고려관의 한국식품관 외에도 인근 신조시(新庄市) 신조역 건물 내 물산관과 마무로가와마치(眞室川町)의 라면 판매점에 공급되어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도자와무라의 지자체 홈페이지의 ‘물산정보’ 코너에 도자와류 김치와 냉면, 김치랜드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소개되어 있다(<그림 IV-2-5> 참조).

현재 김치랜드에서 김치 생산을 하는 직원은 4명으로 모두 일본인이며, 김치 및 냉면류의 판매액은 현재 연간 600~700만엔 정도 된다고 한다. 이것은 도자와무라 인근 지역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문 판매되는 것을 모두 합한 액수이다. 사실 도자와류 김치와 냉면은 대규모의 생산라인과 유통망을 갖춘 기업이라기보다는 가내수공업에 가깝다.

그러나 단순히 도자와 김치랜드의 규모나 판매액의 규모를 가지고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도자와류 김치가 개발되어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야마가타 현 내에서 다른 한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김치 상품이 많아져서 도자와류 김치가 야마가타 현 내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는 어렵고 판매액을 크게 늘리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도자와무라의 적극적인 의지의 부족이나 예산 및 인력 상의 어려운 여건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도자와류 김치 브랜드의 외적 성장이 아니라 도자와류 김치가 한국과 일본간의 문화교류와 상호 다문화적 이해를 넓혀가는 시도 속에서 탄생하였으며, 이 다문화적 상품이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데 있다.

●戸澤流キムチ

戸澤流キムチは、韓国から来村した花嫁達から技術指導を受け、地元の野菜や山菜を用いて漬けたものです。
キムチの命といわれる唐辛子とエキス等は、本場韓国から直輸入した高級品を用い丹精込めて漬け込みました。



<p>白菜キムチ(ベチュキムチ)</p> <p>300g・750円 400g・950円</p> <p>《賞味期限》製造日より60日</p>	<p>胡瓜キムチ(イキムチ)</p> <p>300g・750円 400g・950円</p> <p>《賞味期限》製造日より20日</p>	<p>大根キムチ(クチキ)</p> <p>300g・800円 400g・800円</p> <p>《賞味期限》製造日より20日</p>
---	---	--

【上記、お問い合わせ先】
とざわキムジャンランド
山形市最上郡戸沢村大字古口278-8
Tel 0233(72)3011 Fax 0233(72)3011

<사진 IV-2-5> 도자와류 김치와 냉면의 인터넷 홍보

(3) 여성결혼이민자의 역할과 지자체의 지원

도자와무라에 정착한 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도자와류 김치’와 ‘도자와류 냉면’의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비록 이들이 이 상품을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김치와 음식을 소개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이 외국의 문화에 대해 보다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이다.

이것은 도자와무라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⁹⁾ 그러나 도자와무라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일 교류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에서 이들에게 교류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부 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그 동안 도자와무라와 한국간의 문화교류와 고려관 설립 및 운영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9) 도자와무라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도자와□□(1997. 6.1, 310호)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지향하는 고려관 개관을 소개하면서, 고려관의 설립 추진 배경으로 “국제결혼한 정주 여성들의 교류에서부터 서로간의 문화를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순호씨는 도자와무라에 정착한 이후 각종 한일 식문화교류와 고려관의 설립 준비 과정에서부터 현재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순호씨는 1989년 도자와무라에 처음으로 오게 된 외국인 중의 한명으로 현재 18년째 도자와무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과 결혼한 이순호씨는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하였는데, 이순호씨에 따르면 도자와무라에서는 초창기 외국인 여성들에게 마을의 생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일본어 교실을 개최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권유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도자와무라에서는 이순호씨의 전공에 주목하고, 자기류 생산을 지역 산업으로 접목하려는 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이순호씨에게 추진해볼 것을 제안하였지만, 이순호씨는 개인적으로 예술작품이 아닌 생산품으로서 자기류를 만들어내는 것에 내키지 않아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현재 이순호씨는 고려관 운영의 실질적인 주무자로서 도자와무라의 국제교류 사업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순호씨의 사례를 보았을 때, 도자와무라에서는 처음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마을에 이주하여 왔을 때, 이들을 단지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러나 자신들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능력이나 잠재력을 간파하고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이문화적 특성과 능력을 마을 활성화에 접목시키고자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즉, 199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한일 교류와 고려관의 개관과 운영, 도자와류 김치의 개발은 도자와무라의 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펼쳐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1988년 도자와무라에서 직접 국제결혼을 추진한만큼 도자와무라 관청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마을 정착과 적응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1989년 당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일본어교실이 개설되어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도자와무라 국제가족 법률연수회’를 개최하여 일본의 법률, 각종 사회보험 및 재산상속,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제도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도자와무라를 포함한 모가미 지역 시정촌들이 모여 공동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류 센터

를 설립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생활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도 하였다.¹⁰⁾

3) 쓰루오카시(鶴岡市) 우메짱 김치회사

(1) 우메짱 김치회사의 설립 배경

우메짱 김치회사 사장인 김매영 씨(일본명 아베 우메코)는 서울에 있던 자신의 집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언니가 먼저 일본에 정착하면서, 그 언니가 소개해 준 일본 남성과 결혼하여 1992년 야마가타현 아사히무라(현재는 쓰루오카시로 편입)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일본의 여성결혼이민자이다.

전형적인 산골지역인 아사히무라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주 초기에는 남편이 차로 쓰루오카시내의 일본어교실에 데려다 주면서 일본어를 배웠고, 일본어를 좀 더 빨리 배우고 일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곧 인근 지역의 전자제품 공장에 취업을 하였다. 약 2년여 동안 전자제품 공장에 다니면서 일본 사회에 적응을 할 무렵에 경기 불황으로 전자제품 공장이 문을 닫자 다시 미싱회사에 4년여를 다녔다. 전자제품 공장에 다닐 때부터 자신이 직접 만든 김치를 주위의 일본인 동료들에게 나누어주고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김매영 씨는 결혼하기 이전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요리하는 것을 즐겨하였고, 자신이 만든 요리를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여 음식 만들기에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김매영 씨가 일본에서 김치를 만들게 된 계기는 당시 아사히무라 관청(야쿠바)에서 외국 요리강습회를 주최하면서 김매영 씨에게 요리강습회 진행을 맡아 하라는 제안이었다. 당시 아사히무라 관청에서는 마을 예산으로 필리핀, 중국 등 외국 요리강습회를 주최하였다고 한다.

처음 진행해 본 요리강습회가 호평을 받고, 이것을 계기로 몇 년 동안 다른 한

10) 도자와무라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녀들은 현실을 변화시킬 강한 의지, 적극적인 사회참가, 모국요리 강습, 만두만들기, 뱀부댄스, 김치 만들기, 통역, 의료통역 등, 학교에서의 종합적인 학습시간, 클럽 활동, 지역소방 활동 등 정말로 많은 곳에서 활약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국요리강습회를 맡아하면서 지역 신문에도 자신의 강습회가 소개되는 등 점차 한국요리를 강습하는 사람으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김매영 씨에게 이 기간 동안의 경험들은 자신의 재능을 새롭게 발견하고 일본 생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이후에는 한국요리강습 뿐 아니라 지역 축제들에서 한국요리를 선보이고 판매하는 책임도 맡게 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김매영 씨는 1996년부터 직접 김치 제조와 판매를 시작하게 된다. 김매영 씨가 김치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나중에 김치회사를 설립하게 된 데에는 첫째, 본인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이 한 몫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매영 씨는 초기에 지역의 농협과 같은 기관에 자신의 김치를 납품하여 판매하고, 쓰루오카시의 관광회사들이 운영하는 물산관에 사정을 하여 처음에는 물산관 입구 공터에 천막을 치고 김치를 판매하였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은 신 김치를 전혀 먹지 않았기 때문에, 더운 날 천막에서 쉽게 시어버리는 김치를 다 버려가면서까지 끈질기고 성실하게 김치를 판매하였는데, 물산관 측에서 그 정성과 성실함에 감복하여 건물 내부의 한 코너를 제공해주었다고 한다.

쓰루오카시의 물산관은 쓰루오카시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버스들이 필수 코스로 반드시 들리게 되며, 겨울철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늘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따라서 전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신의 김치를 보다 쉽게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진 IV-2-6> 쓰루오카시 물산관 김치코너와 우메짱 김치

둘째, 김치회사의 설립과 성공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남편과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들 수 있다. 김매영 씨의 남편은 건설회사의 회사원으로 자신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남편과 시부모가 모두 김치를 만들고 판매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셋째, 김매영 씨의 개인적인 재능과 더불어 끊임없이 자신의 제품을 현지화하려는 개발의 노력이다. 김매영 씨의 김치 판매가 증가하게 된 것은 단순히 유통망을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김치의 맛을 내도록 연구하고 개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진 IV-2-7> 우메짱 김치회사와 한국식당 ‘친구’

김매영 씨에 따르면, 일본인의 입맛은 한국인보다 매운 것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진하고 강한 맛을 선호한다고 한다. 따라서 김치를 만들 때 조금 덜 맵게 하더라도 양념을 많이 넣어 만든다. 또한 김치 외에도 파전이나 쇠고기구이(야키니쿠)와 같은 한국음식과 각종 일본 음식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일종의 간장 소스인 ‘다레’를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김치보다도 이 다레의 판매가 더 인기가 있다고 한다.



자료: 우메짱김치회사 홈페이지(www.3.plala.or.jp/umechan18/kaisyasyokai.html)

<사진 IV-2-8> 우메짱 김치회사 공장 내부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약 8년여간 김치 생산과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을 발판으로 2003년 무렵 유한회사로 ‘우메짱 김치회사’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치의 재료가 되는 배추나 무 등의 재료는 현지에서 재배하여 사용하는데 자신이 처음 살았던 아사히무라의 아는 사람에게 배추나 무, 부추 등의 재배를 맡기고 있고, 젓갈 등은 한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한다.

우메짱 김치회사는 회사 건물 내에 작업장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장 옆에 사무실이 있어 회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김치를 판매하고 있다. 김치회사의 설립 이후 우메짱 김치는 야마가타현을 넘어서 도쿄의 대형 유통업체인 ‘자스코’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데, 실제 판매액은 쓰루오카시 보다도 도쿄의 판매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메짱 김치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약 7천만엔 정도 된다. 김매영 씨는 우메짱 김치회사 외에 약 2년 반 전에 ‘친구’라고 하는 한국식당을 쓰루오카시 내에 열었으며 지금은 도쿄에도 큰 한국식당을 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2) 지역 사회에서의 우메짱 김치회사의 위상과 역할

어떻게 보면 우메짱 김치회사는 김매영이라는 한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능력과 노력으로 일본의 지역 사회에서 성공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성공 사례로서의 의미 외에도 다른 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과 네트워크, 더 나아가 쓰루오카시 지역의 한일교류에 많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또 다

른 파생효과들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지닌다.

우선 우메짱 김치회사와 한국식당 ‘친구’의 직원들은 총 14명인데, 이 중 한국인이 8명, 중국인 1명, 일본인 5명으로 김치회사는 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처이자 교류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몇 년 동안 한국인 직원들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어가 서투른 한국인 여성들이 이 회사에 취직했다가 김치 제조방법을 익히고 자신이 직접 김치를 생산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김매영 씨가 운영하는 한국식당에도 한국인 여성결혼이민자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모두 일본 거주 기간이 5~6년 된 여성들이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운영하는 식당에서의 일 외에 쓰루오카시 국제촌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다른 활동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김매영 씨의 김치가 지역에 알려지고 많이 홍보되면서, 다른 한국 여성결혼이민자들도 이러한 김치 생산과 판매를 시도하여 현재 야마가타현 내에서 판매되는 김치 브랜드가 5~6개가 된다고 한다. 우메짱 김치의 성공에 힘입어 여러 김치 브랜드들이 만들어지고 서로 경쟁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금도 쓰루오카시로 새로 이주해오는 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김매영 씨를 찾아와 고충을 토로하고 상담을 청하기도 한다. 그리고 개인적 상담 외에도 쓰루오카시 일한친선협회 조직의 이사로서 매년 일한친선협회 행사를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메짱 김치회사의 성장은 쓰루오카시의 한국 여성결혼이민자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기여는 물론이고 쓰루오카시 전체 지역 사회와 국제교류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위한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 야마가타현의 두 사례는 서로 다른 특징들을 보인다. 첫 번째 사례인 도자와무라의 고려관과 도자와류 김치 개발·판매는 지자체가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유입을 계기로 한일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이것을 지역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활용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일 문화교

류와 우호의 상징인 고려관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인 농촌관광지로 새롭게 창출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국제교류 역사와 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자체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개인적 혹은 문화적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것을 농촌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개발·활용했다는 것은,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한국의 농촌 지역 현실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시사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지금 한국의 농촌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의 농촌 지역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사례인 쓰루오카시의 우메짱 김치회사의 경우는 농촌 지자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성실함에 바탕을 둔 자수성가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성공에는 자신의 문화적 자원을 재발견하고 이를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동기부여”를 해주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동기부여에 힘입어 한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인 김매영 씨는 자신의 재능을 키울 수 있었으며, 다른 여러 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좋은 “역할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가내 생산방식으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김치회사 창립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판로 확보를 위한 본인의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판로 확보에 지자체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처음 김매영씨가 수제로 생산한 김치를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곳은 그 지역의 농협이었다. 농협의 식품 판매코너에 김치를 납품하면서 자신의 김치를 조금씩 알리기 시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쓰루오카시의 물산관에 김치 판매코너를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다.

따라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 주체인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농촌과 농업에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능성들을

탐색하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동기와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농촌 주민으로서의 생활, 농업인으로서 생활하는데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는 것, 그러한 방식들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이들이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촌 및 농업의 시스템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와 장을 마련하고 이것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나 지역의 농협,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거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음식강습회를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직접 주관하여 진행을 하게 한다거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농작물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지역 단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 농가공품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고, 이것의 공동 판로를 지원해주는 방식의 지원도 필요하다. 일본 사례인 우메짱 김치회사의 경우 김매영 사장이 한국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본 농촌의 문화나 사회 시스템에 쉽게 적응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이 농산물 및 농가공품 생산과 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고 이것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 생산자 조직을 지원하고, 농협 등에서 판로 지원을 하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기술 지원 등의 역할 분담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농업 인력 육성을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일본의 농림수산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여성 챌린지 지원” 사업과 같은 정책(2005~2009)은 한국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새로운 농촌의 인적자원이자 농업인으로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의 여성의 농업 경영 및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

여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 여성의 농업 참여가 용이한 환경 정비를 위하여 여성농업인 교육, 교류 지원활동가 육성, 농업 관련 창업 및 기술 연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농업인 조직 네트워크 중개 등을 내용으로 하며 ‘전국 농업행동조합중앙회’와 ‘사단법인 농산어촌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농림수산성으로부터 국고보조로 농산어촌 여성 챌린지 지원 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www.weli.or.jp/org/plan.html).

<표 IV-2-2> 농산어촌 여성 챌린지 지원 사업

분 야	사 업 명
간행물 발간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농산어촌여성기업 400선 전국 지도□□ 등)
농업·농촌남녀공동참여챌린지종합 추진사업 (국고보조사업에서 추진)	1) 남녀공동참여우량사례 표창사업 2) 선진 여성농업인활동 고도화 지원사업 3) 여성농업인 리더의 고도·전문연수 4) 여성기업가활동지원사업 5) 챌린지지원센터 설치 6) 교류서포터 활동지원사업 7) 남녀공동참여관계 조사 및 분석
해외집단연수 ‘농촌여성능력향상’ 코스	1) 개발도상국 농촌여성에게 보급활동을 하고있는 지도자 대상
아프카니스탄·여성의 경제적 입파워먼트 지원 코스	1) 아프카니스탄 행정관 대상 사업
농업·농촌남녀공동참여 챌린지 종합추진사업 (특별사업부에서 추진)	1) 여성인정농업인 확대 추진사업 2) 가족경영협정 추진사업 3) 농촌여성 네트워크 추진사업 4) 농산어촌여성의 날 추진사업 5) 출산·육아기 여성농업인활동지원사업 6) 여성농업인전문가양성통신교육강좌사업 7) 남녀공동참여창구 일원화사업
시니어 능력활용촉진사업	1) 농산어촌 고령자 대상 사업
농산어촌여성의 주체적 전국조직 활동 지원사업	1) 전국생활연구그룹 연락협의회 활동지원 2) 전국여성농업경영자회의 활동지원 3) 기타 자주적인 네트워크 활동 지원

농촌·농업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농촌·농업에서 여성의 참여와 임파워먼트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촌·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산어촌 여성 챌린지 지원”과 같은 지원 사업은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잠재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 | | |
|--------------------------------------|-----|
| 1. 20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 165 |
|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의 과제 | 171 |
| 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종합지원 방안 | 176 |

본 연구에서는 2007년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참여 여성결혼이민자와 교육도우미, 시·군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2007년 실시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설문조사와 국내외 농촌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사례연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실과 농업·농촌 인적자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과 장애요인을 파악하였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으로서 2007년 사업을 점검,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여성결혼이민자를 농업·농촌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20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2007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본 사업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 중 82.4%가 만족감을 표명하고, 만족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6.8%에 불과해 여성결혼이민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라 할 수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향상도를 보면, 교육참여 이전에는 간단한 대화만 가능했거나 전혀 한국어를 못했던 사람이 73.8%에 달했지만 교육참여 이후에는 28.9%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대화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람이 2.5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원거리에 산재하여 외부교육에의 참여가 쉽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우미가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 교육을 통해 농촌지역 사회에의 적응을 돕고자하는 본 사업의 목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사업이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게 된 요인으로서는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사업과는 달리 교육도우미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직접 개별 방문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춰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둘째, 본 사업이 단순히 한국어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문화교육, 가족관계증진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설계됨으로써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

한 정보를 습득하고 한국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셋째, 개별 방문교육과정 속에서 교육도우미들이 여성결혼이민자 개개인이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주는 ‘친정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농촌지역에 잠재되어 있던 여성 인적자원을 적절히 발굴하여 활용한 점을 들 수 있다. 자원봉사경력과 교육 및 농업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교육도우미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절반 가까운 시군에서 ‘지원자가 너무 많아 과잉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농촌지역에 준비된 인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교육도우미로 활동한 여성들의 경우 91%가 교육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자원봉사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89%에 달했다. 특히, 교육도우미 선발 기준에 자원봉사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 개별 방문교육의 특성상 개별 가구 방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뿐 아니라, 정해진 교육시간 이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별적인 요구나 부탁 또는 상담 등으로 개인생활의 상당부분을 투자해야 되는 만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로서 도우미활동을 인식할 경우 매우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사업은 의미있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새롭게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 또한 적지 않다.

1) 서비스대상자의 모집 및 선정

(1) 선정기준의 타당성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농촌지역사회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본 사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꼭 필요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찾아내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의 비협조나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87%에 달하는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로 인해 ‘한국어수준이 낮은 농가 우선’이라는 선발기준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한 사람들이 서비스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사업 참여 이전에 자신의 한국어 수준을 ‘대화가 자유자재로 가능하다’거나, ‘대화와 쓰기 모두 잘한다’고 보고한 여성결혼이민자가 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결국 상반기 서비스 수혜대상자 중 4분의 1은 본 사업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서비스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의 한국 체류기간을 보면, 3년 미만 체류자가 전체의 69.0%를 차지하지만, 5년에서 9년 동안 체류한 여성이 18.2%에 달하고 10년 이상 체류한 여성(4.0%)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사회의 초기 적응 단계에서 각종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기획의도에 비추어볼 때 한국사회 체류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여성들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체류 기간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 수혜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한국어수준이 낮은 농가 우선’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여 ‘한국 체류기간 4년 미만인 자’와 같이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을 함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모집인원의 적정성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의 의도에서 다소 벗어난 사람들이 서비스대상자로 선정되게 된 데에는 선정기준의 모호성과 더불어 지역별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세부적인 사업 기획이 부족했던 점도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에 수행된 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수행된 것이기는 하나, 각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수와 관계없이 1개 지역에서 상·하반기 각각 30명씩을 서비스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따라서는 적절한 서비스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를 당초부터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시범지역에 따라 많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수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규모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동일한 숫자의 서비스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서비스 수요자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서비스 대상자가 많아 수혜자 선정의 어려움을 겪는 정반대되는 양상이 초래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목표수치를 채우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수를 고려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은 지역에는 서비스 대상자를 더 많이 배정하고, 여성결혼이민자가 적은 지역은 서비스대상자 수를 더 적게 배정함으로써, 본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육·활동의 적절성

(1) 교육·활동 내용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가족관계증진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농촌 정착에 기여하는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업, 농촌의 핵심 인적자원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도우미들이 수행한 교육·활동내용을 보면, 개별방문교육형식으로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은 물론, 여성결혼이민자대상 가족관계 상담 및 생활상담, 지역생활 안내, 한국요리 강습, 자녀양육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은 교육도우미의 70% 이상이 추진하여 당초의 사업목적에 달성에 필요한 활동들이 다양하게 기획·수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인 가족 대상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부부교실/가족 캠프, 각국의 음식, 풍습 소개 등과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와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활동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본 사업이 2007년 시범 단계를 거쳐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농촌사회 정착을 지

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농업 및 농촌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육성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 교육이나 다양한 소그룹 활동과 더불어 농업·농촌에 대한 특화된 교육·활동 발전방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통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지향성 확보 차원에서 농업·농촌 관련 교육·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교육자원의 지원

본 사업은 단순히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개별방문교육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생활상담을 비롯,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소그룹 및 대그룹활동교육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는 곧 그만큼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교육자원이 체계적으로 밀받침되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어 세계화재단」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자체 개발·보급하고, 교육도우미들에게 한국어교육 방법을 교육한 것이 전부라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이외에 교육도우미들로 하여금 대상가구의 여성이나 가족에 대한 생활상담을 실시하거나 소그룹 교육계획 등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례로 도우미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각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지역은 30개 지역 중 16개 지역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당초 계획된 대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했다는 도우미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45%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교육도우미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은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공무원들이 본 사업의 발전방안으로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96.6%)과 ‘소그룹 활동이나 대그룹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82.7%)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인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더불어 여

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에 필요한 기초 소양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도우미들은 도우미들간의 비공식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과정에서 자신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나름대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실용적인 지식은 교육도우미들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됨에는 틀림없지만, 생활상담에 필요한 상담방법과 같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교육도우미들 역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여성결혼이민자를 교육하는 위치에 서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여러 위험요소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3) 관리체계의 효과성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전체 사업을 총괄 지도·감독하고 사업시행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관리기관을 통해 교육도우미의 선발과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한국어 교재 및 교육재료를 제공하는 한편, 본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군 행정조직을 통해 사업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교육도우미의 수당 지급을 비롯 복무상황을 관리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기관의 경우 교육도우미의 선발과 운영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것일 뿐, 도우미들의 실제 교육활동 및 복무와 관련한 실질적인 관리는 시·군담당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군담당자들은 교육도우미들로 하여금 소그룹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날짜별, 가구별로 교육활동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할 뿐 아니라, 현장방문, 전화 확인 등의 방법으로 도우미들의 교육활동을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30개 지역 중 28개 지역에서 1명의 사업담당자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군담당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으로 수행된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되겠지만, 1명의 담당자가 다른 여러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거리에 산재한 개별 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을 지도·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로 드러났다. 도우미들의 교육활동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월 1회 개최되는 정기모임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나타났으며, 날짜별, 가구별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활동일지는 수당지급 근거서류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우미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지역 또한 전체의 절반정도에 머무르는 등 사업관리 측면에서 볼 때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당초 본 사업서비스를 신청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료율이 95% 이상되는 지역이 전체의 절반인 51.7%에 머물고 90% 미만 교육수료율을 보인 지역이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27.5%에 달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을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형식적인 서류작업에 머물고 있는 활동일지를 날짜별 또는 가구별로 단일화하는 한편, 월 1회 정기모임을 공식화하여 교육도우미들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의 과제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촉발된 농촌,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 성비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생활공간으로서 농촌사회와 농업은 ‘재생산의 위기’라고 할 만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촌 주민 특히 남성농업종사자들의 국제결혼이 일반화됨에 따라 재생산 위기는 다소나마 극복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감소 일로에 있던 남성 농업종사자의 결혼이 증가세로 돌아섬으로써 농촌지역사회와 산업 전망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농촌, 농업의 활로 모색에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의욕적인 여성인적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농업종사자들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잠재적 가치는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2007년 상반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20-30대 연령층이며 43.4%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나 학력 등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인적자원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62.9%는 지난 1년간 농업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 참여율도 상당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대상자 중 62.1%가 앞으로도 농촌에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농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55.1%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의사를 발전시키고 농업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 기술 등을 고루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농업, 농촌의 인적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가 소속, 농업참여 경험이 있는 이들, 그 가운데에서도 농업경영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농가 소속 여성결혼이민자 사이에서 농촌 거주나 농업에 대한 향후 계획이 보다 긍정적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전망을 구체화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기술과 지식, 정보를 갖출 수 있는 기회만 갖추어진다면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는 데에는 상당한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것 역시 현재의 상황이다. 우선 농가 소속 여성농업인 중 상당수는 가구의 농업 소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정도로 농업경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바깥 때 집 농사를 도와주는 정도의 보조적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가구의 농업경영 관련 정보는 물론 한국의 농업 구조나 농업생산노동 등에 대한 정보조차 결여한 채로 남편 등 타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장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여도 이러한 상황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본국에서 농업에 종사해본 여성결혼이민자는 13.2% 수준으로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으로 이주하기 이전에는 농업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농촌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농가 소속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농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 역량을 갖추는 데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농업의 어려움을 질문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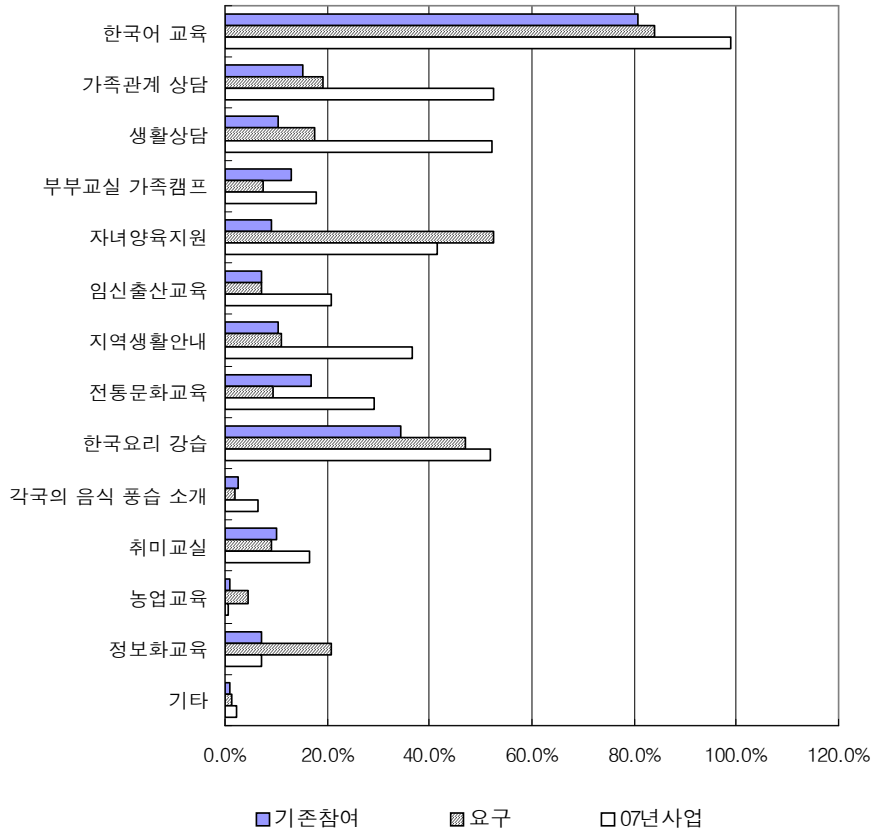
과 32.9%가 ‘농사일을 몰라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언어소통의 문제와 이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공백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되고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된 상황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여성결혼이민자를 농업, 농촌의 인적자원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다. 2007년 30개 시, 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개인적 상황 등으로 원거리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직면하는 문제의 핵심인 한국어 소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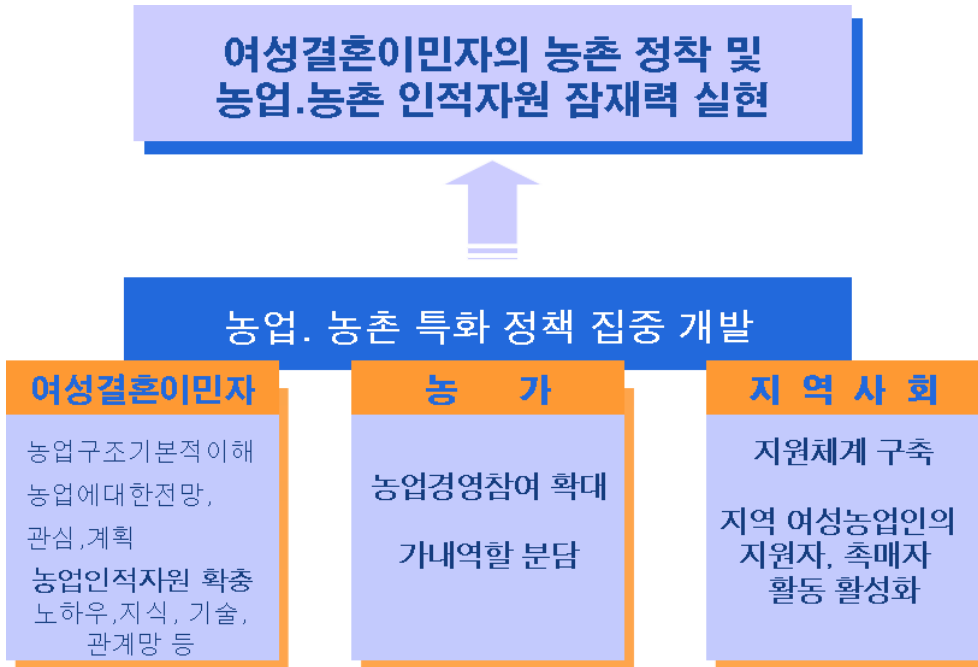
그러나, 2007년에 추진된 사업에서는, 농촌사회, 농업의 미래를 열기 위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업 첫해인 2007년에는 당초 계획단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농업, 농촌 인적자원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포함되지 못하여 서비스 제공자나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농업 관련성이나 농업인적자원으로서의 잠재력 등이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지 못했으며,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활동 지원 차원에서도 농업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재 등이 제공되지 못했다. 그 결과, 2007년 사업에서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과 직접 관련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아 농촌사회나 농업에 특화된 서비스로서의 발전 기반을 쌓기 위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교육 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시·도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만 보아도 30개 지역 중 27개 지역에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이외에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정부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지적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상반기 사업에 참여했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이외에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해본 여성이 50% 정도를 차지했으며 참여해본 교육을 보아도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요리강습 등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된 서비스를 다른 교육이나 활동을 통해 이미 참여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 중 상당수가 유사한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에는 농업, 농촌에 특화된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추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V-2-1> 여성결혼이민자의 기존 참여 교육과 07년 사업



<그림 V-2-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의 과제

2007년 시범사업 단계를 거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농촌지역에 특화된 서비스이자 여성결혼이민자 농업 인적자원 육성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주민으로서, 농업 인적자원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분명한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사업 추진 전반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경력이나 자원봉사경력 이외에 농업 경력 등 농업 인적자원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이끌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핵심적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 대상 교육이나 교육자료 등의 지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한국어 수준 뿐 아니라 농업인적자원으로서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농가 소속 여성결혼이민자,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일정한 경영 규모 이상의 농가 소속원이 농업정책의사나 농업계획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야말로 향후 농업의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이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전망을 형성, 발전시키고 농업 참여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을 증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종합지원 방안

1) 단기적 방안

(1) 농업, 농촌의 전망에 대한 다언어 정보 서비스

농촌의 인구구조와 농업 및 관련 사업의 동향을 고려할 때, 여성결혼이민자는 향후 농촌사회와 농업 및 관련산업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이 농촌 거주와 농업 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 농촌에 대한 전망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전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계획의 실현을 뒷받침할 만한 정책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 중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농촌에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사회의 미래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젊은 연령층에서는 이농의사가 높고 한국사회에 대한 기초적 적응단계를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떠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점은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사회에 실질적 활력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 연령층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사회에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그 성패가 달려 있으며 특히 농촌, 농촌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농가 소속 여성

결혼이민자, 농업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사회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자리잡아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촌사회와 농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해 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업 및 관련산업의 동향과 정책 지원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여성들이 농촌, 농업의 주체로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실현해가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는 농업 및 관련산업 정보에 대한 요구가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 농촌과 관련한 각종 교육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식품(예: 각국의 주요 가공식품과 음식재료)이 잘 팔릴지에 대한 정보 교육을 요구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거의 절반에 달했으며 이 밖에 인터넷에서 농업관련정보를 찾기 위한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도 1/3가량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농촌, 농업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는 동시에 전망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언어 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다언어 정보를 생산하여 온,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농업관련 프로그램 개발

2007년 상반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앞으로 농업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향후 농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의사를 발전시키고 농업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농업 인적자원으로서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업 인적자원으로서 본격적인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데에는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우선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농업 참여 경험이 제한되어 있어 농업 기술이나 관련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은 본국에서 농업에 참여해본 적이 없

다. 이들이 농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여 농가소속원이 되면서 부터이지만, 이 경우에도 농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보조 인력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농업 참여 경향이 제한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업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여 적극적인 농업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 기회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쉽게 참가할 만한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관련 교육 기회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업, 농촌의 인적자원으로서 역량을 배양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교육에 대한 참여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이들의 교육 참여를 가로 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언어 소통 문제에 있는 만큼, 한국어 수준을 감안한 농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여성들은 지식 습득 보다는 현장 노하우 중심의 교육이 효과적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며 농업과 관련된 콘텐츠를 담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한국의 농촌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교육자료 등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특히, 출신국가의 자연환경이나 농업문화와 한국의 자연환경 및 농업구조를 비교하여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적응단계별 특화 프로그램 추진

농업·농촌 인적자원 육성을 목표로 한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에 있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업, 농촌에 대한 전망을 형성하고 기술과 지식, 정보를 종합적으로 갖추어갈 수 있는 총체적인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을 실제 적용시켜 가는데 있어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단계나 농업에 대한 관심과 경험 정도에 따라 특정한 부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생활 초기단계의 여성결혼이민자, 농업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농업, 농촌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생활기간별로 농업, 농촌에 대한 계획을 비교해보면 한국생활 초기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지니고 있다 가도 점차 한국생활기간이 길어지고 기초적 적응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퇴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생활 초기 단계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부부 내지 가족 단위의 농가 교육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이 속한 농가의 경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농가 차원의 발전 전망을 가족들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차츰 기초적 생활에 적응된 이들, 특히 어느 정도의 농업 참여 경험을 지닌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세부적인 농업분야별로 생산, 판매, 경영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농업분야에서 역량을 쌓은 여성결혼이민자를 교육 진행을 위한 통역요원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4) 우선 지원 대상 이주여성농업인을 위한 1:1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발

제한된 정책자원 속에서 추진되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농업관련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업인적자원으로서의 잠재력과 중요성이 높은 집단을 발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농가 소속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촌거주의사나 농업계획 등이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야말로 미래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선 지원 대상 이주여성농업인을 지정하여 각종 교육에 있어 우선적인 대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참여에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원 서비스도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들에게는 기초 적응 단계에서부터 전문 농업인으로서 발전해가는 전 과정별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및 소속 농가에

대한 DB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2008년부터 실시하는 ‘농가등록제’에 경영주 및 가족원에 대한 국적 정보(출신국적, 현재국적)를 포함하여 농업경영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가 소속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농업분야별, 생애주기별(또는 연령대별), 적응단계별로 세분화된 1:1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인데, 맞춤형 서비스는 농업 동향과 농가 차원의 비전에 비취 이주여성농업인의 잠재력과 향후 발전 가능성, 현재의 장애요인 등을 진단하는 컨설팅 서비스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 개인단위, 농가단위 1:1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기능을 포괄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 전반, 여성농업인, 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정보자원 등을 갖춘 ‘이주여성농업인 특별 지원사(가칭)’가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주여성농업인은 교육 참여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양육, 농업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우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지역 여성농업인과의 관계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농업생산 네트워크 접근 계기 마련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은 국경을 넘은 이주에 따라 한국사회와의 연계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 역시 가족 외부의 사회적 관계는 발달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업 및 농촌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참여 범위를 보면 85.2%가 자신의 집 농사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집 농사와 다른 집 농사를 하는 경우가 9.8%, 다른 집 농사만 하는 경우는 5.0%로 대부분 자신의 집 농사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집 농사 중 여성 자신이 참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만 돕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신의 집 농사만 짓는 대부분의 경우 집 농사가 많아서 라기 보다는 그 외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는 가사와 육아 부담을 들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집 농

사만 하는 경우는 다소 줄어들고 집 농사와 다른 집 농사를 같이 하거나 다른 집 농사만 하는 경우가 다소 늘어나는 것은 이러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 참여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농업구조는 가족농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정한 시기에는 가족 이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가족 이외의 지역사회 역시 농업생산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개인의 입장에서조차 가족을 넘어선 지역사회, 특히 지역 여성농업인과의 관계는 농업 참여에 있어서 의미를 지니는데, 우선 농업수입, 특히 현금수입을 획득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동원 가능한 가외 농업노동력에 대한 접근권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농업분야에 대한 기술 뿐 아니라 농업시장정보 및 정책 정보, 경영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 중 3/4가 부녀회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지역사회 내에 사회적 관계망을 결여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농업생산 네트워크에 접근할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서 추진된 바와 같은 개별방문교육은 각종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족 외부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으나, 방문교사와 교육 참여 여성결혼이민자가 같은 지역사회에 속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육을 통해 형성된 관계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방문교사 대부분이 농업경력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어 관계망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농업생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농업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농업인이 ‘여성결혼이민자 농촌정착 지원사(가칭)’ 내지 ‘다문화 농촌 촉매자(facilitator for multicultural rural community)(가칭)’로서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관계를 통해 농업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농촌의 지리적 특수성과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원거리 집합교육에 참여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서는 원거리 집합교육 중심의 교육체계 상 서비스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개별방문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사업 추진 결과, 개별방문교육은 상당히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와 동시에 개별방문교육의 특성 자체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즉, 여성들이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교육에 몰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대일 대면관계를 통한 교육에서는 교육내용이나 교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대화를 통해 함께 이해를 높여갈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에서는 방문교육의 장점 살리면서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을 단위 순회교육을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마을 단위 순회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부녀회나 지역사회 여성농업인들이 교육 장소나 임시 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은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참여시 가족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인 여성과 여성결혼이민자가 함께 특산물 생산, 가공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직접 개발하여 실시하고 그 활동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익힌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농업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2) 중·장기적 방안

(1) 다문화 자원을 활용한 농업관련산업 활성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 중 상당수는 앞으로 농업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업 전업 보다는 농업과 농외취업을 함께 하는 겸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국의 주요 가공식품 및 음식재료 등 농산물 가공이나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이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과의 관계성을 지닌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이러한 관심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또 다른 관심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관심과 역량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마가타현의 도자와 무라에서는 일본에 정착하게 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역량을 지역 활성화에 접목하고자 한 적극적인 시도의 결과 ‘고려관’과 도자와무라 김치와 냉면이 개발되고 주요 지역 특산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자와무라에 정착한 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김치 제조방법을 전수하고 고려관의 설립 과정에도 참여하였으며, 점차 지역의 학교와 자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마을의 국제교류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야마가타현의 쓰루오카시에서 ‘우메짱 김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매영 사장 역시 한국 출신의 결혼이민자로서 지역 사회에서 농업관련산업분야의 기업인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도 지자체가 한국출신 여성결혼이민자로 하여금 한국의 음식문화를 지역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 성공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평범한 한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였던 김매영 사장은 지역 사회에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알리는 활동의 장을 보다 넓힐 수 있었으며, 이것을 발판으로 자신의 김치 브랜드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일본의 사례는 지자체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며, 이것을 통하여 이들의 역량이 표출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도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적 자원, 특히 음식이나 식품 등과 같은 자원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이들이 그러한 자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농업 및 농업관련분야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점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식품 및 음식 자원 등을 다문화사회의 자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갖추는데 있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농산물, 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시장 동향에 대한 연구 조사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생산 및 가공 기술과 상품을 개발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식품, 음식 자원을 기반으로 농업관련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함께, 또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여성들이 함께 조합을 형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모델을 개발하고 자금, 기술, 정보, 홍보나 판로 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 지역사회 개발 사업 추진

농촌사회에 재생산의 위기를 야기한 급격한 이농현상은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현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 재생산을 위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 국제결혼으로,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여성결혼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농촌사회는 다소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구조적 현실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농촌을 떠났던 것처럼 여성결혼이민자들 역시 이러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이농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모색되지 않고서는 농촌사회의 본격적 활성화

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젊은 연령층의 이농, 특히 여성들의 이농은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농촌 간 지역 불균형 심화와 함께 성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농촌지역 여성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라는 가내 역할에 한정되어 가구의 농업 경영으로부터 배제되기 쉬우며 농업생산자로서의 역할 역시 가내 역할의 연장선으로 인정되어 농업생산에 대한 참여가 경영에 대한 권한으로 이어지기는 힘든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보수적인 분위기 하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농업, 농촌의 변화로부터 소외되기 쉽다. 이는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한국사회에 유입된 여성결혼이민자들 역시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로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실천이 본격화되지 않는 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농업, 농촌의 미래를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성인지적이고 다문화적인 지역개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의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별, 출신국가별로 지역주민들의 특수한 현실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충실한 지역개발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성,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지역사회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주체가 되어 출신국가, 출신 지역과의 농업교류, 문화교류 등을 추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러한 작업이 실천적인 차원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주민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역사회의 완전한 성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차원의 다문화 시민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 2001. □□강원도 외국인주부 실태 및 복지욕구 토론회□□.
-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2006.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지역 사회적응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국제이주기구서울사무소 외. 2006.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정책 ‘다시보기’□□.
- 김민정 외.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 39-1.
- 김성미경. 2006. “국제결혼 여성 이주자의 삶과 문제”.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 2006년 제2차 여성정책 워크숍□□.
- 김은숙 외. 2006.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역사회적응지원 실태조사연구□□.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 김이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을 통해 본 문화간 소통의 현실”. 한국여성개발원·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 구조와 국민통합□□.
- _____. 2007 a. “‘가족’으로 만난 동남아 여성과 한국인 간의 젠더논쟁”. 한국동남아학회. □□경계, 이동, 세계화: 변화하는 21세기의 동남아□□.
- _____. 2007 b. “한국사회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소통 현실과 전망”.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미래사회의 다문화가족□□.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니이야 도시유키. 2000.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인 부인: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민경자. 2003. □□충남 거주 외국인 주부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박재규 외. 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전북발전연구원.
- 서울여성. 2005. □□이주여성의 삶을 통해서 본 공존과 상생의 문화□□(제13회 서울여성포럼).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 외.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신경희. 2005.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신란희. 2005.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양철호 외. 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6집.
- 왕한석.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문제와 해결방안”. □□새국어생활□□ 제16권 제1호.
- 윤형숙. 2004a.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외 엮음.□□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 _____. 2004b.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 이순형 외. 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농림부.
- 이영세·김영주 외. 2005.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초 연구□□. 문화관광부.
- 이주여성인권센터. 2003. □□이주여성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2주년 심포지엄).
- _____. 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 이주·여성인권연대. 2001. □□한국 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와 대책□□(제1회 정책워크숍).
- 이타모토 요코. 2006. “일본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실태 및 대응정책”.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사회적응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제28권 제1호.
- 이혜경외.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을 중심으로.□□한국사회학□□제40집 5호.
- 전북여성단체연합. 2005. □□국제결혼을 통한 전북지역 이주여성의 올바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 _____. 2006. □□전라북도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민·관 네트워크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전북인적자원개발센터·충남인적자원개발센터. 2006.□□해외이주 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RHRD 정책방향과 과제□□.
- 주경미 외. 2006.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및 정책방향□□.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 하밍타잉.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논문.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 1호.

한국인권재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살이□□(월례 인권대화).

황달기. 1993. “일본 농가후계자의 ‘국제결혼’: 그 실상과 문제점”. □□일본학보□□. 30호.

山形縣. 2006. □□山形縣の概況□□.

渡辺雅子. 2002. ニューカマー外国人の増大と日本社會の文化變容：農村の外国人妻と地域社會の變容を中心に. 宮島喬. □□變容する日本社會と文化□□.

佐竹眞明・メアリー・アンシェリン・デアノイ, 2006, □□フィリピン日本國際結婚: 移住と多文化共生□□, 株式會社 めこん.

總務省 統計國. 2006. □□國勢調査□□.

戸沢村. 1997. □□とざわ□□(no. 310).

戸沢村. 2004. □□過少地域自立促進計劃書□□.

朴銀永. 2001. “日韓國際結婚家庭の二言語併用の實態: 意識調査及び會話分析を中心として”. □□일본학보□□. 46호.

伊藤孝惠. 2000. “在日外国人女性の‘異文化適應’とsocial support”. □□일본문화학보□□. 8월호.

야마가타현 홈페이지. www.pref.yamagata.jp

도자와무라 홈페이지. www.vill.tozawa.yamagata.jp/pc_site.html

농산어촌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 www.weli.or.jp/org.plan.html



부 록

부록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시·군 담당자 조사표	193
부록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도우미 조사표	202
부록 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참여자 조사표 (여성결혼이민자용)	208

부록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시·군 담당자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농림부의 의뢰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며,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공무 수행에 바쁘시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의 생각을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연구책임자 : 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02-3156-7158)

공동연구자 : 정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2-3156-7121)

이인환(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위원, 010-2989-9951)

농 립 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 역	도	시·군
담당자	과 성명 :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1. 귀 시·군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 1) 담당자가 직접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 2) 여성결혼이민자 모임이나 리더를 통해
- 3) 인쇄홍보물이나 인터넷을 통해
- 4) 읍·면사무소 등의 행정기관을 통해
- 5) 주위의 아는 사람을 통해
- 6) 기타(_____)

2. 본 사업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셨습니까?

- 1) 지역내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
- 2)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및 가족의 직접 신청에 의해
- 3) 이장 등 읍·면 담당자의 추천으로
- 4) 기타(_____)

3. 본 사업에 참여할 여성결혼이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 1) 어려움이 별로 없었음
- 2) 남편, 시어머니 등 가족들의 비협조로
- 3) 여성결혼이민자 사업 중복으로 인해 수요자 확보가 어려웠음
- 4)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직원들이 직접 설명해야 했음
- 5) 본 사업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6) 지역내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파악이 어려웠음
- 7) 기타(_____)

4. 선생님께서는 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방문 교육도우미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4-1. 방문 교육도우미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사업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1) 사업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 ___ 2) 대상자 집이 너무 외떨어져 가려고 하는 도우미가 없어서
- ___ 3) 한국어를 전혀 몰라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 ___ 4)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참여를 기피해서
- ___ 5) 남편, 시부모 등 가족이 반대해서
- ___ 6) 기타(_____)

5. 귀 시·군에서 상반기에 시행한 본 사업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총 몇 명입니까?

총 _____명(중도탈락 _____명, 수료 _____명)

6. 귀 시·군에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교육도우미로 **상반기에 활동한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총 _____명

7. 귀 시·군에서 교육도우미를 모집 및 선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 ___ 1) 별다른 어려움 없었음
- ___ 2) 충분한 사업홍보가 어려워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 ___ 3) 교육도우미를 할 만한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 ___ 4) 도우미 심사기준이 불분명해서
- ___ 5) 지원자가 너무 많아 과잉 경쟁이 유발되어
- ___ 6) 기타(_____)

8. 귀 시·군에서는 지난 상반기 동안 도우미활동을 중도에 그만 둔 사람이 있었습니까?

- ___ 1) 있었다
- ___ 2) 없었다(※문항 9로)

8-1. 중도에 도우미활동을 그만 둔 사람이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_____ 1) 가사 및 육아,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 _____ 2) 장거리 지역선정으로 인한 교통편의 어려움으로
- _____ 3) 도우미 수당이 너무 적어서
- _____ 4) 도우미활동이 너무 힘들어서
- _____ 5) 다른 곳에 취업이 되어서
- _____ 6) 기타(_____)

8-2. 중도에 도우미를 그만둔 경우, 새로운 도우미가 충원되었습니까?

- _____ 1) 충원되었다(※ 문항 9로)
- _____ 2) 충원되지 않았다

8-3. 새로운 도우미가 충원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1) 교육을 이수한 예비도우미가 없어서
- _____ 2) 더 많은 수당과 대우를 원해서
- _____ 3) 신규 학습자가 많지 않아서
- _____ 4) 도우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 _____ 5) 기존 도우미로 충분해서
- _____ 6) 기타(_____)

9. 귀 시·군에서는 교육도우미들이 활동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_____ 1)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도우미들의 문의가 별로 없음
- _____ 2) 도우미 활동일지를 통해
- _____ 3) 도우미들의 개별적인 문의를 통해
- _____ 4) 업무전달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 _____ 5)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 _____ 6) 현장 활동 점검을 통해
- _____ 7) 기타(_____)

10.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함께 다양한 교육이나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시·군에서 도우미들이 한국어 교육 이외에 시행한 교육이나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1)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가족관계 상담
 2)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생활상담
 3) 한국인 가족 대상 가족관계 상담 또는 교육
 4) 부부교실, 가족캠프
 5) 자녀양육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6) 임신, 출산에 관한 교육
 7) 지역생활안내(공공기관, 은행, 교통편 이용, 시장보기 등)
 8) 전통문화교육(전통예절, 한복입기, 다도, 전통놀이 등)
 9) 한국요리 강습
 10) 각국의 음식, 풍습 소개
 11) 취미교실(꽃꽂이, 공예, 노래교실, 영화, 비디오 시청, 야유회 등)
 12)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관련 교육
 13)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등)
 14) 기타 →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이나 교육인지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_____)

10-1. 한국어 교육이 외에 도우미들이 위와 같은 교육이나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1) 없음
 2) 도우미와 함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방문
 3) 소그룹활동 시 재료비 등 예산 지원
 4) 견학, 관광 등 대그룹활동 행사비용 지원
 5) 대그룹활동을 위한 기업이나 기관 협찬 지원
 6) 교통편 또는 장소 제공
 7) 기타(_____)

11. 귀 시·군에서는 상반기 도우미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십니까?

- _____ 1) 실시했다 _____ 2) 실시한 적 없다(※문항 12로)

11-1. 상반기 도우미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 _____ 1) 매월 도우미들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통해
_____ 2) 학습자의 교육 소감 발표나 면담을 통해
_____ 3) 도우미별로 중도 포기 학습자 발생이나 교육참여 횟수를 통해
_____ 4) 상반기 도우미 워크숍에서의 상호토론을 통해
_____ 5) 상반기 도우미활동을 한 도우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_____ 6) 학습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현장방문을 통해
_____ 7) 기타(_____)

12. 선생님께서는 상반기에 이루어진 도우미들의 **한국어 교육활동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_____ 1) 매우 좋지 않았다
_____ 2) 별로 좋지 않았다
_____ 3) 그저 그렇다
_____ 4) 비교적 좋았다
_____ 5) 매우 좋았다

13. 선생님께서는 상반기에 이루어진 소그룹활동 등 도우미들의 **한국어 교육이외의 활동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_____ 1) 매우 좋지 않았다
_____ 2) 별로 좋지 않았다
_____ 3) 그저 그렇다
_____ 4) 비교적 좋았다
_____ 5) 매우 좋았다

14. 귀 시·군에서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총 _____명

15.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습니까?

_____ 1) 확보했다(예산액: _____원)

_____ 2) 확보하지 않았다

16. 선생님께서는 귀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규모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방문 교육도우미 사업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방문도우미의 활동기간, 방문도우미 숫자, 교육내용 등의 측면에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초급, 중급, 고급 등 단계적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필요함	1	2	3	4	5
2) 소그룹 활동이나 대그룹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되어야 함	1	2	3	4	5
3) 시·군별 결혼이주여성의 수에 따라 도우미 숫자가 조정되어야 함	1	2	3	4	5
4) 도우미 수당을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해야 함	1	2	3	4	5
5)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함	1	2	3	4	5
6) 교육도우미의 활동일지 등 관련 서류가 간소화되어야 함	1	2	3	4	5
7) 자원봉사로서의 교육도우미활동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함	1	2	3	4	5
8) 기타 (_____)	1	2	3	4	5

17. 선생님께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1)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사업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져서
- 2) 차량유지비 등의 문제로 원거리 학습자를 기피해서
- 3) 교육도우미와 학습자를 관리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됨
- 4) 소그룹 활동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부족
- 5)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들의 의식 및 관심 부족
- 6) 도우미활동을 봉사활동이 아니라 취업활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서
- 7) 기타(_____)

18. 본 사업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여성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우리 농촌사회가 다문화에 대해 열린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사업의 취지에 기반해 볼 때, 선생님께서는 본 사업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적절하지 않다
- 2)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적절한 편이다
- 5) 매우 적절하다

19. 선생님께서는 향후 이 같은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 더욱 강화되거나 추가될 필요가 있는 교육이나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부터 2개만 골라주십시오.

- 1) 사업 및 단계적인 교육내용의 확대가 필요함
- 2) 여성농업인력 육성 방향으로 교육활동이 개편되어야 함
- 3) 남편, 시부모 등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교육 필요
- 4) 영농에 관심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를 교육대상자로 선정
- 5) 여성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 강구
- 6) 기타(_____)

1순위	2순위

부록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도우미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농림부의 의뢰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며,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도우미업무 수행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의 생각을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연구책임자 : 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02-3156-7158)

공동연구자 : 정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2-3156-7121)

이인환(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위원, 010-2989-9951)

농 립 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 역	도	시 · 군
이 름		
연락처	휴대전화 :	이메일 :

1. 선생님께서는 상반기에 총 몇 명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습니까?

_____ 명

2. 선생님께서는 상반기에 어떠한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습니까?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1) 각자 집으로 방문하여 개별교육 실시
 _____ 2) 마을회관, 교회, 여성결혼이민자가정, 도우미가정 등에서 소그룹교육 실시
 _____ 3) 대그룹교육 실시
 _____ 4) 기타(_____)

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소그룹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나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에 선생님께서 **한국어 교육이외에**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교육이나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_____ 1)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가족관계 상담
 _____ 2)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생활상담
 _____ 3) 한국인 가족 대상 가족관계 상담 또는 교육
 _____ 4) 부부교실, 가족캠프
 _____ 5) 자녀양육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_____ 6) 임신, 출산에 관한 교육
 _____ 7) 지역생활안내(공공기관, 은행, 교통편 이용, 시장보기 등)
 _____ 8) 전통문화교육(전통예절, 한복입기, 다도, 전통놀이 등)
 _____ 9) 한국요리 강습
 _____ 10) 각국의 음식, 풍습 소개
 _____ 11) 취미교실(꽃꽂이, 공예, 노래교실, 영화, 비디오 시청, 야유회 등)
 _____ 12)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관련 교육
 _____ 13)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등)
 _____ 14) 기타 (_____)

4. 당초 계획했던 모든 교육이나 활동이 원활히 추진되었습니까?

_____ 1) 예(※ 문항 5로) _____ 2) 아니오

4-1. 당초 계획과 달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교육이나 활동은 무엇입니까? 위의 문항 3의 답안 중 골라 주십시오.

4-2.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1) 남편이나 시부모가 이주여성이 가정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 _____ 2) 관련 교육이나 활동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아서
- _____ 3) 혼자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어려워서
- _____ 4)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차량지원 등이 되지 않아서
- _____ 5) 학습자들의 학습참여 의지 부족으로
- _____ 6) 농사일, 육아 등 학습자들의 개인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 _____ 7) 문화시설 등 지역에 활용할 만한 자원이 부족해서
- _____ 8) 본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관련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 _____ 9) 기타(_____)

5. 상반기에 선생님께서 담당하신 교육생 중 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그만둔 여성결혼이민자가 있었습니까?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문항6으로)

5-1. 중도에 교육을 그만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1) 남편, 시부모 등 가족들이 싫어해서
- _____ 2) 출산, 건강, 이혼, 이사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 _____ 3) 가사, 자녀양육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 _____ 4) 농사일, 취업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져서
- _____ 5) 잘 모르겠음
- _____ 6) 기타(_____)

6. 도우미활동을 하시면서 시·군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___ 1) 있다 ___ 2) 없다(※ 문항7로)

6-1. 지원이 필요하셨다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셨습니까?

- ___ 1) 대그룹활동 시 차량지원, 교육장소 및 관련 소요경비 지원
 ___ 2) 소그룹활동 시 관련 소요경비 지원
 ___ 3) 낱말카드, 테이프 등 부교재 지원
 ___ 4) 장거리 이동 시 유류비 제공
 ___ 5) 문화체험 장소 소개 등 시·군관련 기관 협조
 ___ 6) 기타(_____)

6-2.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잘 이루어졌습니까?

- ___ 1)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___ 2)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___ 3) 그저 그렇다
 ___ 4)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
 ___ 5) 매우 잘 이루어졌다

7. 선생님께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도우미들과 교육이나 활동에 관한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___ 1) 있다 ___ 2) 없다(※ 문항 8로)

7-1. 다른 도우미들과의 의견이나 정보 교환이 자신의 도우미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___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___ 3) 그저 그렇다
 ___ 4) 비교적 도움이 된다
 ___ 5) 매우 도움이 된다

8. 도우미들과 교육이나 활동에 관한 의견이나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필요하다 _____ 2) 필요하지 않다(※ 문항 9로)

8-1. 도우미들과 어떤 점에 대해 의견이나 정보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 _____ 1) 한국어 교수법(국가별 발음교정 방법, 교재활용 연구 등)
- _____ 2) 소그룹이나 대그룹 활동관련 아이디어 교환
- _____ 3) 생활상담이나 소그룹 활동 시 지자체의 지원을 얻는 방법
- _____ 4) 생활상담 사례와 생활상담 방법 정보 공유(남편, 시부모 갈등, 건강 등)
- _____ 5) 국가별 학습자 성향 및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정보 교환
- _____ 6) 기타(_____)

9. 도우미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최대 3개까지** 골라 주십시오.

- _____ 0) 별다른 어려움 없었음
- _____ 1)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유류비, 교통사고 위험 등)
- _____ 2) 교육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져서
- _____ 3) 소그룹 활동을 위한 장소나 경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 _____ 4) 혼자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준비하기가 어려움
- _____ 5) 학습자 상황에 따라 교육시간이 수시로 변경돼서
- _____ 6) 남편, 시부모의 인식 부족
- _____ 7) 학습자의 교육의지 부족
- _____ 8) 학습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 _____ 9) 가족문제, 건강, 양육 등 생활상담의 어려움
- _____ 10) 교육시간 동안 학습자의 영·유아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 _____ 11) 노력에 비해 수당 등의 보상이 미흡해서
- _____ 12) 기타(_____)

10.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도우미 활동을 계속하고 싶으십니까?

_____ 1) 계속하고 싶다 _____ 2) 계속하고 싶지 않다

부록 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참여자 조사표 (여성결혼이민자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농림부의 의뢰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올해 농림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연구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여쭙보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에 대해 의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 김이선 연구위원 (02-3156-7000, 7158) 정해숙 연구위원(02-3156-7121)

김영주 객원연구원

이인환 위촉연구원

농 립 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당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시행된 한국어 교육이나 각종 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가?

___ 1) 예

___ 2) 아니오 (☞조사 중단)

먼저 당신의 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본인 포함)? 총 _____명

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 _____ (1) 남편
 _____ (2)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 난 자녀
 _____ (3) 나의 이전 결혼에서 난 자녀
 _____ (4) 남편의 이전 결혼에서 난 자녀
 _____ (5)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
 _____ (6) 남편의 할머니, 할아버지
 _____ (7) 남편의 형제
 _____ (8) 그 외 남편의 친척
 _____ (9) 나의 부모, 형제, 그 외 친척
 _____ (10) 기타 (--> 누구입니까? _____)

3. 당신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1. 현재 당신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_____ 세

3-2. 한국에 오신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_____ 년

3-3. 현재의 남편과 결혼한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_____ 년

3-4.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1) 학교 다니지 않음
 _____ (2) 초등학교 중퇴
 _____ (3)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_____ (4)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_____ (5)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중퇴
 _____ (6) (전문)대학 졸업
 _____ (7) 대학원 석사, 박사

4. 당신의 현재 남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1. 남편의 현재 나이는 몇 세입니까? _____ 세

4-2. 남편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1) 학교 다니지 않음
- _____ (2) 초등학교 중퇴
- _____ (3)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 _____ (4)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 _____ (5)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중퇴
- _____ (6) (전문)대학 졸업
- _____ (7) 대학원 석사, 박사
- _____ (8) 모름다

5.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자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출산한 자녀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자녀 모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번 6번

5-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 명

5-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자녀는 각각 몇 살입니까?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나이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자녀수와 비교, 확인

- 자녀1 _____ 세
- 자녀2 _____ 세
- 자녀3 _____ 세
- 자녀4 _____ 세
- 자녀5 _____ 세

다음은 당신의 집에서 농사를 짓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6. 현재 당신의 집에서는 농사를 합니까? √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1) 농사를 한다
- _____ (2) 농사는 하지 않는다 (1번 7번으로)

6-1. 당신의 집에서는 어떤 농사를 합니까? 집에서 하는 농사를 모두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_____

- (1) 논농사
- (2) 밭농사
- (3) 과수원농사
- (4) 하우스농사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 (5) 축산 (소, 돼지, 닭 등 기르기)

6-2. 당신의 집에서 지은 농산물, 축산물을 1년 동안 판매한 돈은 얼마나 됩니까?

- ___ (1) 집에서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거의 판매하지 않는다
- ___ (2) 300만원 이하
- ___ (3) 300만원-500만원
- ___ (4) 500만원-1000만원
- ___ (5) 1000만원-2000만원
- ___ (6) 2000만원-3000만원
- ___ (7) 3000만원 이상
- ___ (8) 모른다

6-3. 당신의 집에서 하는 농사 중 판매 수입이 가장 많은 농사는 무엇입니까?

- ___ (1) 논농사
- ___ (2) 밭농사
- ___ (3) 과수원농사
- ___ (4) 하우스농사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 ___ (5) 축산 (소, 돼지, 닭 등)

7. 현재 당신의 집에서는 논, 밭, 과수원, 하우스, 축산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 (1) 논
- (2) 밭
- (3) 과수원
- (4) 하우스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 (5) 축산시설 (소, 돼지, 닭 등 기르는 시설)
- (6) 모른다

다음은 당신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8. 당신은 한국에 오기 전에 돈 버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____ (1) 돈 버는 일한 적 있다
____ (2) 돈 버는 일한 적 없다 (☞9.)

8-1.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했던 일을 모두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 _____
- (1) 농업, 어업, 축산
 - (2) 공장에서 일함
 - (3) 사무실에서 일함
 - (4) 교사(정규 교사)
 - (5) 간호사
 - (6) 관광 통역
 - (7) 외국어 강사
 - (8)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하고 돈을 받음
 - (9) 식당이나 가게를 직접 운영함
 - (10) 가사도우미
 - (11) 운전기사, 중장비기사
 - (12) 건설노동자, 단순노무자, 기타 육체노동자 등
 - (13) 기타

9. 당신은 지난 1년간 한국에서 농사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____ (1) 농사일을 한 적 있다
____ (2) 농사일을 한 적 없다 (☞10.)

9-1. (지난 1년간 한국에서 농사일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집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집 농사일만 하셨습니까?

- ____ (1) 집 농사를 짓는다
____ (2) 다른 집 농사일만 한다
____ (3) 집 농사도 짓고 다른 집 농사일도 한다

9-2. (지난 1년간 농사일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농사일을 하고 버는 돈은 한 달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 ____ (1) 집안일이어서 별도로 돈을 받지 않는다
 ____ (2) 10만원 미만
 ____ (3) 10-20만원
 ____ (4) 30-50만원
 ____ (5) 50-70만원
 ____ (6) 70만원 이상

9-3. (지난 1년간 농사일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당신의 집에서 하는 농사일 중 당신이 하는 일은 얼마나 됩니까?

- ____ (1) 집 농사일은 거의 모두 내가 한다
 ____ (2) 다른 가족과 내가 비슷하게 한다
 ____ (3)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나는 조금만 돕는다
 ____ (4)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나는 아주 바쁠 때만 가끔 돕는다
 ____ (5) 다른 집 농사일만 다닌다

9-4. 농사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어려웠던 점을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 ____ (1) 농사일을 할 줄 몰라서
 ____ (2) 농사일이 힘들어서
 ____ (3) 집안일, 아이 돌보기도 하면서 농사일도 해야 돼서
 ____ (4) 돈을 많이 못 벌고 생활이 어려워서
 ____ (5) 내가 일한 만큼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아서
 ____ (6) 농사일 보다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____ (7) 기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_____)

10. 현재 당신은 농사일 이외에 돈을 버는 일을 합니까?

- ____ (1) 한다
 ____ (2) 하지 않는다 (☞11.)

10-1. 농사일 이외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하고 있는 일을 모두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_____

- (1) 공장에서 일함
 (2) 사무실에서 일함
 (3) 교사(정규 교사)

- (4) 간호사
- (5) 관광 통역
- (6) 외국어 강사, 방과후 학교 교사
- (7)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하고 돈을 받음
- (8) 식당이나 가게를 직접 운영함
- (9) 가사도우미
- (10) 운전기사, 중장비기사
- (11) 건설노동자, 단순노무자, 기타 육체노동자 등
- (12) 기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적어 주십시오. _____)

10-2. 농사 이외에 일을 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 _____ (1) 10만원 미만
- _____ (2) 10만원-20만원
- _____ (3) 30만원-50만원
- _____ (4) 50만원-70만원
- _____ (5) 70만원-100만원
- _____ (6) 100만원-150만원
- _____ (7) 150만원 이상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_____ 만원)

11. 한국에 온 후 당신은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있는 일을 모두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_____
- (1) 농업, 어업, 축산
 - (2) 공장에서 일함
 - (3) 사무실에서 일함
 - (4) 교사(정규 교사)
 - (5) 간호사
 - (6) 관광 통역
 - (7) 외국어 강사, 방과후 학교 교사
 - (8)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하고 돈을 받음
 - (9) 식당이나 가게를 직접 운영함
 - (10) 가사도우미
 - (11) 운전기사, 중장비기사
 - (12) 건설노동자, 단순노무자, 기타 육체노동자 등
 - (13) 기타

12. 당신이 일을 하는데 대해 남편이나 시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_ (1) 찬성한다. (☞ 13.)
 ____ (2) 찬성하지는 않으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____ (3) 반대한다

12-1. 당신이 일하는데 대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찬성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____ (1) 내가 돈 벌 필요가 없어서
 ____ (2) 집안일, 아이돌보기 등을 소홀히 할까봐
 ____ (3) 집밖에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____ (4) 기타
 ____ (5) 이유를 모르겠다

13. 당신의 남편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모두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_____

- (1) 일을 하지 않는다
 (2) 농업, 어업, 축산, 양봉, 임업
 (3) 공장에서 일함
 (4) 사무실에서 일함
 (5) 교사(정규 교사), 공무원
 (6) 학원 강사
 (7)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하고 돈을 받음
 (8) 식당이나 가게를 직접 운영함
 (9) 운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중장비기사
 (10) 건설노동자, 단순노무자, 기타 육체노동자 등
 (11) 기타

다음은 당신이 앞으로 농촌에 살고 싶은지, 농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4. 당신은 앞으로 계속 농촌지역에 살고 싶습니까?

- ____ (1) 농촌에 계속 살고 싶다 (☞ 15.)
 ____ (2) 농촌을 떠나고 싶다

14-1. (농촌을 떠나고 싶다면)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 3가지만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1)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 _____ (2) 농사일이 힘들어서
- _____ (3) 농촌에서는 돈 벌기가 힘들어서
- _____ (4)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어서
- _____ (5)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 _____ (6) 주위에 친하게 지낼 사람이 없어서
- _____ (7) 주변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 _____ (8) 기타

15. 당신은 마을 여성들의 모임(부녀회-번역할 때 소리 나는대로 표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_____ (1) 참여한다
- _____ (2) 참여하지 않는다.

16. 당신은 앞으로 농업을 할 생각입니까?

- _____ (1) 농업만 할 생각이다.
- _____ (2) 농업과 다른 일을 함께 할 생각이다
- _____ (3) 농업은 하고 싶지 않다. (☞17.)

16-1. 앞으로 어떤 농업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_____

- (1) 논
- (2) 밭
- (3) 과수원
- (4) 하우스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 (5) 축산 (소, 돼지, 닭 등 기르기)

17.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일의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모두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_____

- (1) 농산물 가공(예: 각국의 주요가공식품 및 음식재료 만들기)
- (2)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
- (3) 농촌체험관광사업(농촌방문 관광객들에게 숙박, 음식 등을 제공하여 돈을 버는 것)

17-1. 만약 앞으로 당신이 농산물 가공, 판매일을 한다면 어떠한 도움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만 √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1)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_____ (2) 물건 만들 기술을 가르쳐준다
 _____ (3) 어떠한 물건을 만들면 좋을지 조언해준다
 _____ (4) 어떻게 팔면 좋을지 조언해준다
 _____ (5) 소비자들에게 물건에 대해 홍보해준다
 _____ (6) 필요한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_____ (7) 기타 (구체적으로 써주십시오. _____)

18. 다음 중 당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모두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 _____
- (1) 앞으로 어떤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식품(예: 각국의 주요 가공식품과 음식재료)이 잘 팔릴지에 대한 교육
 (2) 농작물 재배기술 교육
 (3) 농기계 운전 교육
 (4)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5)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를 위한 교육(예: 인터넷 판매방법)
 (6) 인터넷에서 농업관련정보를 찾기 위한 교육
 (7) 농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8)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
 (9) 농촌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지도자교육)

다음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당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시행된 한국어 교육이나 각종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19.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방문교육 도우미 선생님과 함께 당신이 참여한 교육이나 활동을 모두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_____
- (1) 한국어 교육
 (2) 가족관계 상담
 (3) 생활상담

- (4) 부부교실, 가족캠프
- (5) 자녀양육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 (6) 임신, 출산에 관한 교육
- (7) 지역생활안내(공공기관, 은행, 교통편 이용, 시장보기 등)
- (8) 전통문화교육(전통예절, 한복입기, 다도, 전통놀이 등)
- (9) 한국요리 강습
- (10) 각국의 음식, 풍습 소개
- (11) 취미교실(꽃꽂이, 공예, 노래교실 등), 영화·비디오 보기, 야유회
- (12)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과 관련된 교육
- (13)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등)
- (14) 기타

20. 이러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제일 처음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___ (1) 마을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알려주었다
- ___ (2) 행정기관(군청/읍·면 사무소)에서 알려주었다
- ___ (3) 남편/가족이 알려주었다
- ___ (4) 주변 이웃사람이 알려주었다
- ___ (5) 나와 같은 국적의 친구/모임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 ___ (6) 교육에 대한 홍보를 보고 알게 되었다(홈페이지, 인쇄홍보물 등)
- ___ (7)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1. 이번 교육에 참가하기로 결정할 때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 ___ (1) 적극적으로 참가를 권했다
- ___ (2) 하고 싶으면 참가하라고 했다
- ___ (3) 반대했다

22. 이번 교육에 참가하기로 결정할 때 도우미 선생님이 당신의 집을 방문해 교육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___ (1) 알고 있었다
- ___ (2) 몰랐다

22-1. 이번 교육에 참가하기로 결정할 때 가끔 주위에 사는 여성들 몇 명이 모여 함께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___ (1) 알고 있었다
- ___ (2) 몰랐다

22-2. 이번 교육에 참가하기로 결정할 때 가끔 밖에서 대규모로 모여 활동이나 행사를 벌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____ (1) 알고 있었다
____ (2) 몰랐다

23. 이번 교육에 참가하기로 결정할 때 어떠한 교육이나 활동에 특히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가장 관심이 컸던 것 2가지만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 ____ (1) 한국어 교육
____ (2) 가족에 대한 고민 상담, 가족관계 교육, 부부 캠프
____ (3)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고민 상담, 정보 제공
____ (4) 한국요리 강습
____ (5) 농업, 농촌에 대한 교육
____ (6) 소풍, 답사, 예술 및 문화교육, 영화·비디오보기
____ (7) 기타

24. 이번에 참여한 방문 교육이나 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____ (1) 매우 불만족스럽다
____ (2)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____ (3) 보통이다
____ (4) 만족스러운 편이다
____ (5) 매우 만족스럽다

25. 도우미 선생님이 당신의 집을 방문해서 했던 교육은 어떠한 점이 좋았습니까? 가장 좋았던 점 2가지만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 ____ (1) 별로 좋았던 점이 없다
____ (2) 한국어를 정기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____ (3) 나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____ (4)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____ (5) 한국 정부가 나 같은 결혼이민자를 위해 하는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____ (6)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친구가 생겨서 좋았다
____ (7)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____ (8) 농촌에 대해 좋은 생각이 들게 되었다
____ (9) 농업에 대해 좋은 생각이 들게 되었다
____ (10) 기타

26. 당신이 편한 시간에 집에서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 ___ (1) 그렇다
- ___ (2) 아니다

27. 당신의 집에서 교육을 받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가장 많이 어려웠던 점 3가지만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 ___ (1)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 ___ (2) 잘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불편했다
- ___ (3) 교육 내용이나 교재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 ___ (4) 교육을 받는 동안 가족의 간섭으로 방해를 받았다
- ___ (5) 가사나 자녀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 ___ (6) 다른 일로 바빠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다
- ___ (7) 임신 등으로 인하여 몸이 힘들어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다
- ___ (8) 강사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했다
- ___ (9)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8. 이번 교육을 받기 전에 당신은 한국어를 얼마나 할 수 있었습니까?

- ___ (1) 한국어를 거의 말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했다
- ___ (2) 간단한 대화나 인사말 정도만 할 수 있었다
- ___ (3)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는 조금 할 수 있었으나, 쓰기는 전혀 못했다.
- ___ (4)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쓰기는 전혀 못했다.
- ___ (5)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쓰기는 조금 할 수 있었다
- ___ (6)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나 쓰기 모두 잘 할 수 있었다

29. 이번 교육을 받고 나서 당신은 한국어를 얼마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 ___ (1) 한국어를 거의 말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한다
- ___ (2) 간단한 대화나 인사말 정도만 할 수 있다
- ___ (3)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는 조금 할 수 있으나, 쓰기는 전혀 못한다.
- ___ (4)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쓰기는 전혀 못한다.
- ___ (5)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쓰기는 조금할 수 있다.
- ___ (6)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나 쓰기 모두 잘 할 수 있다.

30. 당신의 집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교육이나 활동에 참가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가장 많이 어려웠던 점 2가지만 골라 $\sqrt{\quad}$ 표시해 주십시오.

- (1) 집 이외에서 이루어진 교육이나 활동에는 거의 참가하지 못했다.
 (2) 멀리 가는 것을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3) 교통편 때문에 멀리 가는 것이 어려웠다.
 (4)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힘들었다.
 (5) 교육이나 활동이 너무 많아 번거로웠다.
 (6) 교육이나 활동내용이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번에 받은 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31. 한국에 온 이후 이번 4월-7월에 받은 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2) 없다 (☞ 32.)

31-1. 한국에 온 이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육을 모두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이번 4월-7월에 교육받은 것은 빼고 써주십시오.

- _____
- (1) 한국어 교육
 (2) 가족관계 상담
 (3) 생활상담
 (4) 부부교실, 가족캠프
 (5) 자녀양육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6) 임신, 출산에 관한 교육
 (7) 지역생활안내(공공기관, 은행, 교통편 이용, 시장보기 등)
 (8) 전통문화교육(전통예절, 한복입기, 다도, 전통놀이 등)
 (9) 한국요리 강습
 (10) 각국의 음식, 풍습 소개
 (11) 취미교실(꽃꽂이, 공예, 노래교실 등), 영화·비디오 보기, 야유회
 (12)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에 관련된 교육
 (14)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등)
 (15) 기타

32.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참여한 교육이나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으십니까? 아쉬웠던 점을 모두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_____

- (1) 별로 아쉬운 점이 없다
- (2) 교육마다 매번 내용이 비슷하다
- (3) 나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은 찾기 어렵다
- (4) 교육내용이나 교재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 (5) 강사와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었다
- (6) 기타

33. 다음 중 앞으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나 도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만 골라 밑줄 친 부분에 필요한 순서대로 1, 2, 3번을 적어 주십시오.

- _____ (1) 한국어 교육
- _____ (2) 가족관계 상담
- _____ (3) 생활상담
- _____ (4) 부부교실, 가족캠프
- _____ (5) 자녀양육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 _____ (6) 임신, 출산에 관한 교육
- _____ (7) 지역생활안내(공공기관, 은행, 교통편 이용, 시장보기 등)
- _____ (8) 전통문화교육(전통예절, 한복입기, 다도, 전통놀이 등)
- _____ (9) 한국요리 강습
- _____ (10) 각국의 음식, 풍습 소개
- _____ (11) 취미교실(꽃꽂이, 공예, 노래교실 등), 영화·비디오 보기, 야유회
- _____ (12)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과 관련된 교육
- _____ (13)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등)
- _____ (14) 기타

34. 앞으로 당신을 위해 교육을 할 때에 다음 중 어떠한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만 골라 $\sqrt{\quad}$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1)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하면 좋겠다.
- _____ (2) 교육장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해주면 좋겠다.
- _____ (3) 교육받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면 좋겠다.
- _____ (4)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한국말로 교육했으면 좋겠다.
- _____ (5) 나의 모국어(베트남어, 영어, 따갈로그어, 일본어, 중국어)로 통역을 해주면 좋겠다.

- _____ (6) 가족들이 내가 교육받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 _____ (7) 교육내용에 대해 미리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다.

이제 모든 질문이 끝났습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작은 선물을 준비 했습니다.

선물을 받으셨으면 여기 싸인해 주세요. _____

<조사원 기록사항>

* 다음 내용을 여성들이 모를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질문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당신의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만약 소유한 것이 없을 때에는 '0평'으로 표시

논농사 : _____ 평 밭농사 : _____ 평
 과수원 : _____ 평 기타(임야 등): _____ 평
 소 : _____ 마리 돼지: _____ 마리
 닭 : _____ 마리 기타 가축 : _____ 마리

* 현재 당신의 집에서 짓고 있는 농사는 얼마나 됩니까? 빌려준 것은 빼고 빌려서 짓는 것은 합쳐서 써 주십시오. 짓는 농사가 없으면 '0평'으로 표시

논농사 : _____ 평 밭농사 : _____ 평
 과수원 : _____ 평 하우스(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 _____ 평
 기타(임야 등): _____ 평

조사원 성명:	
조사대상자 성명	
국적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2008년 1월 인쇄

2008년 1월 발행

발행처 : 농림부 여성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전화 / 02-500-1604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간행물등록번호 11-1380000-002530-0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